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현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안지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 발 간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생산하여 왔습니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환경을 모니터링 함에 있어서 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분야의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를 이론적 또는 실용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의 2개년에 걸쳐 5개 영역 136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생산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보다 엄밀한 자세로 과학적인 통계자료와 연구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성과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원장 이재연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인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의 2개년에 걸쳐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 총 136개의 지표가 생산되었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지표의 발전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과 관련한 법적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 및 공표의 주기 재검토,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의 개발,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수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하였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정리하였음.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음.

### 2. 연구내용

-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엔아동 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체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 제시
-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9,093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실시

- 행정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행정통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실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 및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발전방안 제시

### 3. 연구결과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음.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인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였음.
-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의 2개년에 걸쳐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 총 136개의 지표가 생산되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의 참여율 저조는 참여와 관련된 정보 부족, 아동·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 홍보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됨.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10명 중 1~2명이 거의 매일 방과후에 보호자없이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보호자 부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보육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방과후이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대체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공교육 및 사교육을 통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도한 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또한,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및 지역의 아동·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이 요구됨. 아동·청소년의 친화적 인권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및 인권조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39.4%에 그침.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인 인권정보 제공 및 인권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4.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생산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인권 환경이 개선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지표가 사회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 및 기존 통계 자료원의 조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 및 공표의 주기를 재검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인권지수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의지 및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함.
- 지표의 영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	11
3. 연구의 방법 .....	16
<b>II.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b> .....	<b>19</b>
1.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21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	26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30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34
5. 학생인권조례 .....	41
<b>III.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b> .....	<b>49</b>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51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재범주화 .....	65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타당성 평가 .....	71
<b>IV.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b> .....	<b>73</b>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	75
1) 표현의 자유 .....	75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13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22
4) 사생활의 보호 .....	132
5) 정보접근권 .....	144
6) 소결 .....	155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15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58
2)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	176
3) 소결 .....	180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181
1)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181
2) 소결 .....	190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191
1) 교육에의 권리 .....	191
2) 교육의 목표 .....	220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	252
4) 소결 .....	285
<b>V. 정책제언 .....</b>	<b>289</b>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91
2. 정책제언 .....	291
<b>참고문헌 .....</b>	<b>295</b>
<b>부록 .....</b>	<b>307</b>
1. 설문지 .....	309
2. 변경문항 목록 .....	335
3. 지표의 자료 및 출처 .....	343

## 표 목차

〈표 II-1〉 제1차 UPR 권고내용과 한국정부의 입장 및 후속조치 현황	33
〈표 II-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36
〈표 II-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NAP 추진과제	40
〈표 II-4〉 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현황	43
〈표 III-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발달권·참여권)	52
〈표 III-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	63
〈표 III-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7
〈표 IV-1〉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77
〈표 IV-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78
〈표 IV-3〉 사회참여 경험도	80
〈표 IV-4〉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83
〈표 IV-5〉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85
〈표 IV-6〉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88
〈표 IV-7〉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90
〈표 IV-8〉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92
〈표 IV-9〉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	94
〈표 IV-10〉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97
〈표 IV-11〉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	99
〈표 IV-12〉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101
〈표 IV-13〉 참여권 보장 수준	104
〈표 IV-14〉 교급별 참여의 장애요인	107
〈표 IV-15〉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109
〈표 IV-16〉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115
〈표 IV-17〉 중립 초·중·고등·대학교 현황	116
〈표 IV-18〉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118

〈표 IV-19〉 결사·집회 경험률 .....	125
〈표 IV-20〉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	127
〈표 IV-21〉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129
〈표 IV-22〉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135
〈표 IV-23〉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137
〈표 IV-24〉 학교상황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139
〈표 IV-25〉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	140
〈표 IV-26〉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142
〈표 IV-27〉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145
〈표 IV-28〉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	147
〈표 IV-29〉 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	149
〈표 IV-30〉 학교도서관(실)의 학생 1인당 장서수 .....	149
〈표 IV-31〉 매체 이용률 .....	151
〈표 IV-32〉 부모·자녀 관계 .....	161
〈표 IV-33〉 부모와의 대화시간 .....	163
〈표 IV-34〉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부 .....	165
〈표 IV-35〉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166
〈표 IV-36〉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	168
〈표 IV-37〉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	170
〈표 IV-3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171
〈표 IV-39〉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수 .....	177
〈표 IV-40〉 방과후학교 참여실태 .....	183
〈표 IV-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	184
〈표 IV-4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	185
〈표 IV-43〉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186
〈표 IV-44〉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188

〈표 IV-45〉 학교급별 규모(2011) .....	193
〈표 IV-46〉 취학을 .....	196
〈표 IV-47〉 진학을 .....	197
〈표 IV-4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199
〈표 IV-4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00
〈표 IV-50〉 진로교육 경험 유무 .....	201
〈표 IV-51〉 진로관련 경험 .....	204
〈표 IV-52〉 진로교육 만족도 .....	207
〈표 IV-53〉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	208
〈표 IV-54〉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	210
〈표 IV-55〉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다중응답) .....	212
〈표 IV-56〉 학업중도포기 생각 여부 .....	213
〈표 IV-57〉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 .....	215
〈표 IV-58〉 교원 1인당 학생 수 .....	221
〈표 IV-59〉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223
〈표 IV-60〉 기초학력 미달 비율 .....	225
〈표 IV-61〉 학교수업 이해도 .....	227
〈표 IV-62〉 학교수업 진행 수준 .....	228
〈표 IV-63〉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	230
〈표 IV-64〉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	233
〈표 IV-65〉 사교육 효과성 .....	235
〈표 IV-66〉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237
〈표 IV-67〉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239
〈표 IV-68〉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	241
〈표 IV-69〉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44
〈표 IV-70〉 인권교육 실시율 .....	247

〈표 IV-71〉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249
〈표 IV-72〉 연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254
〈표 IV-73〉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254
〈표 IV-74〉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56
〈표 IV-75〉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	258
〈표 IV-76〉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259
〈표 IV-77〉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260
〈표 IV-78〉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다중응답) .....	261
〈표 IV-79〉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	264
〈표 IV-80〉 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266
〈표 IV-81〉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268
〈표 IV-82〉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	270
〈표 IV-83〉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	272
〈표 IV-84〉 동아리 활동 형태 .....	273
〈표 IV-85〉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	275
〈표 IV-8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77
〈표 IV-87〉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	279
〈표 IV-88〉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	280
〈표 IV-89〉 여가활동 만족도 .....	281
〈표 IV-90〉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282

##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9
【그림 I-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상 .....	10
【그림 I-3】 연구의 내용 .....	15
【그림 II-1】 인권조약의 보고체계 .....	28
【그림 IV-1】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76
【그림 IV-2】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81
【그림 IV-3】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도 .....	87
【그림 IV-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89
【그림 IV-5】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	91
【그림 IV-6】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도 .....	93
【그림 IV-7】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96
【그림 IV-8】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 .....	98
【그림 IV-9】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100
【그림 IV-10】 참여권 보장 수준 .....	103
【그림 IV-11】 참여의 장애요인 .....	106
【그림 IV-12】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	108
【그림 IV-13】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117
【그림 IV-14】 결사·집회 경험률 .....	123
【그림 IV-15】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	127
【그림 IV-16】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 활동 허용 여부 .....	129
【그림 IV-17】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133
【그림 IV-18】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136
【그림 IV-19】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138
【그림 IV-20】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	140
【그림 IV-21】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142
【그림 IV-22】 부모·자녀 관계 .....	160

【그림 IV-23】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	164
【그림 IV-24】 방과후 보호자 부재 .....	172
【그림 IV-2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	185
【그림 IV-26】 진로교육 경험 유무 .....	201
【그림 IV-27】 진로관련 경험 .....	203
【그림 IV-28】 진로교육 만족도 .....	207
【그림 IV-29】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 .....	209
【그림 IV-30】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	211
【그림 IV-31】 학업중도포기 생각 여부 .....	213
【그림 IV-32】 보통학력 이상 비율 .....	222
【그림 IV-33】 PISA 결과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	224
【그림 IV-34】 학교수업 이해도 .....	226
【그림 IV-35】 학교수업 진행 수준 .....	227
【그림 IV-36】 학교수업 만족도 .....	229
【그림 IV-37】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 .....	231
【그림 IV-38】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	232
【그림 IV-39】 사교육 효과성 .....	234
【그림 IV-40】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236
【그림 IV-4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238
【그림 IV-42】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	240
【그림 IV-4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43
【그림 IV-44】 인권교육 실시율 .....	246
【그림 IV-45】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249
【그림 IV-46】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 .....	257
【그림 IV-47】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	260
【그림 IV-48】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	263

【그림 IV-49】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평일) .....	265
【그림 IV-50】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267
【그림 IV-5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	269
【그림 IV-52】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	271
【그림 IV-53】 동아리 활동 형태 .....	273
【그림 IV-54】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 .....	274
【그림 IV-5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277
【그림 IV-56】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	279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발달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 발달선상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sup>1)</sup>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의 자국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따라서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국법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국법이나 정책을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수정·변경 및 보완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법률에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가?’, ‘협약 비준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가 강화되었거나 혹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서상에 있는 권리와 실제의 권리

1) 현재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 미국과 소말리아뿐임.

사이에 차이는 없는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제에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Hammad, 1999; Veerman & Levine, 2000; Maripe, 2002; Odongo, 2004; Wotipka & Ramirez, 2008). 즉, 국가의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실제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생활에서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사건들이 빈번히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장애, 다른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조례(안)’, ‘아동·청소년 인권법’ 등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거나 법 제정을 청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좀 더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문화일보, 2012. 1. 10; 한겨레신문, 2012. 3. 9).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논란의 중심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제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실증적인 예로, 2006년에 발표된 유엔아동폭력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아동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성폭력 또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nheiro, 2006). 또한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5년 후 실시된 아동의 폭력상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011년 현재에도 아동은 일상에서 성인, 부모, 교사, 보호자, 고용주 등으로부터 꾸준히 모욕과 신체적·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폭력은 모든 환경에서 지속되고 있고, 일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정 형태의 폭력은 증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5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을 다루는 특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에는 전 세계의 600명 이상의 아동이 참석하여, 69개국의 세계 정상 및 190여 개국의 국가 대표 등과 1990년의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고 21세기에 다루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함께 하였다(UNICEF, 2003).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들의 참여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Badham & Wade, 2008). 즉, 이 총회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방안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최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모든 정상들의 동의하에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WFFC)’을 채택하여, 아동의 건강한 삶 증진, 양질의 교육제공,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HIV/AIDS 퇴치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2004년과 2007년에 유엔아동총회가 열리기도 하였다(UN, 2007; UNICEF, 2003). 2011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제3선택의정서와 세계인권교육 선언문이 채택되었다(UN Human Rights, 2011; UN Human Rights Council, 2011a; UN Human Rights Council, 2011b). 제3선택의정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권리침해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아동 스스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국제 인권 기구의 역할을 포함한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인권교육 선언문은 인간 존중과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선언한 것으로, 인권교육은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전 생애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회계층, 즉,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모든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 및 협약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발효되는 것은 인류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들이 권리협약에 비교적 쉽게 비준할 수 있지만, 비준이 반드시 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Gran, 2010).

이에 유엔에서는 아동권리위원회를 두어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의 협약 및 선택의정서<sup>2)</sup>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민간보고서를 함께 심사하여 권고의견을 채택한다.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차, 2차, 3·4차 통합<sup>3)</sup> 국가보고서(1994년, 1999년, 2008년)와 NGO보고서(1995년, 2003년, 2010~2011년)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을 1996년 2월에 10여개,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을 2003년 1월에 60여개, 3·4차 통합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을 2011년 10월에 80여개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최초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1996년 2월의 권고문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즉, 아동에 대해 한국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고 우려하고 “협약이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이행의 진전 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체계를 발전시키도록” 권고하였다. 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2003년 1월)에서도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3·4차 통합 보고서<sup>4)</sup> 심의에서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배경별 데이터가 없어, 제시된 통계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2011년 10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심의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수집체계와 인권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내용 면에서 법과 정책의

2) 유엔총회(UNGA)는 2011년 12월 19일에,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권리 침해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청원권(Communications Procedure)에 대한 최종결의안을 채택하였음.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등 3개임.

3)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다하는 것을 돕는 예외적 조치로서, 3·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

4)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2008)에서는 아동관련 통계수집체계로 아동청소년통계집, 청소년패널조사, 교육통계 One-Stop 서비스, 청소년백서 등을 언급하고 있음.

선언적 명명과 거리가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아동을 위한 정책은 크게 부족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소극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비슷한 정부정책이 각기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는 등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크지 않았다(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이해원, 김성천, 오승환, 이태수, 정익중, 2009). 이는 아동·청소년들에 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아동정책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시급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데(이재연, 박영애, 문혁준, 2010),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측정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발달상 혹은 절차상의 이유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측정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으며, 권리의 특성상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지표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생산해냄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영역과 실현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근거 제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이재연 외, 2009),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2006년)에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근거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프라 등의 5개 하위영역, 152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였고, 2차년도(2007년)와 3차년도(2008년)에는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및 국제적인 인권실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4차년도(2009년)와 5차년도(2010년)에는 각각 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을 둘로 나누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검토·보완하고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제40201호)을 받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인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된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

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기준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의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인과관계의 중첩성, 상호 배타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와도 체계가 부합하지 않아 정책적 활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국제기준 어디를 찾아보아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 영역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재검토를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고, 현재 조사 내용이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나뉘어져 있는 점 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남겨 두었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Ⅶ, 2011~2016)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 2006~2010)의 후속 연구로서 지속적인 인권지표의 산출을 통해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선과제의 수행을 통해 지표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1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지표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sup>5)</sup> 체계를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수정하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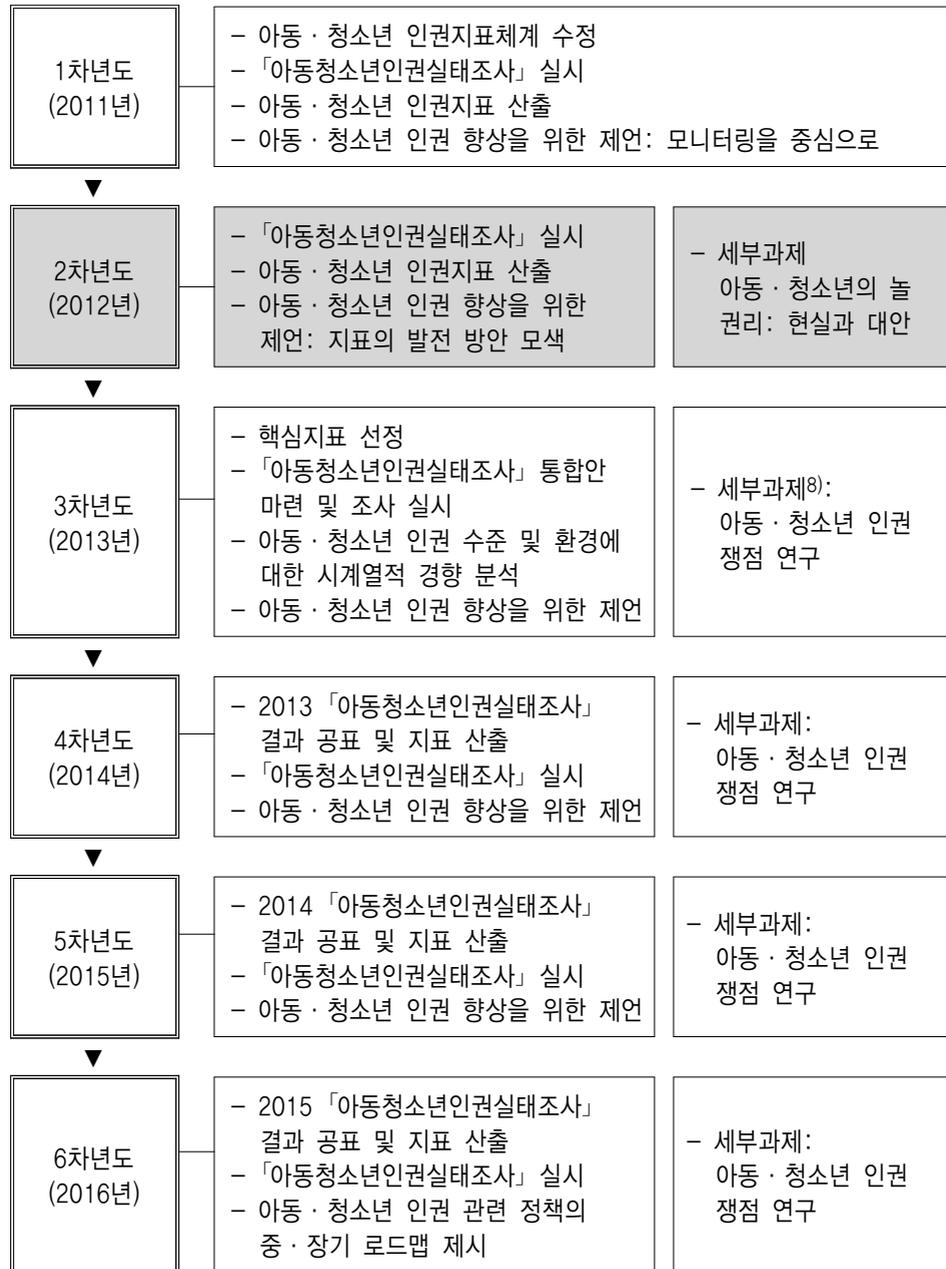
이 연구(2차년도)에서는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차년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의 쟁점을 다루는 세부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3차년도(2013년)에는 핵심지표의 선정을 통해,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내용 분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합안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조사부터는 조사 결과를 익년에 공표함으로써 국가승인통계에 부합하는 보다 질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관련법에 의하면,<sup>7)</sup> 아동은 출생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로 정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지표의 대상을 출생부터 24세까지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인권

5)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서는 협약의 각 조항을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의 8개 클러스터(cluster)로 나누고 있음.

6) 3차년도(2013년)에는, 조사 내용이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나뉘어 있는 현 체제를 개선하고 통합안을 마련할 예정임.

7) 1차년도 연구보고서 Ⅱ 장 3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상 규정」 참조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8) 세부과제의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에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수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방안을 구체화·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인권 정책과 법률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직접 조사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방법, 조사비용 및 조사설계 등의 제한으로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지표는 출생에서 24세까지에 대해서 산출하였다.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출생에서 24세까지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그림 I-2]와 같다.

연령 대상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 지표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한 지표	←.....→ 초4~고3																								
관련 정책 및 대안	←.....→																								

[그림 I-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상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된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정리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 확대와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한다. 지표의 산출에는 행정통계와 청소년종합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사회조사(통계청)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 및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결과를 활용한다. 지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1차년도(2011년) 연구내용

#### (1) 지표체계 수정

이 연구의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선행연구인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 김영지, 김영인, 이민희, 황옥경, 2010)에서의 제언<sup>9)</sup>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재검토하였다.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체계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과 UNICEF(2007)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체크리스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들(정영순, 1997; 이종원, 황진구, 이혜연, 1997; 이소희, 김민정, 김혜영,

9) 선행연구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각 개념의 범주와 경계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권내용이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음. 모상현·김희진(2009)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개 영역으로 나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협약 자체에 4개 영역의 분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협약 당사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에도 이러한 분류의 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모상현 외(2010)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기존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였음.

1999; 이소희·김민정, 2000; 길은배, 이용교, 김영지, 2001;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 2003; 최창욱, 박영균,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Chinyangara et al., 1997;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2010; Children's Defense Fund, 2010; Children's Defense Fund, 2011; Child and Youth Welfare Association, 2010;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2011; Save the Children, 2011)을 참고하였다.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은 협약의 각 조항을 클러스터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협약이 취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시점, 즉, 아동의 권리영역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아동의 권리는 공평하게 증시되어야 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체계는 지표체계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이 세부 영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sup>10)</sup>. UNICEF(2007)도 협약은 분리할 수 없고 각 조항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등은 일반원칙으로 기타 모든 조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지표체계는 정책적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하되 8개 클러스터(cluster)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 영역으로 삼았다.

## (2) 201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

1차년도(2011년)에는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기존의 개별지표들을 각각의 텍스트로 보고 이를 재검토하였으며, 지금까지 제출된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로 범주화하였다. 1차년도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내용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보건 및 복지», 「특별 보호 조치」를 주로 다루고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상당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1차년도에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2차년도) 연구에서 개별지표의 재배치 및 추가 산출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10) 김영지(201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 전문가 워크숍 토론 자료

## 2) 2차년도(2012년) 연구내용

###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이 연구에서 산출하는 지표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표항목들이 최근의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및 국내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청원권 최종결의안 채택(2011), 한국 정부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차 심의(201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2012) 등 최근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개별지표의 타당성 검증

선행연구인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에서 개발·수정·보완되어 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행정통계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사회조사(통계청) 등 기존의 통계자료원을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아동·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지표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한 지표만이 아니라 인권의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직접 파악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 인권지표가 가지는 연령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환경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표체계의 타당성 뿐 아니라 개별 지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문문항 및 관련통계의 타당성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과 관련통계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검토한 후, 설문문항의 표현에 대해서는 국어학자의 감수를 받음으로써 통계자료 수집 및 조사를 개선하여 지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 (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실시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와 상호 보완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4) 201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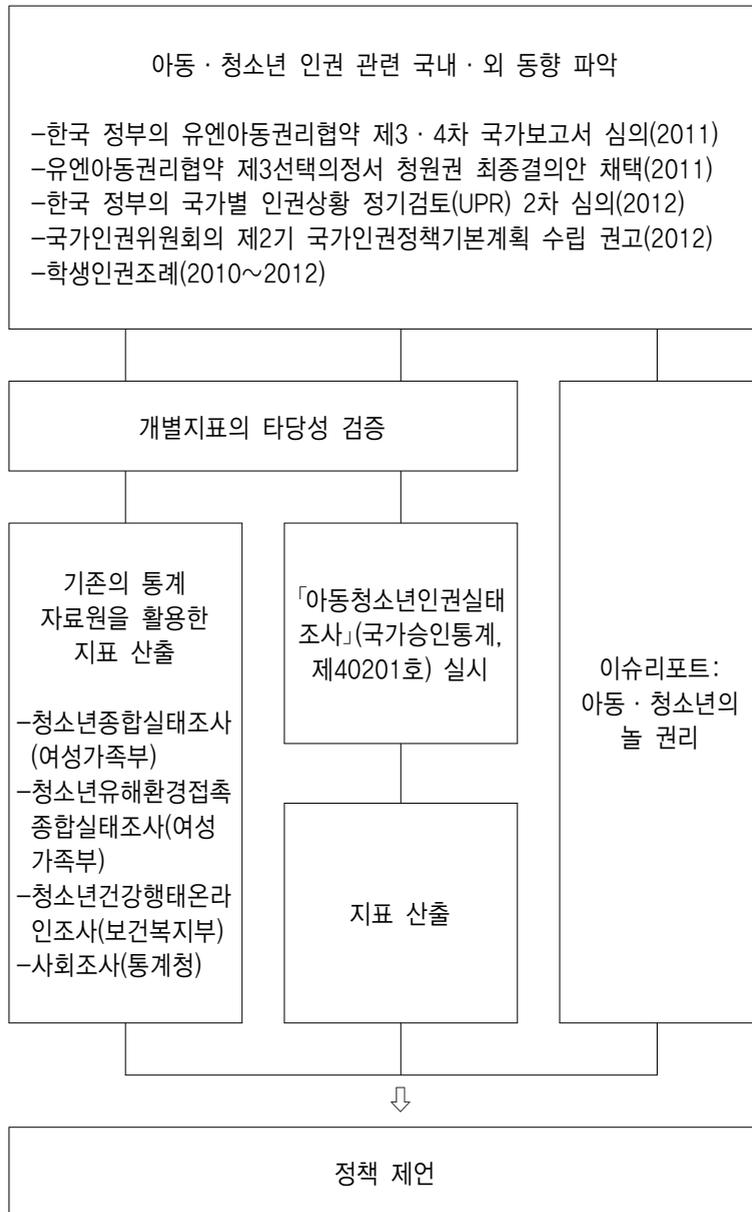
지표체계의 틀인 유엔아동권리협약 각 클러스터의 하위내용을 담고 있는 각 조항을 해석하여 지표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지표를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재범주화한다. 지표는 행정통계와 국가승인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인권지표 결과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5)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연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학습시간이 길고 놀이와 여가를 향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여가의 유형과 상황도 극히 제한되고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론화하고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의 쟁점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작성한다.

### (6)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신뢰로운 지표의 개발과 수집을 위한 제언을 비롯하여, 인권지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그림 I-3】 연구의 내용

### 3. 연구의 방법

#### 1)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를 시의성 있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유엔 발표문서, 협약 이행보고서, 권고문, 일반논평, 국가인권정책 등 국내·외의 문서 및 문헌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수차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내용과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의 현안을 논의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였다.

#### 3)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 40명을 대상으로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2년 4월 20일~4월 25일에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에 응한 20명의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지표 및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136개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5개 영역, 22개 하위영역에 재범주화하고, 재범주화한 지표들이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을 설명하는 지표로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2012년 11월 2일~2012년 11월 26일에 온라인 의견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4월에 실시한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의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한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 4) 설문조사

2012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8,5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sup>11)</sup>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2년 5월 21일~7월 13일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 5) 2차 자료 분석

행정통계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사회조사(통계청)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6)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2012년 6월 5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유엔과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 및 인권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지표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7) 연구방법 콜로키움

「학생 대상 조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2012년 4월 5일에 연구방법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이 콜로키움에서는 사회조사 시 고려해야 할 연구모형 설계와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표본설계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보고서에 제시



## 제 2 장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5. 학생인권조례



## 제 2 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1)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체결되고 1990년부터 효력이 발효된 이후, 아동권리협약의 목적과 그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의 3가지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인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2개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그것이다.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가장 최근인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많은 논란 속에서 채택된 의정서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라고 볼 수 있다(Zermatten, 2012b).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선택의정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조문과 1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택의정서의 조문에는 의정서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과 배경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조문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국제적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음란물의 이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의 목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그 조문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을 한층 더 달성하고,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각 조항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형사처벌대상, 관할권, 당사국의 의무, 아동에 대한 특별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어 2012년 5월 현재 119개국이 서명하고, 157개국이 비준하였으며, 한국은 2000년 9월 6일에 서명하고,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다.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의정서 제12조 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후 2007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과 2011년에 각각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제시하였다. 최종 견해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입법적, 행정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의정서 제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2차례의 최종견해에서 반복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선택의정서 제2조에서 아동매매를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하여 아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모든 행위 내지 거래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의 입양과 관련된 조항(제21조)을 유보하고 있고 국내법 상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3)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문과 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조문에서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그리고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 그리고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거나 소집하는 행위 또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 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됨을 밝히며,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하며 지속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실현을 보다 강화하고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의 제1차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2월 12일부터 발효된 동 의정서는 2012년 5월 현재 129개국 이 서명하고 147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에 서명하고,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차례의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과 2011년에 각각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4년의 병역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의 지원 입대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점,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점을 우려하며,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무력분쟁에 아동이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내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이승현, 2012).

### 4)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이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개별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청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이승현, 2012). 물론 다른 협약에서도 청원권과 관련된 조항이나 의정서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현재, CERD(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CPR(Human Rights Committee,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CAT(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방지위원회), CEDAW(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RPD(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위원회), CED(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실종위원회)의 6개 인권위원회가 권리침해와 관련된 개인청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sup>12)</sup>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개인 청원 및 대리인을 통한 청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 하에 특별히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둔 이유는 권리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청원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러한 의지 및 의견이 존중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의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견해 혹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연령, 성숙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권리협약 하의 청원권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존중과 이들의 의견표명권을 더욱 공고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위원장인 Jean Zermatten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에 아동권리협약 상에 개인 청원을 다룰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아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국제적 시스템 상에 심각한 결함이었으며, 2011년 12월에 채택된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하였다(Zermatten, 2012b).

2012년 5월 현재 22개국이 서명하였고<sup>13)</sup>, 앞으로 최소한 1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3개월이 지나야만 발효될 수 있는 동 선택의정서에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을 안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진정절차 도입의 전반적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인권과

12) <http://www.ohchr.org/EN/HRBodies/HRC/WGCRC/Pages/OpenEndedWorkingGroupIndex.aspx>

13) 현재 동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말리, 몰타, 몬테네그로, 모로코, 페루,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우르과임 (<http://treaties.un.org> 참조).

관련된 개인청원사례의 증가 및 국내법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이승현, 2012).

개인청원사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인청원제도에 가입한 상태이다. 그 중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청원절차가 활용되었는데, 자유권위원회는 총 119건에서 우리 정부가 자유권규약 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오유진, 2012).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현재까지 자유권규약에 의거 제기된 개인 청원에 대하여 정부의 조약상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배상 등을 결정한 견해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권리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헌법재판소도 유엔인권이사회 또는 종전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오재창, 2012). 국제인권조약인 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 우리나라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Jean Zermatten도 정부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Zermatten, 2012a). 이에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상 권리별 국내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아동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아동권리협약의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선택의정서를 비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유진, 2012).

동 선택의정서와 국내법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아동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아동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직접 형사절차상의 구제절차를 취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민사적 권리구제절차에서는 민법이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5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오유진, 2012). 따라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선택의정서 규정의 조화 문제에 대하여 엄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 1) 개요<sup>14)</sup>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권리의 인정이 실제 보장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인권의 내용들을 조약과 같은 법적 형태(a legal form)로 담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 국제적 인권 기준들을 마련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내용들을 확장함과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의무이행자인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법, 행정 등의 조치들을 통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하도록 했으며, 이행과 정기적인 이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또한 다른 인권조약기구들처럼 보고제도를 두고 있다. 협약 제44조에서는 당사국들에게 협약 비준 후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에는 심의 후 1년 내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심의를 받는 기간에 이미 제출기한이 되어 차기 보고서를 최소 2년 안에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2·3차 혹은 3·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제도의 목적은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현황을 이해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이행 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적합한 정책,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해당국의 아동권리 현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과, 협약이행을 위해 도입된 법적, 행정, 사법적 조치들에 관한 내용, 세분화된 통계자료, 예산 및 자원분배,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제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고와 심의를 위해서 주제별 접근법을 적용한다. 조항들의 이행상황을 1) 일반이행조치, 2) 아동의 정의, 3) 일반 원칙,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의 8개 항목으로 분류해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 항목들은 심의 시에도 논의 어젠다가 된다. 조항의 이행을 심의할 때에도 다음 4가지의 기본원칙 1) 무차별(non-discrimination), 2)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3) 생존 및 발달보장(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14) 보고제도의 개요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에 실린 내용(송신혜, 2012)을 재구성한 것임.

및 4) 아동 의사청취(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내포되어 있는 권리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입법, 정책과 실제에 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동일한 항목에 해당되는 권리들 간의 관계에만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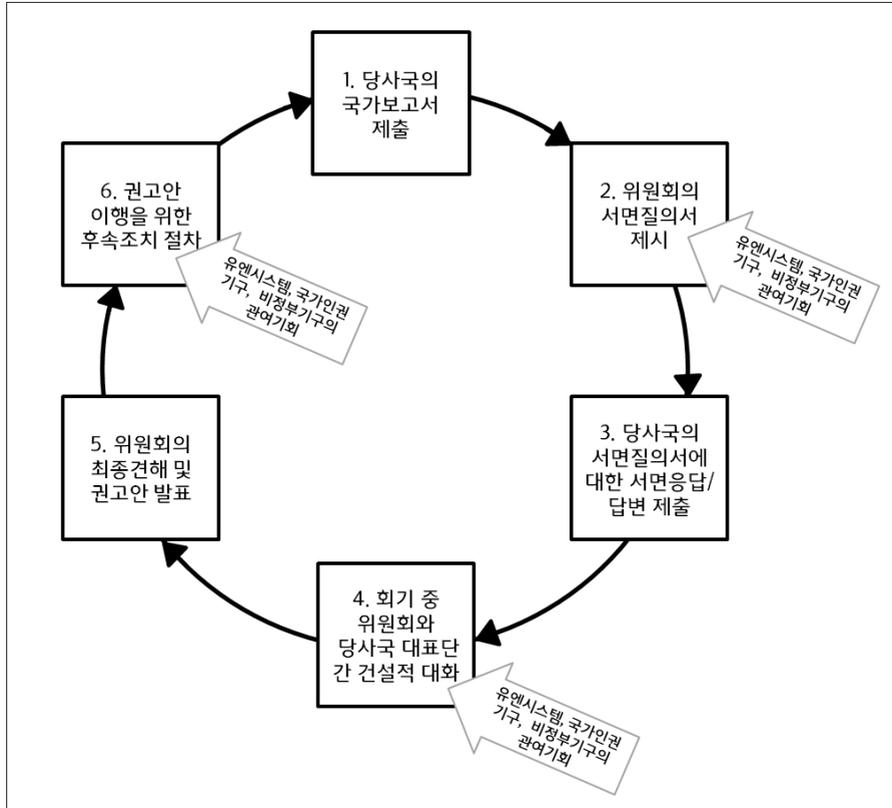
협약 제43조에서는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아동권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시정·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보고과정에서 보고서 준비를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조항에 관한 유권해석(general comments, 일반논평)을 내기도 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유일하게 개인청원제도가 없는 인권조약이었으나 2011년 제3선택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진정 접수 및 처리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보고는 공식적이고 단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과정(process)이며,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의 보고 의무는 국가에 있으나, 보고과정에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45조에서는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기구나 기타 권위 있는 기구들에게 전문적 자문제공이나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보고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일한 인권조약으로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이 대체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 실제 이행상황, 정부보고서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보고과정에서 권리 주체자인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공식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를 개최한다. 대체보고서를 제출한 비정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유엔기구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 비공식 회의의 목적은 국가보고서 심의 시 다룰 주요 이슈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부기구는 국가보고서와 실제 현황에 관한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위원회가 추가 질의서(list of issues)를 작성하고, 정부와의 논의 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국가보고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되며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정부대표 외에 관련 유엔기구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언론인, 비정부기구 및 개인들도 참관할 수 있다. 공식 심의 후에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가 발표되는데, 주요 논의사항, 성과와 이행의 장애요소, 주요 우려사항

및 제안과 권고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후에는 최종견해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II-1】 인권조약의 보고체계<sup>15)</sup>

## 2) 한국 정부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

보고제도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는 1차, 2차, 3·4차 통합<sup>16)</sup> 국가보고서를 1994년, 1999년, 2008년에 각각 제출하였고, 2011년 9월 21일에는 2008년 12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 Palais Wilson에서 개최되었다.

15) Human Rights Treaty Reporting Cycle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docs/ReportingCycle.gif>

16)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다하는 것을 돕는 예외적 조치로서, 3·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

정부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3·4차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sup>17)</sup>, 세이브더칠드런<sup>18)</sup>, 서울공익법센터(APIIL)<sup>19)</sup>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12월에 제출된 NPO연대의 민간보고서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고서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 심의에 앞서 2011년 2월에 사전 심의가 있었다.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오전과 오후로 진행되며, 심의 내용은 6개의 유엔 공식 언어로 통역된다. 한국의 NGO로는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서울공익법센터(APIIL),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심의는 위원장의 개회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정부 대표단<sup>20)</sup> 수석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에 4개 클러스터(△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오후에 4개 클러스터(△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보조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에 대해 진행되었다.

6시간의 심의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한국이 지난 수년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과 복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와 선택의정서에 관한 노력도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예산 부족, 통계 부족,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미흡, ombudsman 제도의 실효성 부족, 이주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포용적인 문화 부족,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심의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아동의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생산품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도 다루어졌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본 심의의 권고의견은 10월초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웹사이트<sup>21)</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Following the 3rd · 4th Periodic Re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제 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2010. 12)

18) Children's Voice(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대한민국 아동보고서)(2010.12)

19)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011. 9. 15.)

20)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주한 제네바 대표부의 20명으로 구성됨.

21)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crcs58.htm>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3·4차 통합 국가보고서」, 「관련 서면 자료」,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의견」 등을 번역하여 인터넷,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어린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협약의 이행에 대해서 널리 알릴 것을 권고하였고,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협약의 보고제도는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권고의견 채택,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행정적 체계들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부족으로 심의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권고사항이 일반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새로운 인권조약들의 탄생과 함께 늘어나는 보고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약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국제적 인권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정부정책의 공공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동원이 증진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행위자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와 모니터링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그 외 행위자들도 지속적인 정보수집,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송신혜, 2012).

###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1) 개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의 주도 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universal)<sup>22)</sup>의 인권상황을 유엔헌장(UN Charte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기타 국제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United

22) 2011년 7월 14일 남수단이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회원국은 기존 192개에서 193개로 늘어남.

Nations Human Rights, 2008),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국가 주도형 과정이다(<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 심의를 받는 국가는 이 과정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의무 이행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심의를 하는 국가들은 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 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UPR은 2006년 3월 15일에 개최된 6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년에 42개국씩, 4년 6개월<sup>23)</sup>간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자국 내 인권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은 UPR이 채택되기 전에도 있었다. 6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되기 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보호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인권보호를 권장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유엔인권위원회는 정치적 힘이 미약한 국가들의 인권문제만을 선별적으로 다루는 등 정치화되었다고 비판 받아 왔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6년 유엔총회는 인권위원회를 개혁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차원의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유엔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를 신설하게 되었다(이금순, 김수암, 2008).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회의 임무 및 기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sup>24)</sup>를 통해 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였는데, 이 절차는 인권유린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선별적으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국가별 결의안 제도로 운영되어 일방적이며 선별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UPR은 이와 같은 선별성을 지양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대상국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인권보호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다(서여정, 2012).

UPR 심사의 기초가 되는 문서는 총 3종류로, 검토 대상국의 국가보고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가 준비한 검토국 관련 유엔 정보 보고서(국제조약상의 조약이행사항감독기구가 해당심사국가에 내린

23) 기존 4년마다 실시되던 UPR은 2011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UPR 회기를 4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올해 2012부터 시작되는 2기 UPR부터 적용됨(A/HRC/RES/16/21).

24) 인권위원회 특별절차는 특정주제 또는 특정 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임.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 요소이기도 함. 현재(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가 있으며 61명의 담당자들이 있고, 아동과 관련한 특별절차로는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음. <http://www.apil.or.kr/847> 참고

권고나 결론, 국제인권보호제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제도인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제도가 검토 대상국가에 내린 권고사항,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기타 유엔사무기관 및 유엔특별기구에서 해당 검토국가에 대해 발표한 인권과 관련된 공식자료 등) 편집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준비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보고서 편집본이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08). 국가보고서는 2007년 9월 27일에 채택된 인권이사회 결의안(A/HRC/DEC/6/102)에 실린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UPR 시작 6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하는 2개의 보고서는 각각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국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UPR 시작 6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비정부단체, 시민단체 등의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보고서 편집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 제출 6개월 전에 UPR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 검토는 매년 3회(2주씩) 개최되는 UPR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실무그룹회의는 인권이사회 의장이 의장을 맡고 47개 이사국을 회원으로 하여 진행된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추첨으로 선출된 3명의 트로이카(troica)는 UPR의 일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며, 실무그룹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검토 대상국가는 같은 지역에서 트로이카의 보고관 중 한명이 선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특정 보고관 한 명을 다른 보고관으로 교체 요청을 할 수도 있다(서여정, 2012). 실무그룹은 매 국가마다 3시간 30분에 걸쳐 보고서 검토를 진행하는데, 먼저 검토 대상국가가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로이카가 보내준 질의에 응답한 후, 실무그룹 국가들이 발언을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며, 채택 과정에서 검토 대상국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의제나 이슈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2) 제1차 UPR(2008년 4월~2011년 10월)

이상과 같은 절차로 제1차 UPR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5월에 심의를 받았으며, 총 33개의 사항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권고사항으로는 한국 정부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제6항),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행위자 기소 및 처벌과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아동이 포함된 형사절차에는 아동권리에 민감한 절차를 채택할

것(제14항), 이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여성과 아동에 특히 신경 쓸 것(제15항), 학교와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과 비폭력적인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를 이행할 것(제29항)으로 총 4가지였다(서여정, 2012).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후속조치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 제1차 UPR 권고내용과 한국정부의 입장 및 후속조치 현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입장	소관부처	후속조치 현황 (2011)
6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및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 설치	교육과학 기술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학칙 제·개정시 미리 학생의 의견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14	부부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 (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수용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됨. -아동학대 행위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소·고발 조치로 기소 및 형사처분 받게 됨.
15	이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 (캐나다)	수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족 지원 추진체계 구축 -가정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 보호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등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 (이태리)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교육과학 기술부	-그린마일리지 도입 -학생 자치 법정 운영 -체벌금지 명문화 -교육적 생활지도 확대 등으로 이행 완료함.

\* 출처: 서여정(2012).

### 3) 제2차 UPR(2012년 6월~2016년 12월)

위와 같은 UPR 제1차 회기에서 받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7월 23일까지 UPR 사무국에 제출하고 2012년 10월에 심의를 받게 된다. UPR 제2차 회기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14회기에서 체코공화국, 아르헨티나, 가봉, 가나, 페루, 과테말라, 베냉, 스위스, 파키스탄, 잠비아, 일본, 우크라이나, 스리랑카와 함께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2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2012년 4월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제1차 UPR에서 권고 받은 사안과 관련된 지난 4년간의 성과, 한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비교적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노력을 높이 사면서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조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통합보고서 작성하여 4월 23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지난 UPR 1차 회기 당시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2008년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국제아동인권센터가 함께 작성한 보고서, 굿네이버스, Istituto Internazionale Maria Ausiliatrice, International Volunteerism Organization for Women, Education, Development에서 연대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보장,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 가정 및 학교에서의 차별 금지 및 아동학대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서여정, 2012).

##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 개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1993년에 유엔 주관으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 담겨 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유엔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해마다 수립국이 증가하여 2011년 3월까지 필리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중국 등 약 3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법무부, 2012).

## 2)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2006년 6월 30일까지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2001년 5월 21일에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2001. 5. 21)의 2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 따라 2007년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에 개최된 CESCR의 우리나라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2011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2년~2016년까지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인권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연계 및 종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확대 및 보호하고, 현재와 같은 양극화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내적으로는 인권에 관한 최고규범인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가 가입 및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

**표 II-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구분	준비 단계	개발 단계	이행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 협의를 통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주체 확정</li> <li>○ NGO/관련단체와 협의</li> <li>○ 기본원칙개발</li> <li>○ 권고안 작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li> <li>○ 대외 공표</li> <li>○ 관련 단체와 초기 회의 조직</li> <li>○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립</li> <li>○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li> <li>○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 문제 분석</li> <li>○ 관련 기관/단체와 수시 간담회</li>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 정부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계획 확정</li> <li>○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조정기구 설립</li> <li>○ NGO/관련단체와 협의</li> <li>○ 공청회/ 청문회</li> <li>○ 우선순위/특별중점 사안/취약계층 요구 사항 등 파악</li> <li>○ 국가의 다른 정책 계획과 연계 수립</li> <li>○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li> <li>○ 실행 일정 구상</li> <li>○ 이행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처의 세부계획 작성</li> <li>○ 집행기관간 공조 유지</li> <li>○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li> <li>○ 협의 및 연계망 구축</li> <li>○ 언론홍보 전략</li> <li>○ 인권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된 보고형식 개발</li> <li>○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평가 회의의 의건 수렴</li> <li>○ 협의 및 연계망 구축</li> <li>○ 국회 또는 대통령에 모니터링결과 특별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례보고서 구상</li> <li>○ 심의협의회 구성</li> <li>○ 국회 또는 대통령에 특별 보고</li> <li>○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 준비</li> <li>○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 조사</li> </ul>
주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 부	정 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기관	정부/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정부/시민단체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6)

\* 유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핸드북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과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임.

약」을 기준으로 하여, 유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핸드북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과정에 따라 수립되었다(법무부, 2012).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과정은 <표 II-2>와 같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립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편의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 피해자,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새터민, 병력자, 성적소수자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추진과제를 해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별로 따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분류되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발달단계 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이들을 따로 분류하여 정책을 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에 기준을 두고 있는 제1차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수립 당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설치·운영 확충,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아동 음부즈퍼슨 및 음부즈키드 제도 운영의 8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2008년 수정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가 제외되고,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

영',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설치·운영 및 확충'이 추가되었다.

### 3)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당시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인권적 차원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의 예방보다는 문제가 일어난 이후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 등의 특정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2011년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4차 통합보고서 심의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포괄적인 아동권리보장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정상우 등(2012)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평가에서, 최근 학생인권조례로 인권이 성장한 듯 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학업 부담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대단히 후퇴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으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 전환, 보편적 아동·청소년정책의 확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강화, 청소년 참여권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1차에서 수립되었던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양적확대를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2012)가 발표한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실린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1)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3)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4)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5) 학생자치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추진 및 운영 내실화, (7)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지속적 추진, (8)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9)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 (10)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11)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2)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13)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14)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 (15)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1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17)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18)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치료·재활 체계 구축, (19)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20)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이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학생자치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지속적 추진 등 11개의 추진과제가 신설되었고,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등 9개의 추진과제가 연속사업으로 보다 확대·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아동·청소년 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제1차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표 II-3>과 같다. 이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였으나 전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독립성 강화와 청소년희망센터의 내실화를 꾀한 점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존중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기구의 설치 및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연습과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각계의 권고안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외국 국적 및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시설입소 등의 정책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권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안가정 확대나 입양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I-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NAP 추진과제

영역	제1차 NAP	제2차 NAP
시민적 권리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참여기구 설치·운영 확충</li> <li>○ 아동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 운영</li> <li>○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설치·운영 및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li> <li>○ 학생자치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li> <li>○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li> <li>○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증진</li> <li>○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li> <li>○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내실화</li> </ul>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li> <li>○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추진 및 운영 내실화</li> <li>○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li> <li>○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li> <li>○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li> <li>○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li> </ul>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li> <l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li> <li>○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li> <li>○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li> <li>○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li> <li>○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치료·재활 체계 구축</li> </ul>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li> </ul>
특별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li> <li>○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li> </ul>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추진 체계가 미흡해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지원 체계 확대가 요구된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외에는 뚜렷한 정책이 없다. 특히 아동의 가장 기본권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관한 정책적 시도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동아리 확대 및 활동 촉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심야교습시간 단축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주말 사교육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교육 보장 및 강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은주, 2012).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연예인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노동문제나 성폭력 문제 등은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 5. 학생인권조례

### 1) 개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아동복지법 등의 국내관련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여전히 모든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통상 학생이라고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학생인권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최형찬, 2011). 학생인권은 일반적인 권리인 자율권, 보호권과 학생 신분이라는 특수한 권리인 사회적 지위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권리는 생존권, 자유권, 보호권 등을 의미하며, 특수한 권리란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사생활 보호권 등이 포함된다(안경환, 2004; 윤철수, 2005; 조미숙, 2004).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학교의 규율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의 규율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두발이나 복장 규제, 개인의 사적인 일기나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규율에 담겨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명시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최돈민, 2012).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제18조에는 ‘학생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아동·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까지 헌법,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학생 인권이 관행으로 침해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최돈민, 2012). 즉,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학생은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로 존중받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생의 인권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입법조치로, 헌법·법률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추구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학교라는 생활환경 공간에 맞추어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형욱, 2012).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기존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국가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도 이에 발맞춰 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이어지게 되었고, 현재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이 교육청 혹은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표 II-4>는 각 시·도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내용까지 조례에 담고 있다.

**표 II-4**    **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현황**

기관명	학생인권조례 추진현황
서울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서울학생인권조례</li> <li>○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안) 서명 추진(2010. 10 ~ 2011. 4)</li> <li>○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구성(2010. 11. 9)</li> <li>○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의회 이송(2011. 9. 30)</li> <li>○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 통과(2011. 12. 19)</li> <li>○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2012. 1. 26)</li> </ul>
대구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대구교육권리헌장(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규정)</li> <li>○대구교육권리헌장 태스크포스 구성(2010. 12)</li> <li>○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2012. 5. 15)</li> <li>○대구교육권리헌장 시행 예정(2012. 9. 1)</li> </ul>
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li> <li>○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통과(2012. 9. 29, 의원발의)</li> <li>○이 조례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학생인권조례와는 거리가 있음</li> <li>○조례안 공포(2011. 10. 17)</li> </ul>
광주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li> <li>○조례제정 수립(2010. 12. 18)</li> <li>○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2010. 12. 9)</li> <li>○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2011. 10. 5)</li> <li>○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2011. 10. 17)</li> <li>○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2012. 1. 1)</li> </ul>
대전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적으로 학교 현장 분위기 직시하면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li> </ul>
경기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경기도학생인권조례</li> <li>○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 구성(2009. 5. 28)</li> <li>○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발표(2010. 3. 12)</li> <li>○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심의 통과(2010. 9. 17)</li> <li>○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2011. 3. 1)(전국 최초)</li> </ul>
강원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li> </ul>

기관명	학생인권조례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권 이외에 교사의 교권보호 방안,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포함</li> <li>○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2010. 10)</li> <li>○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초안 공개(2012. 4. 26)</li> <li>○ 최종 조례안 확정하여 강원도의회 제정 요청할 계획(2012. 9월 예정)</li> </ul>
충북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충북학생인권조례</li> <li>○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 출범(2011. 5. 19)</li> <li>○ 충북교육청, 충북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입장 발표</li> <li>○ 충북학생인권조례안 1차 시안 완성(2011. 8)</li> <li>○ 충북학생인권조례 충북교육청에 제출(2011. 12. 28)</li> </ul>
충남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추진 예정</li> <li>○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도록 바른품성 5운동 활성화</li> </ul>
전북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li> <li>○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2011. 6. 27)</li> <li>○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의회 제출(2011. 10. 6)</li> <li>○ 교육위원회 의안 상정 보류 결정(2011. 11. 12)</li> <li>○ 수정된 인권조례안 공개(2012. 4. 27)</li> </ul>
전남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li> <li>○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li> <li>○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2010. 10. 13)</li> <li>○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자문위원 위촉(2010. 11. 1)</li> <li>○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입법예고(2012. 2. 9)</li> </ul>
경남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li> <li>○ 경남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출범(2011. 5. 12)(주민발의)</li> <li>○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자료 전달(2011.12. 5)</li> <li>○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2012. 5).</li> </ul>

\* 미추진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 출처: 송기춘(2011)의 자료 수정·보완한 것임.

### 3) 학생인권조례 관련 쟁점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학생인권 보장의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목록과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등에서 드러난 학교현장의 학생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김형욱, 2012).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공동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일반 대중들에 의해 환영받고 있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나타난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최도민, 2012). 첫째, 차별과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법에서는 차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직·간접적인 차별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차별을 옹호하는 입장은 차별만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상 교사의 학생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심의에서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리 사소한 정도일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수반하는 벌은 모두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사회학습이론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차별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며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 둘째,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가 여부이다.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학생인 아동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치에 관한 상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학생을 앞세워 정치활동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교육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갖는 경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도 남아 있다. 셋째, 복장·두발 자유 허용과 관련하여, 복장·두발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에서는 헌법은 개인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므로, 학생도 한 명의 개인으로,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머리 염색, 복장 자율 등을 시행하면 외모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어나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입장이다. 넷째,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性的指向)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는 기본적 인권으로 누구든지 성적지향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을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섯째,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학교 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사용할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되면 수업시간에 벨이 울리고 문자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게 되므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다른 편에서는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빼앗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학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수업에 지장을 준다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고 이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 인권의식을 함양해 학교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어 실질적인 교권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학교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반대 입장에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일 대법원에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동시에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최민호, 2012)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학생인권이 소홀하게 다뤄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하는 데 있어,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이해하고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력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였고, 2012년 4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명시(제9조제1항)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제9조제4항)하였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교사 개인의 자의적 판단기준이 아닌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학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최민호, 2012).

이상의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개정된 교육관련 법과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이 그렇다. 학생인권조례가 임의적인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 부분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상충될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의 찬반논란의 핵심에 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둘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 보호는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이수광, 2006). 학생의 인권보장 없이는 교사의 인권실현은 어려우며, 교사의 인권보장 없이는 학생의 인권실현은 이를 수 없다.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의 자유’, ‘수업의 자유’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교사의 직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혹은 ‘교육받을 권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고,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는 교사들의 자율권이 완전하게 주어졌을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배경내, 2006).

따라서 차별문제와 교사의 지도 권한의 문제 등만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다양한 인권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관계자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행정기관, 기성세대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인권에 기반을 두고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김형욱, 2012).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도 아동·청소년기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시행착오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 제 3 장

---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재범주화



## 제 3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1차년도인 2006년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영역 분류되어 개발되었다. 그러나 4차년도 연구에서 모상현과 김희진(2009)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개 영역으로 나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협약 자체에 4개 영역의 분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협약 비준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에도 이러한 분류의 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5차년도 연구(모상현 외, 2010)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기존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하여 이재연 외(2009)도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경향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재연 외(2009)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네 가지 아동권리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이 네 가지 권리를 상호의존적인 시각에서 연계하지 않고 상호 배타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은 정책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권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책 개발과 실행에 적용될 경우 정책의 분절화 및 효율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상태 및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연구의 1차년도인 2011년 연구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영역 분류되어 있는 기존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지침에 따른 클러스터로 영역 분류하고 지표체계를 수정하였다. 2011년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의 개별지표들 각각을 텍스트로 보고 이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로 범주화하여, 수정된 지표체계의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다루었고,

올해(2012년)에는 기존의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의 개별지표들을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재범주화의 자료가 되는 개별지표들은 <표 Ⅲ-1>의 기존 지표들과 <표 Ⅲ-2>의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통계자료이다. 개별지표를 재범주화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지표를 선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크게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인권의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지표로 나뉘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한 것은 기존 연구들이 행정자료 등만을 이용하여 인권 실태를 파악하였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설문문항이 지나치게 많아 조사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임희진, 김현신, 2011). 따라서 인권실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홀수년도와 짝수년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 등은 전문가 의견조사를 참고하여 삭제하였다.<sup>25)</sup>

표 Ⅲ-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발달권·참여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심 영역	세부 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1-1 취학률	○	○		○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	○		○ 학업중도포 기 이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2)	
		3-1-1-3 대학진학률	○	○		○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	○		○	
					대학진학과 사교육의 관계		
					대학진학과 가정배경의 관계		

25) 부록의 변경문항 목록 참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진학을 위한 과외교습 수강 경험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 공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3)	학교 공부에 대한 의견	학교 수업 진행 수준/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2)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하루평균 공부시간(3)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외국유학(2)			
						교원1인당 학생수		
	3-1-2 인지능력	3-1-2-1 학습부진아 출현율					○	
		3-1-2-2 창의성 지수	●	-			○	
		3-1-2-3 문제해결능력 지수	●	-			○	
		3-1-2-4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	-			○	
		3-1-2-5 자능지수	●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부모와의 대화 빈도(2)		부모님과의 대화빈도(2)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				
			3-2-1-4 청소년 여가시간과 유형	○	하루평균 여가시간	하루평균 여가시간	하루평균여 가시간(3)	
				여가시간 만족도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휴일을 보내는 방법(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별지표항목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지 표	세 부 관 심 영 역					
	3-2-1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	-		○
				지역사회여 가시설 만족도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수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4)		가정, 친구, 학교에 대한 만족도(3)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고민상담(2)/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순위*와 경험유무	고민 상담 대상과 고민거리
		3-2-1-8 부모·자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16)	●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			우울감
						청소년 자살률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			학업 스트레스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	전체적인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자신에 대한 평가(7)	
		3-2-2-4 자존감 수준		●		자아존중감
		3-2-2-5 자기 효능감				●
		3-2-2-6 정서 조절감				●
	3-2-2-7 정서적 고립감				●	
3-2-2-8 낙관성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3-2-2-9 학교생활의 적응			학교에서의 생활태도(2)	○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수	○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3-3-1-2A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 로그램 참여횟수	○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아동·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
		3-3-1-2B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				아동·청소년 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	○		○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	○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
				청소년 동아리 가입/활동 여부와 그 종류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	자신을 외톨이로 느낀 경험		○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해결능력지수 (기존의 갈등이해능력)	●	-		갈등해결 전략
		3-3-2-2 문화감수성 지수	●	-		○
		3-3-2-3 타문화수용능력 지수				
3-3-2-4 리더십 능력 지수		●	-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	○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생각		진로준비행동**
				대졸학력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견(3)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			진로교육경험유무/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	-	자신의 적성/특기계 발 진로직업선 택에 대한 의견(3)*	진로직업태 도 및 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2)**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	-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	○		정기적인 운동 실천 여부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	○		평일 평균 수면시간
		3-5-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2)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	○		○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	○		○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	○		○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	○		○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3-5-2-6 유연성(앉아 뒤통 일으키기)				
4-1 자기 결정권 (=청소 년의견 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			○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의 비율	○			○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 용비율	○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 년 의견 존중 정도	●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의 여부	가정 중대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가정 규칙 결정시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 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	-		○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	진로/진학문 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진로/진학문 제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상급학교 선택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			진로선택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입시학원이 나 가정교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4-1-4 문화· 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생활용품 구입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3)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과 대응태도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2)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 여부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	복장/두발에 대한 부모님 간섭 여부		○
4-2-2 학교에서 의 의견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표현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	선생님께 자유롭게 의견표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학교 홈페이지에 의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인터넷에 게시글/댓글 작성 경험(2)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3)
4-3 집회· 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 의 집회 · 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학교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여부		○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	
	4-3-2 학교밖 에서의 집회· 결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 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4-3-2-3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청소년의 집회·결사 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4-3-2-4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4-4 정보 접근권 및 정보참 여	4-4-1 도서 에 대 한 접 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			○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	-		○
	4-4-2 인 터 넷 에 대 한 접 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			○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한 비율	○			○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
	4-4-3 알 권 리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학교의 학생생활규 정등 공지 여부 및 인지도(2)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아동·청소 년 친화적 인권 정보 제공 정도(4)	
4-5 사 회 참 여 및 참 정 권	4-5-1 사 회 참 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원봉사 참여 횟수, 시간, 이유(3)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	학교에서 교외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아르바 이트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2)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 부 관 심 영 역	개 별 지 표 항 목				
		4-5-1-3 청소년 실업률	○	○		○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
		4-5-1-5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	-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청소년 정책 및 지역 청소년시설 에 대한 청소년의견 반영 여부(2)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	조건없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학생회 운영 현황(4)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학교의 규칙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학교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
	4-5-2 학교에서 의 참여				학교의 규칙/교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 비율	○	-	학교 운영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 원회 참여 여부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결정권(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2006년 개발 <sup>26)</sup>	2007년 조사 <sup>27)</sup>	2008년 조사 <sup>28)</sup>	2010년 조사 <sup>29)</sup>
요 요 요	세부 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			○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 권 보장 수준	
4-6 참여관 련 인식		4-6-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3)/청소 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2)
		4-6-0-2 참여의 장애				참여의 장애 요인
		4-6-0-3 참여 효과				○
		4-6-0-4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활성화 방안과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2)
		4-6-0-5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권 보장 수준

1) ○는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 지표, ● 또는 텍스트는 실태조사 결과 활용 지표

2) (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임.

3) \* 국가별 조사 중,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된 항목

4) \*\* 초등학교생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 항목

26) 2006년 지표 개발 기준: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27) 2007년 지표 선정 기준: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28) 2008년 지표 선정 기준: 국가별 비교조사라는 목적에 따라 2007년도에 개발된 설문조사 도구 재검토, 조사대상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비교가능한 공통지표 및 조사도구 확정,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문항 보완 및 선별 작업 실시

29) 2009년 지표 선정 기준: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

표 III-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아동관련 예산
2. 아동의 정의	- 아동인구	- 아동인구	- 아동인구
3. 일반 원칙		- 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 1997	-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 징계절차 -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 학교폭력 유형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체벌금지 학교 수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990-1993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 1958-1993년 입양 추이 - 국외 입양 현황과 분포, 1993 - 아동 복지 시설 현황, 1993 - 연도별 영·유아 보호 시설수 및 아동수	-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990-1998 - 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 1958-1998 - 1998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연도별 영·유아 보호시설 및 아동현황: 1975-1978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p>6. 기초보건 및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예방접종률(1989)</li> <li>- 전국 재가장애 아동의 연령별·성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li> <li>- 시설별 보육 현황</li> <li>-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예방접종률: 1994</li> <li>- 교통사고 사망자: 1990-1998</li> <li>- 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 1995</li> <li>- 장애아의 연령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li> <li>- 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아동 수: 1997</li> <li>- 시설별 보육현황: 1990-1997</li> <li>- 결연사업 실적: 1998</li> <li>-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1985-1998</li> <li>- 사회개발 및 사회보장 예산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li> <li>-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li> <li>- 다문화 아동 현황</li> <li>- 특수학교 학생 통학 현황</li> <li>- 영아사망률</li> <li>- 모성사망률</li> <li>-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 산전수진을</li> <li>-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 수진 횟수</li> <li>- 저체중아 발생률</li> <li>- BCG신생아 예방접종 실적</li> <li>- 예방 접종률</li> <li>-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li> </ul>
<p>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학생의 현황(1993)</li> <li>- 사립학교 현황(1993)</li> <li>- 교육 예산의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황: 1998</li> <li>-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1995-1998</li> <li>-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 1988-1996</li> <li>- 학교급별 진학률</li> <li>- 만5세아 유치원 취원율: 1981-1999</li> <li>- 특수학교 개황: 1995-1999</li> <li>- 특수교육현황: 1999</li> <li>- 사립학교 현황</li> <li>-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1998</li> <li>-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1인당 공교육비</li> <li>- 남·녀 고등교육 진학 비율</li> <li>- 학교 현황</li> <li>- 학급당 학생수</li> <li>- 교원 1인당 학생수</li> <li>- 학교급별 진학률</li> <li>-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li> <li>- 중·고등학생 학업중단율</li> <li>- 특수학교 현황</li> <li>-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li> <li>-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li> <li>-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li> </ul>

구 분	제1차 국가보고서	제2차 국가보고서	제3·4차 국가보고서
		진학추이: 1995-1997 - 교육예산의 규모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990-1997 -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황: 1992-1996 - 아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 1991-1997 - 전국 문화공간 현황: 1997	-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 수 -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 시간
8. 특별 보호 조치	- 청소년 범죄 구성비	- 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 1993-1997	-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율 - 소년범죄 처리 현황 - 마약류사법 연령별 현황 - 환각물질 흡입사법 연령별 현황 -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재범주화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재범주화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지표 구분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과 UNICEF(2007)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체크리스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및 기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문서들을 참고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에 속해 있던 개별지표들을 「시민적 권리와 자유」(「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가정환경과 대안양육」(「부모의 지도와 책임」,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생활수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영역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에서,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아동이 학교밖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학교의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는 「결사 및 집회의 자유」로 분류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지표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로 다루어진 바는 없었으나, 병역의무는 만18세 이상 남자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이 연구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하위 영역에 포함하였다. 제1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 인정’ 권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수행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중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 자녀의견 존중정도,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보육시설 관련 지표를 배치하고, 방과후 보육 관련 지표는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배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다른 여타의 권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선 선행 과제이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으로 나뉜다. 개별지표를 재범주화함에 있어서 「교육에의 권리」에는 교육에의 접근 및 기회에 관한 지표(직업상의 훈련 및 지도 포함)를, 「교육의 목표」에는 교육의 내용 및 질과 관련된 지표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의무교육, 무상교육, 진학률, 진로교육 및 중도탈락방지 등에 관한 지표는 「교육에의 권리」에, 지식 습득을 비롯한 교육의 수단, 교육환경, 교수태도 등과 관련된 지표는 「교육의 목표」에 포함되었다.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에 걸쳐 지표를 재범주화하여,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한 지표는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된 가장 최근 연도의 출처를 기준으로 이러한 자료가 수록된 간행물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및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영역	하위영역	1차년도(2011년) 산출지표	2차년도(2012년) 산출지표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li> <li>-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li> <li>- 사회참여 경험도</li> <li>-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li> <li>-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li> <li>-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li> <li>- 청소년의 선거참여율</li> <li>-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li> <li>-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li> <li>- 참여권 보장 수준</li> </ul>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li> <li>-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li> </ul>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사·집회 경험률</li> <li>-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li> <li>-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li> </ul>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li> <li>-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li> <li>-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li> <li>-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li> <li>-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li> <li>-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li> </ul>
	○정보접근권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매체 이용률</li> <li>-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li> <li>- 어린이도서관 수</li> <li>-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li> <li>- 매체 이용률</li> </ul>

영역	하위영역	1차년도(2011년) 산출지표	2차년도(2012년) 산출지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 경험률</li> <li>-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li> <li>-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li> <li>-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li> <li>-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li> <li>-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li> </ul>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관계</li> <li>- 부모와의 대화시간</li> <li>-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li> <li>- 보육시설 수</li> <li>-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li> <li>-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li> <li>-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li> <li>-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li> </ul>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li> <li>- 소년소녀가정 현황</li> </ul>	
	○입양(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입양 현황</li> <li>- 가출청소년 비율</li> <li>-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li> <li>-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li> </ul>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li> <li>-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li> <li>- 방임 경험률</li> </ul>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		-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
장애, 기초적 보건의 복지	○장애(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li> <li>- 장애 청소년 취업률</li> <li>-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li> </ul>	

영역	하위영역	1차년도(2011년) 산출지표	2차년도(2012년) 산출지표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임신중절률</li> <li>- 15-19세 출산율</li> <li>- 0세의 기대여명</li> <li>- 사고 사망률</li> <li>-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li> <li>- 자살률</li> <li>-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li> <li>-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li> <li>- 범죄 피해건수</li> <li>-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li> </ul>	
	○ 보건서비스(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 사망률</li> <li>- 아동·청소년 사망률</li> <li>- 건강검진율</li> <li>-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li> <li>- 의료급여 대상자 수</li> </ul>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평가</li> <li>-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li> <li>- 비만율</li> <li>- 운동실천율</li> <li>- 아침식사 결식률</li> <li>- 수면시간</li> <li>- 스트레스 인지율</li> <li>- 행복도</li> </ul>	
	○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교육 경험률</li> </ul>	
	○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율</li> <li>- 음주율</li> <li>-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li> <li>-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li> <li>-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li> <li>-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li> </ul>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율</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li> <li>-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li> <li>-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li> <li>-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li> <li>-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li> <li>-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li> <li>- 청소년 실업률</li> </ul>
	○ 생활수준(제27조 1항, 2항, 3항)		

영역	하위영역	1차년도(2011년) 산출지표	2차년도(2012년) 산출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황</li> <li>- 취학률</li> <li>- 진학률</li> <li>- 학생 1인당 공교육비</li> <li>- 학생 1인당 사교육비</li> <li>- 진로교육 경험률</li> <li>- 진로교육 만족도</li> <li>- 학업중단율</li> <li>- 학교상담교사 배치율</li> </ul>
	○ 교육의 목표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1인당 학생 수</li> <li>- 학업성취도</li> <li>- 학습부진아 출현율</li> <li>- 학교수업 이해도</li> <li>- 학교수업 만족도</li> <li>-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li> <li>- 사교육 경험률</li> <li>-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li> <li>-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li> <li>-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li> <li>-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li> <li>- 인권교육 실시율</li> <li>-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li> </ul>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li> <li>- 청소년수련시설 수</li> <li>-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li> <li>- 여가문화활동 필요도</li> <li>- 여가문화활동 참여도</li> <li>-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li> <li>-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li> <li>-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li> </ul>

영역	하위영역	1차년도(2011년) 산출지표	2차년도(2012년) 산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활동 참가율</li> <li>-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li> <li>-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li> <li>- 여가활동 만족도</li> </ul>
특별 보호 조치	○법적 분쟁상의 아동	-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착취 상황하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근로 시간</li> <li>-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li> <li>- 근로여건 만족도</li> <li>-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li> <li>-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li> <li>- 성매매 경험률</li> <li>- 성피해 경험률</li> </ul>	

###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타당성 평가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136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5개 영역, 22개 하위영역에 재범주화하고, 현재 범주화되어 있는 지표들이 새로운 지표체계의 영역을 설명하는 지표로 타당한지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타당성 평가는 2011년과 2012년의 2개년 간 산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가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인권 환경을 모니터링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지표의 타당성 평가는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6일까지 온라인 의견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4월에 실시하였던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의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한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연구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 현장 전문가에게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배포하고, 각 지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조사가 실시되었고, 1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지표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개 항목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교적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총 136개의 지표 중 2개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의 2/3 이상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범주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들의 응답결과 중 타당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영역인 「표현의 자유」 및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범주화된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와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이었다. 먼저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지표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의의’라는 단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체벌’에 대한 생각의 개인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질문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고, 또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번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이 두 개의 지표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수년간의 인권지표 개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축적된 산물인 만큼, 추후 연구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제 4 장

---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제 4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내용은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1항)이다. 이 절에서는 1차년도(2011년)에 다루지 못한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1) 표현의 자유

##### (1) 지표의 의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협약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는 자유인데, 이 조항의 1항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사상·신조의 발표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 사실, 감정 등에 관련된 일체의 전달활동을 포함한다. 또 언어, 인쇄물, 음악, 영화, 연극, 회화, 사진 등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발표의 자유 뿐 아니라 누릴 자유를 포함하며, 널리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보 또는 사상을 추구하고 누리는 자유도 포함하여 ‘알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喜田, 森田, 広沢, 荒牧, 2009).

이 조항의 2항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과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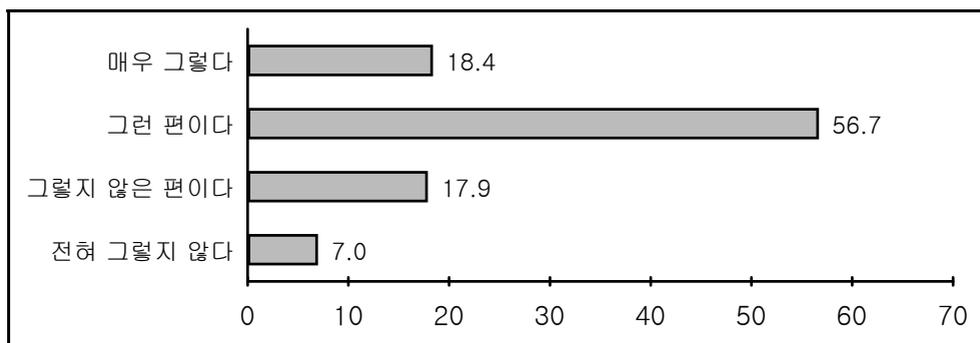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회참여 경험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참여권 보장 수준'을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사회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따라 사회나 정치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합리성, 효용성 등에 따라 여러 정책을 시행·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한다. 아동·청소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때 사회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참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는 [그림 IV-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75.1%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성·교급·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4.022, p<0.001$ ). 이는 여학생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초등학생(80.2%), 일반계 고등학생(74.5%), 중학생(71.8%), 전문계 고등학생(71.5%)의 순으로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75.569, p<0.001$ ).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chi^2=81.067, p<0.001$ ).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 중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사회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사회나 정치적인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9.1	19.2	52.0	19.7	100(4766)	124.022***
	여	4.6	16.5	61.9	17.0	100(4317)	
	전체	7.0	17.9	56.7	18.4	100(9083)	
교급	초	6.3	13.4	60.1	20.1	100(2805)	75.569***
	중	8.2	20.0	54.5	17.3	100(3110)	
	일반계고	5.8	19.7	56.2	18.3	100(2435)	
	전문계고	8.0	20.5	54.0	17.5	100(733)	
	전체	7.0	17.9	56.7	18.4	100(9083)	
경제수준	상	7.1	15.5	51.2	26.2	100(1271)	81.067***
	중	6.6	18.4	58.0	16.9	100(7266)	
	하	10.7	18.2	50.1	21.0	100(495)	
	전체	6.9	18.0	56.6	18.5	100(9032)	

\*  $p<0.05$ , \*\*  $p<0.01$ , \*\*\*  $p<0.001$

②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거나 청소년 관련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은 실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의견 표현은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의견 표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의 ‘청소년 관련 문제의 의견제시 필요도’와 ‘청소년 정책에의 의견제시 필요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IV-2>).

**표 IV-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단위: %)

구분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만13~24세	3.1	11.2	52.2	33.6	4.8	14.7	51.7	28.8
특/광역시	3.6	12.5	53.0	30.9	6.1	15.0	51.7	27.1
동부	2.4	10.1	51.8	35.7	3.3	14.0	51.3	31.4
읍/면부	3.5	9.9	50.2	36.5	4.2	16.1	52.7	26.9
남	3.6	14.2	52.5	29.7	5.8	17.9	50.3	26.1
여	2.6	8.5	51.8	37.1	3.8	11.9	53.0	31.3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청소년 관련 문제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와 “청소년 정책에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 재구성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만13~24세 청소년들의 85.8%가 청소년 관련 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청소년관련 문제 의견제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만13~24세 청소년들의 81.5%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남자 청소년일수록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의견제시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보다 조금씩 낮은 수치를 보이는 데, 이는 만13~24세의 청소년들은 국가차원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보다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사회참여 경험도

사회참여 경험도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실제로 의견을 표현했던 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참여 경험도와 관련하여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청소년 관련 문제 의견제시 참여도’와 ‘청소년 정책에 의견제시 참여도’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만13~24세 청소년 중 17.6%만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경험이 있었으며, 5.1%만이 청소년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실제 경험도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 만13~24세 청소년의 85.8%와 81.5%이 청소년 관련 문제나 청소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참여도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정책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청소년 관련 문제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의 차이에서보다도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청소년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청소년 관련 문제 의견제시 필요도’와 상반되는 결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제시 필요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낮으나 실제 참여도는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참여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사회참여 경험도

(단위: %)

구분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 참여하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 참여하는 편이다
만13~24세	51.9	30.6	14.2	3.4	61.6	33.3	3.6	1.5
특/광역시	50.4	31.6	14.0	4.0	62.0	32.4	3.7	1.9
동부	52.7	30.0	14.2	3.2	59.6	35.9	3.2	1.3
읍/면부	54.8	28.6	14.9	1.7	66.1	29.0	4.5	0.5
남	53.9	28.8	13.3	4.0	63.2	32.0	3.5	1.3
여	50.0	32.2	15.0	2.7	60.1	34.6	3.7	1.6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청소년 관련 문제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와 “청소년 정책에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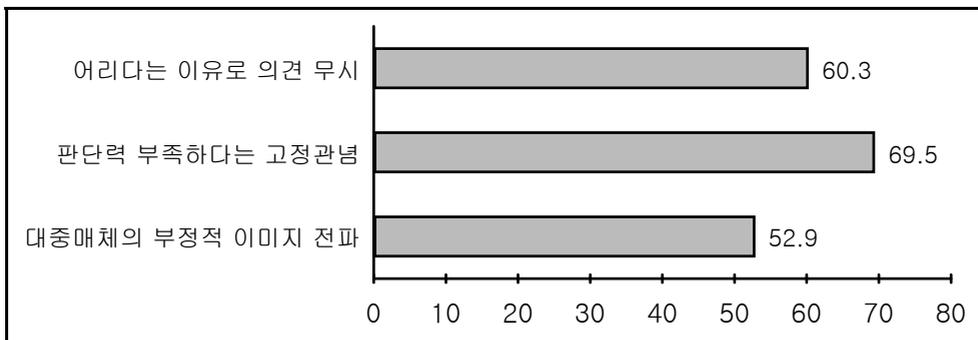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실제 참여 경험도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참여도의 패턴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과 일반적인 청소년 관련 문제보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의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점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이 대도시,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은 덜 느끼더라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시간적·심리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의 의견제시 필요도와 참여도의 차이가 60%이상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대체로 학령기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그 외의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공부 외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실제 참여하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나가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적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다양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④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를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송이나 신문이 만들어낸다’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해 봄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아동·청소년의 60.3%는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9.5%는 우리사회에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52.9%는 방송이나 신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본다면, 아동·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혹은 대중매체가 아동·청소년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 무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존재’,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전파’에서 각각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71.785, p<.001, \chi^2=66.767, p<.001, \chi^2=34.580, p<.001$ ). 즉,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한다’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6%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전파’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53.3%, 여학생의 52.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전파’와 달리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한다’와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여학생이 더 높은 이유는 여학생의 경우 어리다는 것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58.989, p<.001, \chi^2=908.899, p<.001, \chi^2=1794.020, p<.001$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세 가지 질문 항목 모두에서 70%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고등학생이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를 살펴보면,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50.159, p<.001, \chi^2=38.569, p<.001, \chi^2=51.516, p<.001$ ).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또한 지역의 규모가 큰 곳에 거주할수록 이들 아동·청소년이 좀 더 폭넓은 사회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알게 되고, 또한 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IV-4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 무시	성별	남	11.4	31.3	42.4	14.9	100(4768)	71.785***
		여	8.6	27.6	51.1	12.7	100(4313)	
		전체	10.1	29.5	46.5	13.8	100(9081)	
	교급	초	21.8	38.2	31.6	8.5	100(2804)	1058.989***
		중	7.1	30.4	47.8	14.7	100(3109)	
		일반계고	2.4	21.1	58.9	17.5	100(2436)	
		전문계고	3.5	20.7	57.3	18.4	100(733)	
		전체	10.1	29.5	46.5	13.8	100(9082)	
	지역 규모	대도시	8.4	28.7	49.6	13.3	100(3949)	50.159***
		중소도시	10.8	30.1	44.1	15.0	100(3843)	
		읍/면	13.3	30.5	44.3	11.9	100(1290)	
		전체	10.1	29.5	46.5	13.8	100(9082)	
	가족 유형	양부모	9.9	29.9	46.3	13.8	100(7998)	36.190***
		한부모	8.3	24.8	51.7	15.2	100(774)	
		조손가정	20.4	32.4	40.7	6.5	100(108)	
		기타	15.8	31.6	40.4	12.3	100(114)	
	전체	10.0	29.5	46.7	13.8	100(8994)		
경제 수준	상	21.7	29.6	36.9	11.8	100(1272)	289.727***	
	중	8.3	30.3	47.7	13.6	100(7264)		
	하	5.5	18.1	54.4	22.1	100(493)		
	전체	10.1	29.6	46.6	13.8	100(9029)		
미성숙하여 판단력 부족하다는 고정 관념	성별	남	10.2	23.6	46.9	19.3	100(4768)	66.767***
		여	7.1	19.8	54.7	18.4	100(4316)	
		전체	8.7	21.8	50.6	18.9	100(9084)	
	교급	초	18.3	32.1	39.1	10.5	100(2807)	980.899***
		중	6.1	21.1	52.1	20.6	100(3109)	
		일반계고	2.2	13.1	60.1	24.6	100(2435)	
		전문계고	4.6	14.2	56.7	24.5	100(732)	
		전체	8.7	21.8	50.6	18.9	100(9083)	
	지역 규모	대도시	7.5	20.5	52.9	19.1	100(3952)	38.569***
		중소도시	9.2	22.0	49.4	19.4	100(3843)	
		읍/면	10.9	25.4	47.1	16.5	100(1290)	
		전체	8.7	21.8	50.6	18.9	100(9085)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IV-4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계속)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미성숙하여 판단력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가족유형	양부모	8.7	22.0	50.6	18.6	100(7999)	23.433**
		한부모	6.8	18.1	53.2	21.8	100(774)	
		조손가정	10.3	30.8	43.0	15.9	100(107)	
		기타	14.2	20.4	48.7	16.8	100(113)	
	경제수준	상	17.0	25.2	40.2	17.6	100(1273)	218.158***
		중	7.3	21.9	52.5	18.3	100(7263)	
		하	6.9	11.7	50.8	30.6	100(494)	
		전체	8.7	21.8	50.7	18.8	100(9030)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전파	성별	남	15.3	31.4	37.2	16.1	100(4762)	34.580***
		여	13.4	34.3	39.7	12.6	100(4307)	
		전체	14.4	32.8	38.4	14.5	100(9069)	
	교급	초	32.9	42.1	19.5	5.6	100(2802)	1794.020***
		중	8.8	33.0	40.9	17.3	100(3104)	
		일반계고	3.2	24.4	53.1	19.3	100(2430)	
		전문계고	4.9	23.8	51.0	20.4	100(732)	
	지역규모	전체	14.4	32.8	38.4	14.5	100(9068)	51.516***
		대도시	12.6	31.5	40.9	14.9	100(3947)	
		중소도시	14.8	33.1	37.2	14.9	100(3834)	
		읍/면	18.6	35.6	34.0	11.8	100(1289)	
	가족유형	전체	14.4	32.8	38.4	14.5	100(9070)	24.772**
		양부모	14.5	32.9	38.2	14.3	100(7988)	
		한부모	10.6	30.2	42.0	17.2	100(774)	
		조손가정	20.4	34.3	38.9	6.5	100(108)	
		기타	17.4	33.9	35.7	13.0	100(115)	
경제수준	전체	14.3	32.7	38.5	14.5	100(8985)	316.645***	
	상	28.2	33.8	25.7	12.3	100(1272)		
	중	12.3	33.2	40.2	14.2	100(7252)		
	하	8.3	23.4	44.3	24.0	100(492)		
전체	14.4	32.7	38.4	14.5	100(9016)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6.190, p<.001, \chi^2=23.433, p<.01, \chi^2=24.772, p<.01$ ).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chi^2=289.727, p<.001, \chi^2=218.158, p<.001, \chi^2=316.645, p<.001$ ). 가족유형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인식의 차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사회에 투영시켜 바라보기 때문으로, 가족유형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⑤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또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해당 정책의 수혜자이자 시설 사용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의제 수용률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IV-5**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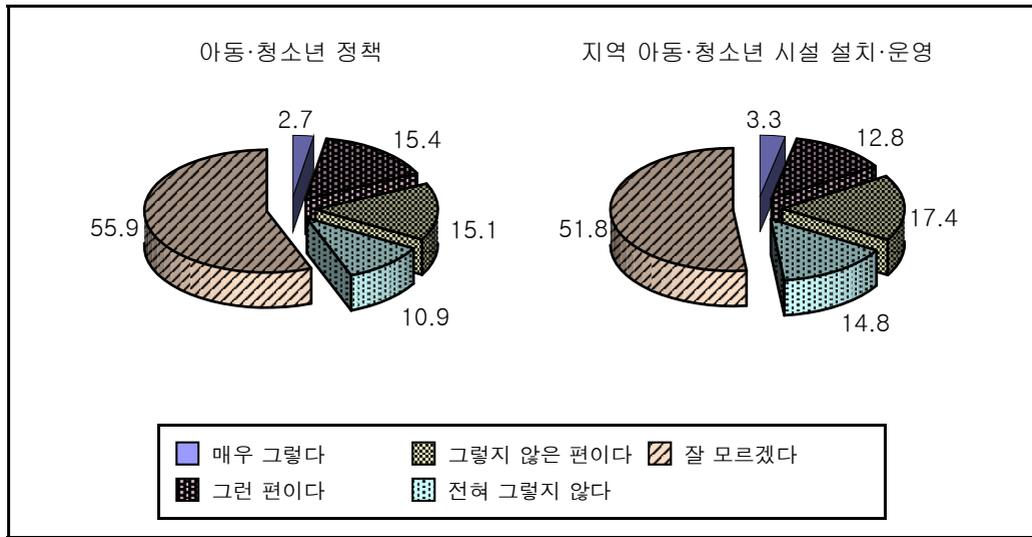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li> <li>-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li> </ul>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li> <li>-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li> </ul>	88.6%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li> <li>-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li> </ul>	89.2%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18개 과제)</li> <li>-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li> </ul>	83.3%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li> <li>-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li> </ul>	82.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li> <li>-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li> </ul>	70.0%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li> <li>-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li> </ul>	92.4%

\* 자료: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여성가족부, 2011). <표 IV-5>의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에 의해 얼마나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이다.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청소년정책 의제 및 과제는 80%이상의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아동·청소년에게 효용성 있는 정책 및 청소년 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도 그 의견이 무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들은 더 이상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지역의 청소년시설(예: 놀이공간, 도서관, 문화의집, 수련관 등)을 설치·운영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그림 IV-3]). 먼저, 아동·청소년 정책 마련 및 시행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55.9%의 아동·청소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0%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 18.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의 아동·청소년시설(예, 놀이공간, 도서관, 문화의집, 수련관 등)을 설치·운영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도 51.8%의 아동·청소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2%가 ‘그렇지 않다’, 1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잘 모르겠다’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이유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참여 경험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실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의견을 제시했던 경험이 적었고, 또한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정책 및 시설 설치·운영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에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그렇다’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정책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점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3】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도(%)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나 지역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이나 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하여, 남학생의 경우 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chi^2=37.750, p<.001, \chi^2=60.132, p<.001$ ).

학교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chi^2=571.304, p<.001, \chi^2=441.116, p<.001$ ).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아동·청소년 정책에서는 39.3%, 지역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는 41.9%로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시설이 고등학생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효용성 있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정책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더욱 더 소극적으로 활동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및 시설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표 IV-6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N)	$\chi^2$
아동 청소년 정책 마련 및 시행	성별	남	12.1	13.5	16.2	3.0	100(4770)	37.750***
		여	9.7	16.7	14.4	2.3	100(4318)	
		전체	10.9	15.1	15.4	2.7	100(9088)	
	교급	초	7.4	10.5	19.7	6.4	100(2811)	571.304***
		중	9.4	12.5	14.6	1.4	100(3109)	
		일반계고	16.5	22.8	11.5	0.5	100(2435)	
		전문계고	12.4	17.7	14.5	1.6	100(733)	
	경제 수준	전체	10.9	15.1	15.4	2.7	100(9088)	204.200***
		상	10.3	12.1	19.0	7.8	100(1274)	
		중	10.6	15.6	15.2	1.8	100(7267)	
		하	17.4	15.4	8.7	2.0	100(494)	
	지역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성별	남	15.3	14.8	13.5	4.0	100(4769)
여			14.2	20.3	12.1	2.5	100(4314)	
전체			14.8	17.4	12.8	3.3	100(9083)	
교급		초	11.7	14.4	16.9	7.6	100(2805)	441.116***
		중	13.9	15.3	12.4	1.7	100(3108)	
		일반계고	19.3	22.6	9.5	0.6	100(2435)	
		전문계고	15.0	19.9	10.1	2.2	100(732)	
경제 수준		전체	14.8	17.4	12.8	3.3	100(9080)	209.895***
		상	15.3	15.3	16.1	9.0	100(1271)	
		중	14.1	17.9	12.6	2.4	100(7265)	
		하	22.4	16.2	8.1	1.8	100(495)	
전체		14.7	17.4	12.8	3.3	100(9031)		

\*  $p < 0.05$ , \*\*  $p < 0.01$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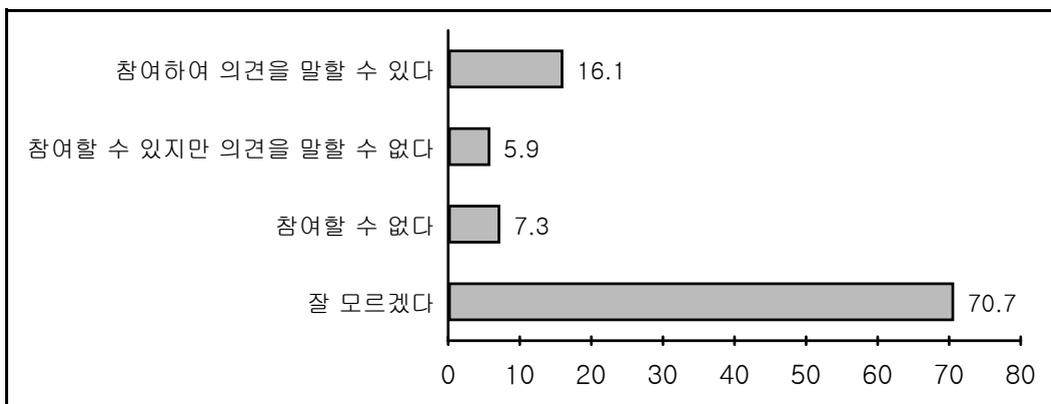
있다고 생각하였다( $\chi^2=204.200$ ,  $p < .001$ ,  $\chi^2=209.895$ ,  $p < .001$ ).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10명 중 3~4명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시설에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일정부분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이들이 학교 구성원의 일부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그림 IV-4]에 제시되어 있다. 70.7%의 아동·청소년들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 외의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비율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다’와 ‘참여할 수 없다’의 응답률의 2배 이상이 되는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학교가 학생대표에게 학교 구성원으로써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V-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2.842, p<0.001, \chi^2=16.987, p<0.01$ ). 교급에 따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의 응답률이 모든 교급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교급이 낮을수록 ‘참여할 수 없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들을 주체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고가 미성숙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학교 사회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에 소재해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보다 권위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7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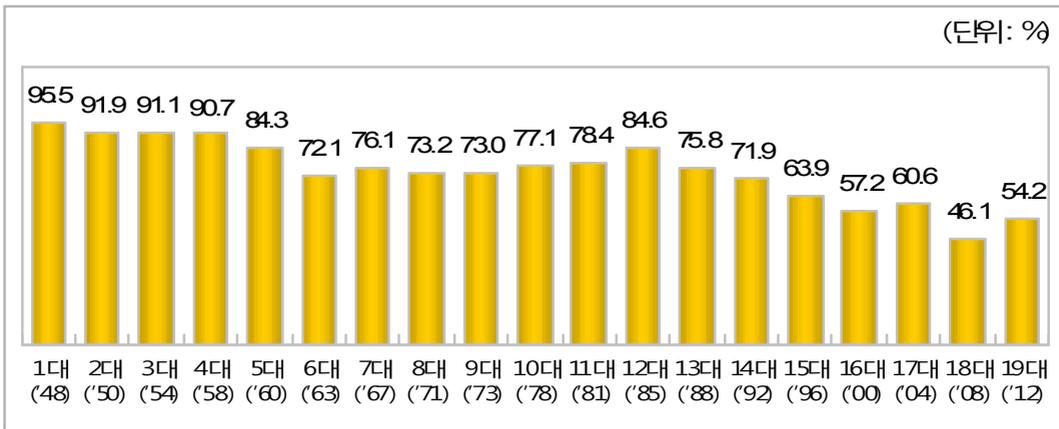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 (N)	$\chi^2$
교급	초	8.3	5.6	18.5	67.6	62.842***
	중	7.0	5.6	13.4	74.1	
	일반계고	5.9	6.5	17.9	69.8	
	전문계고	9.5	6.3	12.4	71.8	
	전체	7.3	5.9	16.1	70.7	
지역 규모	대도시	7.0	6.9	16.3	69.8	16.987**
	중소도시	7.8	5.0	15.8	71.4	
	읍/면	6.8	5.1	16.3	71.9	
	전체	7.3	5.9	16.1	70.7	

\*  $p<0.05$ , \*\*  $p<0.01$ , \*\*\*  $p<0.001$

⑦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청소년의 선거참여율은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인 선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의사표현방식과 관련된 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로 나뉘며, 만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청소년 대상 연령 중 만 19~24세의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선거참여율과 관련된 자료는 2012년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그림 IV-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으나 초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08년의 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2년에 약간 증가하였다. 2012년의 투표율은 54.2%로 우리나라의 선거가능연령에 속하는 국민의 약 2명 중 1명이 선거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투표율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투표율 변화를 살펴본 내용은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9세와 20대 전반의 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각각 47.2%와 45.4%로 나타나 전체 투표율인 54.2%보다 낮았으나 20대 후반이나 30대 전반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4%p나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국민으로서 투표를 통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투표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본다면 18대와 19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남자 청소년의 투표율이 여자 청소년의 투표율보다 약 7~16%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의 투표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청소년 정책 의견제시 필요도과 참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여학생이 좀 더 정치,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8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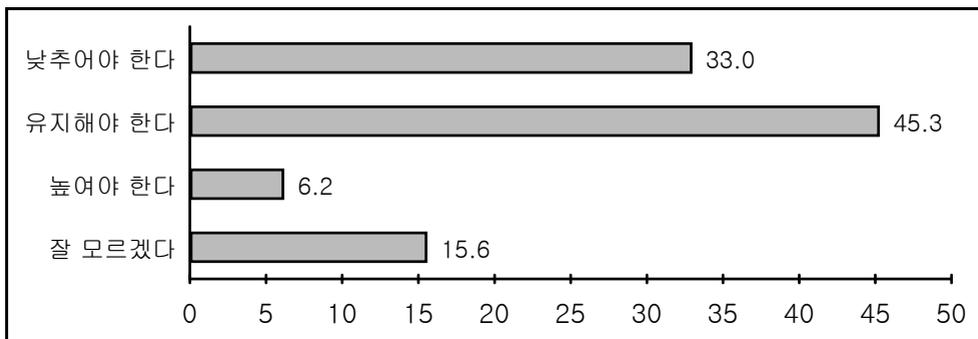
		19세	20대전반	20대후반	30대전반	30대후반	40대	50대	60세이상
19대 국선 (2012)	남	50.6	50.0	36.3	39.9	47.4	53.2	64.2	76.4
	여	43.4	40.4	39.5	43.7	50.8	52.1	60.5	62.7
	전체	47.2	45.4	37.9	41.8	49.1	52.6	62.4	68.6
18대 국선 (2008)	남	38.6	40.9	23.4	29.6	38.9	49.6	63.1	74.3
	여	27.3	24.1	25.0	32.5	40.0	46.1	57.5	59.1
	전체	33.2	32.9	24.2	31.0	39.4	47.9	60.3	65.5
17대 국선 (2004)	남	-	52.6	41.1	51.5	60.0	67.5	77.2	80.7
	여	-	39.0	45.6	54.9	59.7	64.4	72.3	65.0
	전체	-	46.0	43.3	53.2	59.8	66.0	74.8	71.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재구성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에서 이슈화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으로, 일부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곤 한다. 2012년 현재 203개국에 선거가능 연령을 만18세로 제한하고 있고,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국가는 선거가능연령을 만16세로 제한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선거가능연령이 낮으며, 유럽연합 등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할 때 선거권을 갖게 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가늠해보고 이를 선거와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 참고한다면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그림 IV-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의 45.3%의 청소년들은 현행 선거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33.0%에 달하고 있다. 즉, 약 10명 중 3~4명은 선거연령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6%나 있는 것으로 보아 10명 중 1~2명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IV-6】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경제수준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현행 선거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chi^2 = 47.739$ ,  $p < .001$ ). 이는 성별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의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 남학생보다 좀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9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낮추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N)	$\chi^2$
성별	남	33.2	43.5	8.1	15.3	100(3302)	47.739***
	여	32.8	47.3	4.0	15.8	100(2968)	
	전체	33.0	45.3	6.2	15.6	100(6270)	
학교유형	중	38.6	38.3	4.5	18.6	100(3108)	223.983***
	일반계고	27.4	54.4	7.4	10.8	100(2432)	
	전문계고	27.8	44.8	9.0	18.4	100(730)	
	전체	33.0	45.3	6.2	15.6	100(6270)	
지역규모	대도시	31.6	46.6	6.5	15.3	100(2770)	12.940*
	중소도시	33.7	45.1	6.1	15.1	100(2969)	
	읍/면	35.7	41.2	5.2	17.9	100(805)	
	전체	33.0	45.3	6.2	15.5	100(6271)	
경제수준	상	35.6	41.0	8.6	14.8	100(534)	23.204**
	중	32.3	46.4	5.8	15.4	100(5246)	
	하	38.3	37.4	6.8	17.4	100(454)	
	전체	33.0	45.3	6.1	15.5	100(6234)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학교유형에 따라서도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chi^2=223.983$ ,  $p < .001$ ). 즉, 중학생의 38.6%가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약 27%만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선거연령을 하향화했을 경우, 직접 선거를 할 수 있게 될 고등학생이 오히려 중학생보다 낮추자는 의견이 적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좀 더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학이나 취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공부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교급의 청소년들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참여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소극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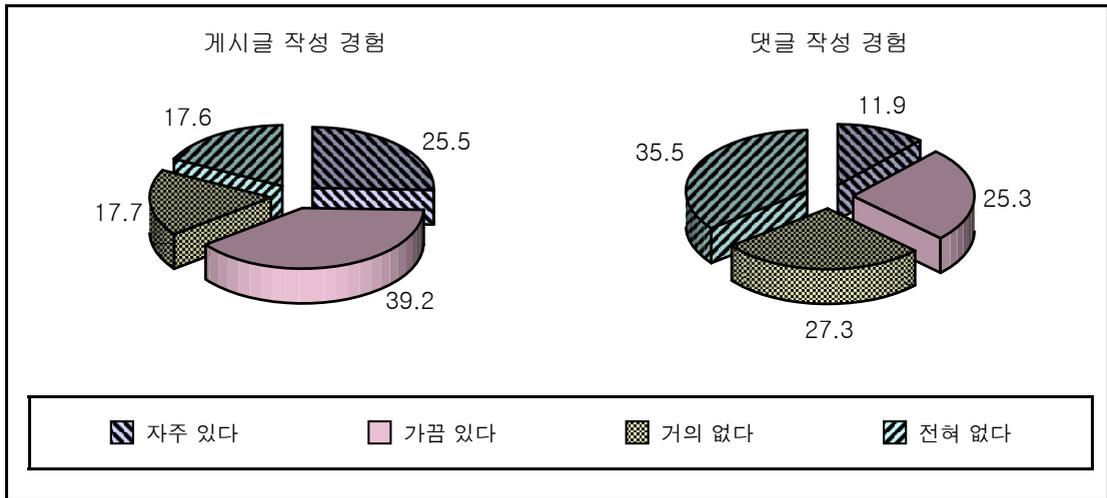
지역규모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의 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선거연령을 하향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hi^2=223.983, p<.05$ ). 즉,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앞에 제시된 지표 중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나 청소년 정책에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보다 높으면서도 실제 참여율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았던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들은 실제 자신들이 정치적 의견이나 바람을 전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등의 정치적 참여가 더 폭넓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이 선거연령을 하향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에 속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chi^2=23.204, p<.01$ ). 이는 경제수준이 중상인 가정의 보수적 정치 성향이 청소년들에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⑧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은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터넷은 편리성과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체로,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여건 상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지표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시판,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게시글을 얼마나 작성하고 있는지,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의견(댓글)을 얼마나 작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의사표현 참여 경험을 알아보았다. [그림 IV-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25.5%는 자주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의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인터넷 이용이 더 용이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현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댓글 작성 경험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37.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시물 작성 경험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 표현에는 적극적이지만,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 등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V-7】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게시물과 댓글 작성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8.478, p<.001, \chi^2=19.638, p<.001$ ). 특히, 게시글의 작성에 있어 여학생의 경우 70.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3명 정도가 자주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인터넷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인터넷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5.665, p<.001, \chi^2=211.857, p<.001$ ). 특이한 사항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경험은 고등학생이 더 높긴 하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자주 작성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IV-10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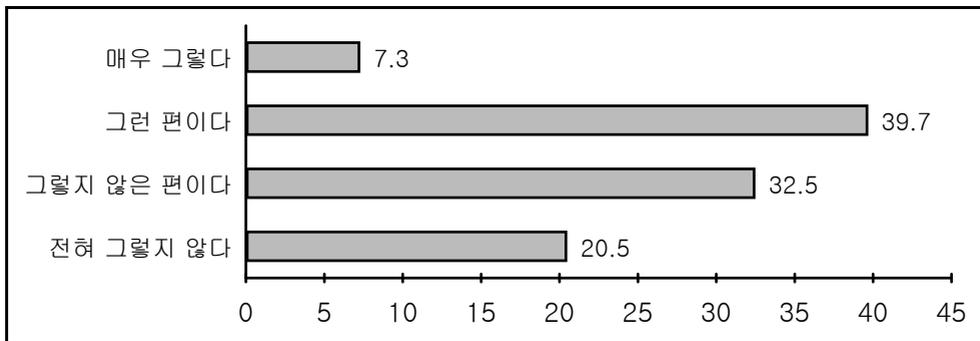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N)	$\chi^2$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 빈도	성 별	남	21.1	19.8	38.4	20.7	100(4769)	188.478***
		여	13.6	15.4	40.1	30.8	100(4318)	
		전체	17.6	17.7	39.2	25.5	100(9087)	
	교 급	초	25.1	17.8	33.7	23.4	100(2809)	215.665***
		중	15.3	17.3	39.0	28.4	100(3109)	
		일반계고	12.0	18.3	46.1	23.6	100(2438)	
		전문계고	16.6	17.3	38.2	27.8	100(733)	
	경 제 수 준	전체	17.5	17.7	39.2	25.5	100(9089)	25.887***
		상	20.9	15.1	38.1	25.8	100(1274)	
		중	16.9	18.5	39.4	25.2	100(7267)	
		하	17.0	13.7	39.2	30.1	100(495)	
	인터넷에 댓글 작성 경험 빈도	성 별	남	37.4	25.8	25.2	11.7	100(4762)
여			33.4	29.0	25.4	12.2	100(4308)	
전체			35.5	27.3	25.3	11.9	100(9070)	
교 급		초	45.5	24.5	19.3	10.7	100(2797)	211.857***
		중	32.0	28.9	25.6	13.6	100(3104)	
		일반계고	29.8	28.5	30.2	11.5	100(2437)	
		전문계고	30.7	27.7	30.6	10.9	100(732)	
경 제 수 준		전체	35.5	27.3	25.3	11.9	100(9070)	53.483***
		상	42.3	21.9	22.4	13.4	100(1271)	
		중	34.4	28.4	25.8	11.4	100(7253)	
		하	33.1	26.4	24.3	16.2	100(493)	
전체		35.5	27.3	25.3	11.9	100(9017)		

\*  $p < 0.05$ , \*\*  $p < 0.01$ , \*\*\*  $p < 0.001$

경제수준에 따른 인터넷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5.887, p < .001, \chi^2=53.483, p < .001$ ).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아동·청소년의 약 10명 중 3명은 자주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고, 또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의 의견이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학교 홈페이지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누가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림 IV-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47.0%는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교의 자유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8.578, p<0.001, \chi^2=698.164, p<0.001, \chi^2=109.723, p<0.001$ ).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48.6%, 남학생의 45.6%가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간행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57.1%), 전문계 고등학생(52.3%), 일반계 고등학생(48.8%), 초등학생(32.8%)의 순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67.2%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초등학교생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예절교육 등을 시킴으로써 자율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IV-11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성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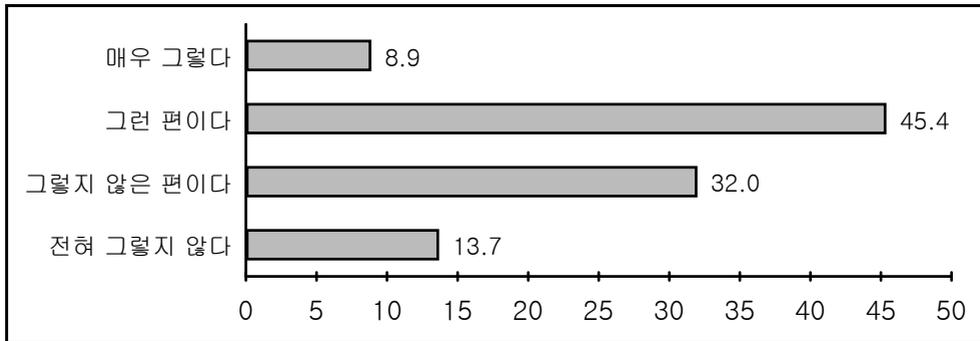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22.7	31.8	37.4	8.2	100(4752)	48.578***
	여	18.2	33.2	42.3	6.3	100(4295)	
	전체	20.5	32.5	39.7	7.3	100(9047)	
교급	초	33.8	33.4	23.4	9.4	100(2790)	698.164***
	중	14.5	28.4	49.1	8.0	100(3100)	
	일반계고	14.9	36.2	44.0	4.8	100(2430)	
	전문계고	14.0	33.6	47.8	4.5	100(726)	
	전체	20.5	32.5	39.7	7.3	100(9046)	
경제수준	상	27.1	27.8	33.1	12.0	100(1270)	109.723***
	중	19.6	33.0	40.8	6.6	100(7229)	
	하	16.4	38.1	39.9	5.7	100(494)	
	전체	20.5	32.5	39.7	7.3	100(8993)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⑨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는 교지 및 학교신문을 학생들이 자율·독립적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학교 간행물은 학교와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소식과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림 IV-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4.3%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간행물 발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45.7%나 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IV-9】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는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chi^2=38.753, p<0.001, \chi^2=210.645, p<0.001, \chi^2=127.437, p<0.001$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56.5%가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52.4%가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더 제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급에 따른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62.4%), 초등학생(52.8%), 중학생(51.7%), 전문계 고등학생(44.0%) 순으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학교 및 사회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교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 간의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논리적이면서 독자적인 사고가 가능한 연령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등학생이 학교에서의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가 낮은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학교 교사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들이 자율권을 매우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6%인 반면, 경제 수준이 중이나 하인 아동·청소년들은 5~7%만이 매우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2배 이상의 응답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2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15.5	32.	42.9	9.5	100(4735)	38.753***
	여	11.8	31.7	48.1	8.4	100(4292)	
	전체	13.7	32.0	45.4	8.9	100(9029)	
교급	초	14.0	33.2	40.0	12.8	100(2780)	201.645***
	중	14.3	33.9	45.4	6.3	100(3088)	
	일반계고	11.6	25.9	53.2	9.2	100(2432)	
	전문계고	17.3	38.8	39.6	4.4	100(730)	
	전체	13.7	31.9	45.4	8.9	100(9030)	
경제수준	상	14.2	27.8	41.4	16.6	100(1261)	127.437***
	중	13.2	32.5	46.5	7.8	100(7223)	
	하	18.8	35.6	39.7	5.9	100(494)	
	전체	13.7	32.0	45.4	8.9	100(8978)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⑩ 참여권 보장 수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과 관련된 지표이다. 앞에서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은 차츰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다면 어떠한 문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주된 기능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운영되는 참여기구는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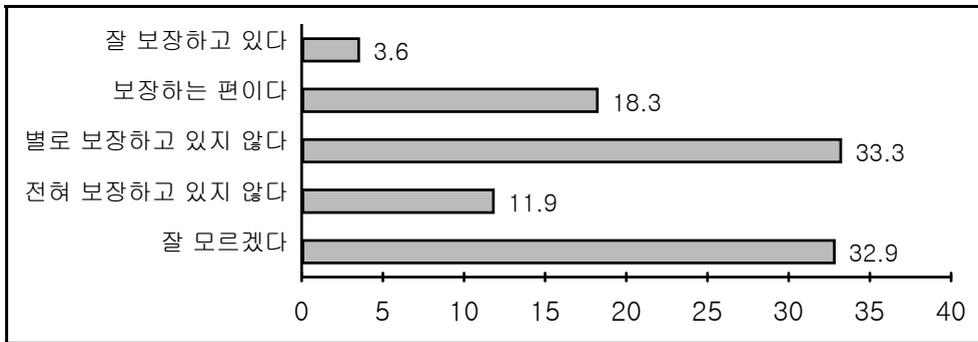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 대표와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2005년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건의하게 된다.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 중 하나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정책 관련 자문·건의 기구로, 청소년들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체로 10~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을 모집하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85개가 운영 중에 있다.<sup>30)</sup>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20인 이내로 구성되며,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305개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이 실제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답은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참여권 보장 수준 조사 결과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참여권 보장

30)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1\\_04.jsp](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1_04.jsp)

수준은 [그림 IV-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45.2%는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1.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성화 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32.9%의 아동·청소년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0명 중 3~4명의 아동·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활성화 정책이 무엇인지, 또한 그 정책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0】 참여권 보장 수준(%)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되어 있다. 즉, 우리사회가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해 본 결과, 성별, 교급,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chi^2=39.958, p<0.001, \chi^2=815.748, p<0.001, \chi^2=27.889, p<0.001, \chi^2=115.515, p<0.001$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46.1%와 남학생의 44.4%가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참여권 보장 수준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여성의 참여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학생들도 이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IV-13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보장하는 편이다	잘 보장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 (N)	$\chi^2$
성 별	남	13.3	31.1	19.5	3.8	32.4	100(4772)	38.958***
	여	10.4	35.7	17.0	3.4	33.4	100(4315)	
	전체	1.9	33.3	18.3	3.6	32.9	100(9087)	
교 급	초	6.6	19.5	22.7	5.8	45.6	100(2812)	815.748***
	중	12.8	33.4	19.8	3.0	30.9	100(3108)	
	일반계고	15.3	48.0	13.1	1.6	21.9	100(2438)	
	전문계고	17.2	37.1	12.6	4.1	29.0	100(731)	
	전체	11.9	33.3	18.3	3.6	32.9	100(9089)	
지 역 규 모	대도시	12.1	35.5	18.3	3.4	30.8	100(3954)	27.889***
	중소도시	12.3	32.0	18.1	3.5	34.0	100(3842)	
	읍/면	10.2	30.5	19.1	4.3	36.0	100(1290)	
	전체	11.9	33.3	18.3	3.6	32.9	100(9086)	
경 제 수 준	상	11.6	25.2	20.4	6.8	35.8	100(1272)	115.515***
	중	11.5	34.6	18.4	3.0	32.5	100(7267)	
	하	18.6	35.8	10.9	3.4	31.2	100(494)	
	전체	11.9	33.3	18.3	3.6	32.9	100(9033)	

\*  $p < 0.05$ , \*\*  $p < 0.01$ , \*\*\*  $p < 0.001$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급이 높을수록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63.3%)과 전문계 고등학생(54.3%) 모두 50% 이상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아동·청소년 참여활성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임을 비추어 본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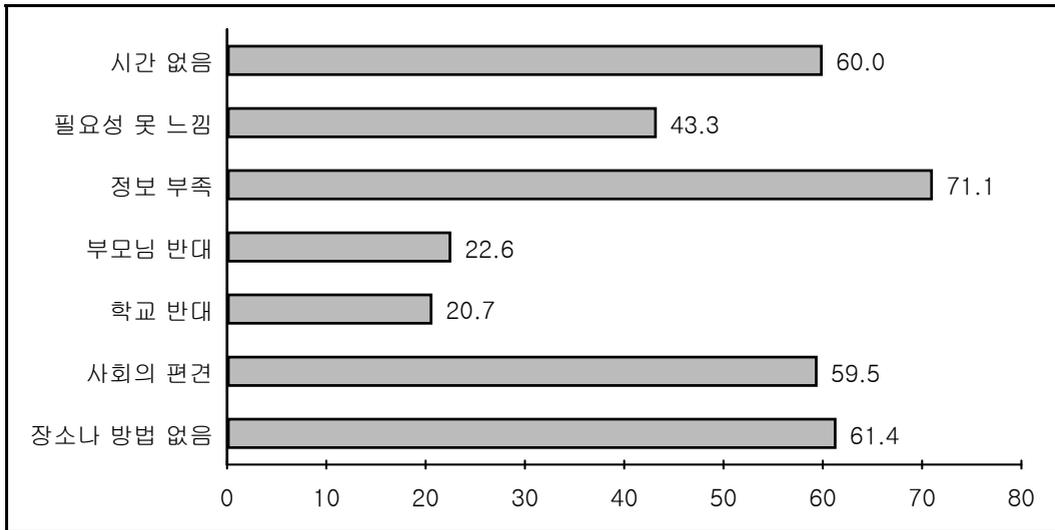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의 규모가 큰 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참여권이 보장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참여의 필요성도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우리사회에서 자신들의 참여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54.4%가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의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림 IV-1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71.1%),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 없음(61.4%), 시간을 내기 어려움(60.0%),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59.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로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참여권 보장 수준’이나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어떠한지, 아동·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의 의견 반영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하게 된다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가 없다’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이 일부의 아동·청소년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에 총 185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에 총

305개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만한 장소나 방법이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간적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참여 방법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V-II】 참여의 장애요인(%)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행사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참여의 장애요인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중 참여할 시간 없음, 정보 부족, 학교 반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2=564.546$ ,  $p<0.001$ ,  $\chi^2=1400.407$ ,  $p<0.001$ ,  $\chi^2=859.060$ ,  $p<0.001$ ). 먼저, 참여권을 행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계 고등학생(74.1%), 중학생(61.0%), 전문계 고등학생(59.4%), 초등학생(47.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응답률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도 47.0%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준비로 학업 이외의 것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도 자신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만큼 몇 년 후의 대학입시를 위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14 교급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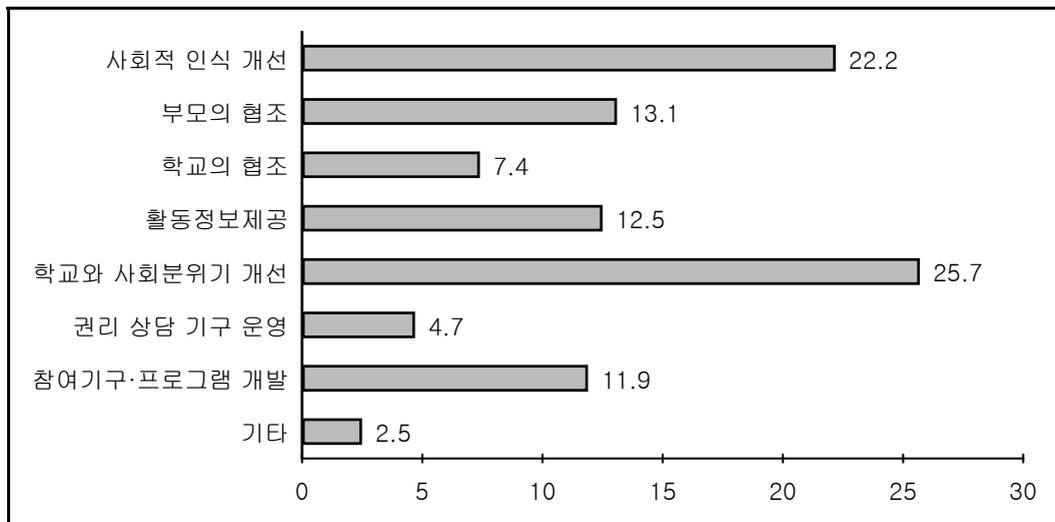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시간 없음	초	19.9	33.1	39.2	7.8	100(2810)	564.546***
	중	10.3	28.7	50.2	10.8	100(3109)	
	일반계고	6.7	19.2	52.5	21.6	100(2434)	
	전문계고	12.3	28.3	46.8	12.6	100(731)	
	전체	12.5	27.5	47.1	12.9	100(9084)	
정보 부족	초	19.4	33.6	39.4	7.6	100(2807)	1400.407***
	중	5.9	17.6	57.7	18.9	100(3104)	
	일반계고	2.6	8.1	61.3	28.0	100(2436)	
	전문계고	7.4	12.2	59.3	21.1	100(730)	
	전체	9.3	19.5	53.1	18.0	100(9077)	
학교 반대	초	50.4	41.0	7.1	1.6	100(2793)	859.060***
	중	27.0	51.4	16.6	5.0	100(3102)	
	일반계고	18.8	49.6	24.9	6.7	100(2431)	
	전문계고	24.1	49.0	20.5	6.3	100(730)	
	전체	31.8	47.5	16.2	4.5	100(9056)	

\*  $p < 0.05$ , \*\*  $p < 0.01$ , \*\*\*  $p < 0.001$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가 8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앞의 여러 지표들에 의하면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실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에 속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학교의 반대로 인하여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당국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보지 않고 단지 학업에 전념할 시간을 빼앗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학교규칙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회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및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이 학교가 자신들의 참여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학교 당국의 인식을 전환시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참여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님의 협조’, ‘학교의 협조’,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구 운영’,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의 보기를 제공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2]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이 25.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2%), ‘부모님의 협조’(13.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12.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의 장애요인의 결과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권 행사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보 부족’과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방법 없음’에 대응되는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과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12.5%와 11.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두 질문에 대한 응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도 하지만<sup>31)</sup> 아동·청소년이 사회참여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활동정보에 대한 부족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적과 대학입시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수업 이외의 과외의 학업활동을 함으로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IV-12]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31) ‘참여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묻는 문항은 각 장애요인을 4점 척도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묻는 문항은 보기 항목 중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함.

표 IV-15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협조	학교의 협조	활동 정보 제공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권리에 대한 상담 기구 운영	참여 기구나 프로그램 개발	기타	전체 (N)	$\chi^2$
성별	남	22.9	14.9	9.4	10.8	23.4	4.2	11.2	3.2	150.664***
	여	21.4	11.2	5.1	14.3	28.3	5.3	12.6	1.8	
	전체	22.2	13.1	7.4	12.5	25.7	4.7	11.9	2.5	
교급	초	15.9	31.4	7.7	12.2	7.4	6.4	16.5	2.4	1892.252***
	중	25.6	7.9	7.4	12.4	28.6	4.2	11.2	2.7	
	일반계고	23.6	1.5	6.4	13.5	41.1	3.3	8.4	2.2	
	전문계고	27.0	3.4	9.5	10.7	32.9	5.2	8.4	3.0	
	전체	22.2	13.1	7.4	12.5	25.7	4.7	11.9	2.5	
경제수준	상	19.8	23.5	8.5	11.1	14.9	6.0	13.4	2.8	272.815***
	중	22.7	11.8	7.1	12.7	27.1	4.6	11.7	2.2	
	하	20.6	5.1	7.1	12.8	34.6	2.8	10.5	6.5	
	전체	22.2	13.1	7.3	12.5	25.8	4.7	11.9	2.5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행태를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는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참여활성화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chi^2 = 150.664$ ,  $p < 0.001$ ,  $\chi^2 = 1892.252$ ,  $p < 0.001$ ,  $\chi^2 = 272.815$ (14),  $p < 0.001$ ).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23.4%),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 ‘부모님의 협조’(14.9%)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28.3%),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1.4%),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14.3%)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를 본다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좀 더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시민의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의 협조'(31.4%),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16.5%),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5.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부모님의 보호와 지도가 더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 정책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등학생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도 관련된 것으로,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너무 어려 중·고등학생들보다 합리적·논리적 사고를 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들도 나름의 논리적인 사고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능력은 논리적·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험의 제공을 통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사회참여는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사회참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의의와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협조'(23.5%),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9.8%),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14.9%)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는데 반해, 경제수준이 중이나 하인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은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외의 과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적인 정신작용을 외부에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표현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국민·시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마련되는데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들도 국가의 국민, 시민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제도에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고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마련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로,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에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인 기능을 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청소년의 참여기구<sup>32)</sup>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기구로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의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른 참여기구와 차별화된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청소년의 의견은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 의제 및 과제의 수용률이 대체로 80%이상을 선회한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정부관계자와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더불어

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2011)에서 발간한 ‘청소년백서’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을 참고한 것임.

다양한 청소년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정책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고의 논리적 전개 능력 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직접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실현시키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위원을 선발하고, 정기·임시 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정책의 시행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극히 소수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참여기구가 극소수의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선발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장 등의 추천이나 지원을 통해 선발된다. 그러나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아동·청소년일지라도 국가 및 지방의 정치활동

이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아동·청소년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업 성적이 높은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서 국가 및 사회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정보를 얻기 수월한 환경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추천이나 지원을 통해 참여기구에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등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이들에 대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을 반영하다. 따라서 참여기구의 청소년선발과 관련하여 보다 비례대표제 등의 체계적이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선발기준을 공고히 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기구의 홍보 미흡으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 부족은 실제 우리나라의 참여기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기구를 안내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청소년참여포털(<http://www.withyouth.go.kr>)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소식들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또한 각 지역의 참여기구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사이트 등은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정보접근에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 참여기구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그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일 수만을 없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로 남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 지표의 의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관련 조항은 협약 제14조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내면적인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로부터의 권력적인 개입이나 강제를 금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의의이다. 2항에서는 국가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감독은 아동의 능력이 발달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적당한 감독이어야 한다. 3항에서는 아동이

종교와 신념을 내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제약은 없지만,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며, 침묵의 자유는 보장된다(喜田 외, 2009).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과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병역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은 만18세가 되면 제1국민역<sup>33)</sup>에 편입되고<sup>34)</sup>, 일반적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은 후<sup>35)</sup>,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은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1~24개월을 복무하고, 대체복무역인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학력 미달자, 가사사정상 현역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또는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자(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들로,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1~36개월을 복무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자 청소년들은 만19세 이상이 되면 자의든 타의든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 평화와 전쟁반대의 신념 등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은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7,108명, 한 해 평균 64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다.

33) 병역법 제5조에 의하면,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 여기서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기근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34) 병역법 제8조

35) 병역법 제11조

표 IV-16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원	379	825	561	755	828	781	571	375	728	721	584

\* 자료: 김수정(201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

\*\* 원자료: 2012. 1. 12. 병무청의 정보공개자료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및 형사처벌 통계」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2001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실형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은 6,428명으로(김수정, 2012), 이는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의미한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방침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와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서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오동석, 2012).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우 및 인권개선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국가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 및 종파들이 각각의 재단을 설립하고 종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종교재단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교육시키고자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의사와 재산을 통해 독자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 종교재단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표 IV-1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초·중·고·대학교를 통틀어 총 694개교에 이른다. 이는 2008년에 집계된 종립학교 수인 678개교보다 증가된 수치로, 우리나라 전체 학교수인 11,805개교<sup>36)</sup>의 총 5.9%에 해당한다.

표 IV-17 종립 초·중·고등·대학교 현황

구분		천주교	개신교	불교	기타종교	계
2008	초등학교	7	22	1	7	37
	중학교	24	90	15	88	217
	고등학교	37	126	16	117	296
	대학교	14	99	6	9	128
	계	82	337	38	221	678
2011	초등학교	6	22	1	8	37
	중학교	28	90	15	88	221
	고등학교	38	126	16	117	297
	대학교	15	105	8	11	139
	계	87	343	40	224	69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의 종교 현황.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국의 종교 현황. 재구성

\*\* 주: 기타종교에는 원불교 등이 포함됨.

대학교는 일반대학,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 전문대학, 원격대학교,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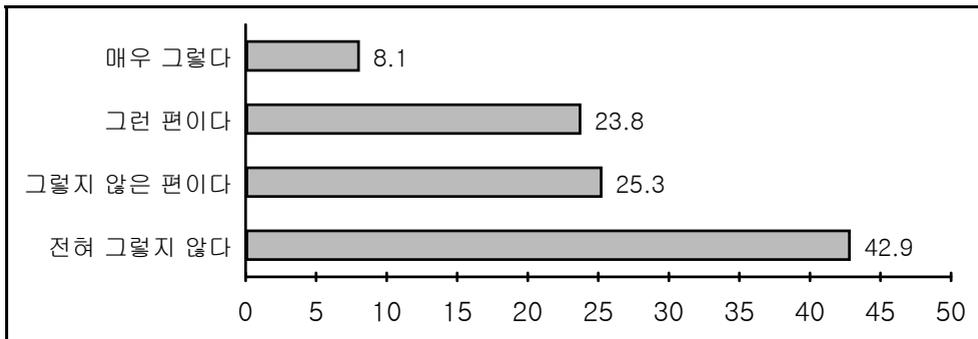
종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재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수가 343개교로 가장 많았다. 교단이나 종교인수를 살펴보았을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단과 종교인수를 등록하고 있지만, 종교 전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개신교가 종립학교를 더 많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급별 종립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초등학교의 순으로 종립학교 수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 학교 수 대비 종립학교 수를 살펴보면, 대학교(32.0%), 고등학교(12.7%), 중학교(7.0%), 초등학교(0.6%)의 순으로 종립학교 비율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어감으로, 교육과정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하는

36) 2011년도 교육백서의 학교급별 규모 자료 중, 초등학교(5,883개교), 중학교(3,157개교), 고등학교(2,331개교), 대학교(434개교)의 수를 합한 값임. 이 중 초중등교육기관 중 각종학교와 특수학교 수는 제외된 것임.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기 보다는 강제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종교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 혹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중 12.7%가 종립학교인 만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지표화하였다.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그림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31.9%는 학교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3]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9.056$ ,  $p<0.001$ ,  $\chi^2=26.554$ ,  $p<0.001$ ). 먼저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41.5%), 중학생(37.4%), 일반계 고등학생(21.8%)의 순으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6%나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생이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가 낮은 이유는 고등학교의 종립학교 비율과 관계가 있다. 중학교의 종립학교 비율은 7.0%인데 반해, 고등학교의 종립학교

비율은 12.7%나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더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종립학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 관련 행사나 종교 교육을 시킬 자유가 존재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의 입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더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45.3%가 학교에서 전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중·소도시에 위치한 종립학교가 더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8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교급	중	34.8	27.7	29.2	8.2	100(3095)	309.056***
	일반계고	55.6	22.6	15.2	6.6	100(2433)	
	전문계고	34.9	23.5	29.5	12.0	100(731)	
	전체	42.9	25.3	23.8	8.1	100(6259)	
지역규모	대도시	41.2	25.1	24.2	9.4	100(2769)	26.554***
	중소도시	45.3	25.3	22.2	7.2	100(2682)	
	읍/면	40.6	25.7	27.5	6.2	100(807)	
	전체	42.9	25.3	23.8	8.1	100(6258)	

\*  $p < 0.05$ , \*\*  $p < 0.01$ , \*\*\*  $p < 0.001$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아동·청소년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와 ‘종교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상 무엇을 결정하는 자유와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자유, 그리고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그 결정을 실현하는 자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신의 종교 및 정치·사회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의 선택·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종교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여타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거나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종교학교에서 규정짓고 있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남성의 경우 19세가 되는 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의무 사항인 병역의 의무와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하고 이를 따르는 것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접점에서 발생한다. 즉, 양심의 자유에서는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법적 강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 의무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의 최고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는 2004년 7월 15일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판결<sup>37)</sup>에서 대법원은 병역거부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제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전쟁 내지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거부자는 실형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대체복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37) 대법원 2004.0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sup>38)</sup>고 판시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부인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체복무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2a조 2항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대체방안을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 사항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각기 병역법과 대체복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양심적 거부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이재승, 2007).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다(장복희,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에의 충돌로 인해 일부 청소년과 그의 가족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국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활동에 소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 없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처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의 필요성,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38) 현재 2004.08.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타 징병제 국가의 대체복무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단계를 거쳐 나감으로써, 소수의 인권이라도 사회적으로 적극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종교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 않고 종교 사학 재단들은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통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에게 강제된 종교교육은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충돌을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학교 종교 교육을 제한할 것을 인정하였다(정형근, 2010).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후 종립학교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종교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경우 철학이나 교육학 등, 비종교적인 다른 과목과 함께 재량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사항에 대하여 종립학교에서는,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는 종교과목을 재량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학교의 설립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손희권, 2005; 한겨레신문, 2006. 6.3).

이에 종립학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평준화 교육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종교 문제에 따른 일방적인 학교 선택권의 허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종교 문제로 포장하여 실제적으로 진학우수교로 학교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문제로 인한 학교 선택권은 일정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교육청의 객관적 심사에 의한 학교 선택권의 허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가 없는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사학도 정부의 일정 정도 지원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관할 교육청의 강제적인 권고 사항 집행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앞의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종립학교가

종교 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학을 교양과목의 일종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종립학교가 중·고등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무차별적인 종교교육의 금지는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도덕 내지는 윤리 교과목을 보완하는 일반종교학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정 종교에 대한 포교 교육과 종교 활동은 특별활동의 영역으로 유도하고 종교학이라는 일반적 관점에서의 교양과목을 편성함이 종교사학의 종교 교육의 자유의 실현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신앙의 교육에서 종교 자체의 교육으로의 변화가 양 기본권의 충돌을 규범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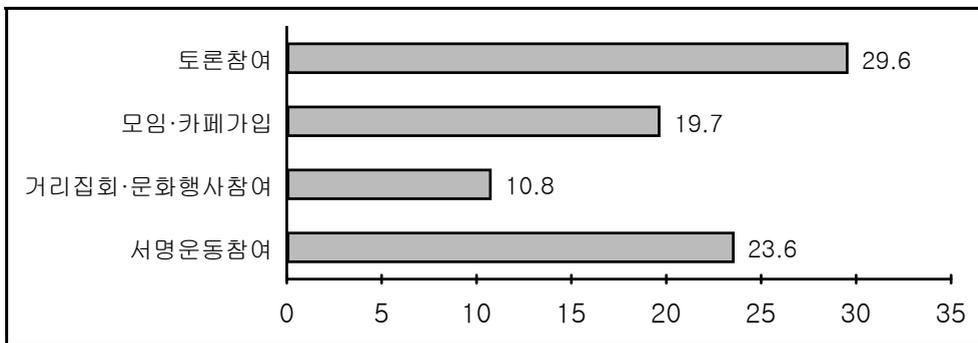
#### (1) 지표의 의미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협약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아동의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에 가입할 권리 및 결사로부터 이탈할 권리만이 아니라, 결사를 결성할 권리도 포함된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는 평화적으로 행하는 집단시위운동을 행할 자유도 포함된다. 2항에는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제한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결사·집회 경험률’과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결사·집회 경험률

결사·집회 경험률은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 등)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결사 및 집회 행동을 해 본 경험을 알아보는 지표이다.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빈도는 [그림 IV-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4】 결사·집회 경험률(%)

결사·집회 행동 중 가장 높은 경험빈도를 보이는 것은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29.6%)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명운동 참여(23.6%),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19.7%),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10.8%)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나 서명운동 참여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는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단지 토론에 그칠 뿐 사회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대규모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은 공론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경험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와 달리 사회문제와 관련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기는 하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의 문제 등으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 등이 수반되는 참여행동이기에 때문에 참여행동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결사·집회 행동 경험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경험률을 살펴보면, 토론 참여,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서명운동 참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참여행동 경험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4.432$ ,  $p<0.001$ ,  $\chi^2=17.581$ ,  $p<0.01$ ,  $\chi^2=95.490(3)$ ,  $p<0.001$ ). 토론 참여와 서명운동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여학생이 각각 32.4%, 27.6%의 참여행동 경험률을 보여, 27.2%와 20.0%의 참여행동 경험 빈도를 보인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참여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회문제와 관련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에서는 남학생의 11.4%, 여학생의 10.0%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으로 표현 가능한 참여행동을 보이는 데 반해, 여학생들은 보다 소극적인 형태의 참여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참여행동 경험률을 살펴보면, 토론 참여, 모임이나 카페 가입,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서명운동 참여 모두에서 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chi^2=220.811$ ,  $p<0.001$ ,  $\chi^2=81.853$ ,  $p<0.001$ ,  $\chi^2=93.423$ ,  $p<0.001$ ,  $\chi^2=440.860$ ,  $p<0.001$ ). 토론이나 서명운동 참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문계 고등학생의 토론 참여 수준은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덜 받는 참여행동 경험은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경우 사회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토론이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고등학생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에서 초등학생이 14.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특성 상 부모와 동반하여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회참여에 대한 부모의 의지가 반영된 비율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참여행동 경험률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참여행동 경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39.565$ ,  $p<0.001$ ,  $\chi^2=23.781$ ,  $p<0.01$ ,  $\chi^2=85.611$ ,  $p<0.001$ ,  $\chi^2=40.483$ ,  $p<0.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명운동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토론 참여, 모임이나 카페 가입,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 빈도가

표 IV-19 결사·집회 경험률

(단위 : %, 명)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N)	$\chi^2$	
토론 참여	성별	남	42.7	30.1	23.5	3.7	100(4774)	44.432***
		여	36.3	31.4	28.0	4.3	100(4316)	
		전체	39.6	30.7	25.6	4.0	100(9090)	
	교급	초	40.0	31.5	24.8	3.7	100(2809)	220.811***
		중	45.6	30.9	20.9	2.6	100(3111)	
		일반계고	31.1	29.4	32.9	6.7	100(2436)	
		전문계고	41.5	31.6	25.0	1.9	100(731)	
		전체	39.7	30.7	25.6	4.0	100(9087)	
	경제수준	상	38.7	27.8	27.5	6.0	100(1274)	39.565***
		중	39.3	31.6	25.5	3.6	100(7269)	
		하	47.8	24.5	24.1	3.6	100(494)	
		전체	39.7	30.7	25.7	3.9	100(9037)	
모임 이나 카페 가입	교급	초	57.2	21.5	14.5	6.9	100(2806)	81.853***
		중	53.6	24.8	16.2	5.4	100(3109)	
		일반계고	56.3	27.7	12.7	3.4	100(2437)	
		전문계고	54.8	28.6	13.9	2.6	100(733)	
		전체	55.5	24.9	14.6	5.1	100(9085)	
	경제수준	상	54.2	22.7	16.5	6.6	100(1273)	23.781**
		중	55.4	25.5	14.2	5.0	100(7265)	
		하	61.7	21.5	13.8	3.0	100(494)	
거리 집회 나 문화 행사 참여	성별	남	61.9	26.7	9.4	2.0	100(4766)	17.581**
		여	62.5	27.5	9.0	1.0	100(4313)	
		전체	62.2	27.1	9.3	1.5	100(9079)	
	교급	초	57.0	28.0	12.7	2.2	100(2800)	93.423***
		중	64.2	26.8	8.0	1.1	100(3110)	
		일반계고	65.7	25.4	7.6	1.3	100(2435)	
		전문계고	61.7	30.4	6.7	1.2	100(733)	
		전체	62.2	27.1	9.3	1.5	100(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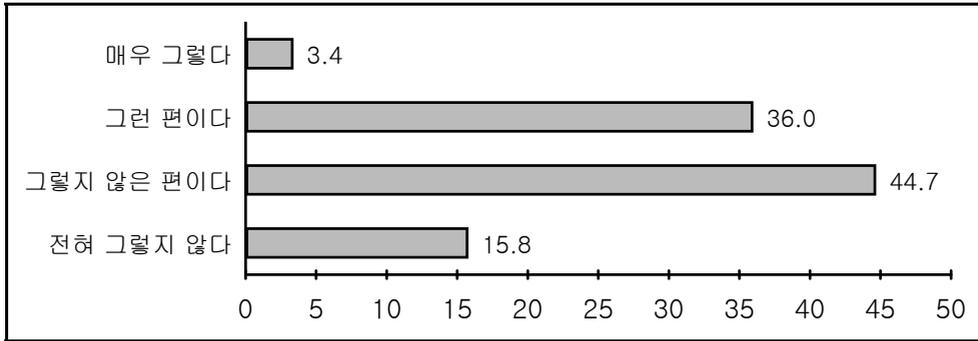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N)	$\chi^2$	
경제 수준	상	55.6	27.1	14.6	2.8	100(1271)	85.611***	
	중	62.8	27.5	8.5	1.2	100(7260)		
	하	69.3	21.4	7.1	2.2	100(495)		
	전체	62.2	27.1	9.2	1.5	100(9026)		
성 별	남	55.4	24.6	16.3	3.7	100(4767)	95.490***	
	여	47.2	25.2	23.9	3.7	100(4313)		
	전체	51.5	24.9	19.9	3.7	100(9080)		
서명 운동 참여	교 급	초	63.8	23.4	10.0	2.8	100(2803)	440.860***
		중	51.2	25.1	19.5	4.1	100(3110)	
		일반계고	40.9	25.9	29.0	4.2	100(2437)	
		전문계고	40.6	26.1	29.5	3.8	100(732)	
	전체	51.5	24.9	19.9	3.7	100(9082)		
경제 수준	상	57.2	22.7	15.8	4.3	100(1270)	40.483***	
	중	50.8	25.4	20.3	3.5	100(7264)		
	하	47.9	22.2	23.6	6.3	100(495)		
	전체	51.5	24.9	19.9	3.7	100(9029)		

\*  $p < 0.05$ , \*\*  $p < 0.01$ , \*\*\*  $p < 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가 더 높았던 사실에 미루어보아,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사회나 정치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참여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②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60.5%는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1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10명 중 1~2명은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집회 등을 개최할 때 신고 및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학교 및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그림 IV-15】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표 IV-20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17.6	43.6	34.6	4.2	100(3299)	33.862***
	여	13.7	46.0	37.7	2.6	100(2970)	
	전체	15.8	44.7	36.0	3.4	100(6269)	
교급	중	15.3	42.4	38.6	3.8	100(3105)	30.706***
	일반계고	15.6	47.6	34.1	2.8	100(2433)	
	전문계고	18.9	45.1	31.8	4.2	100(732)	
전체		15.8	44.7	36.0	3.4	100(6270)	
경제수준	상	21.8	38.2	34.7	5.2	100(536)	35.553***
	중	14.9	45.3	36.6	3.1	100(5248)	
	하	19.6	45.3	30.9	4.2	100(450)	
	전체	15.8	44.7	36.1	3.4	100(6234)	

\*  $p < 0.05$ , \*\*  $p < 0.01$ , \*\*\*  $p < 0.001$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33.862, p < 0.001, \chi^2 = 30.706, p < 0.001, \chi^2 = 35.553, p < 0.001$ ).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결사·집

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61.2%, 여학생의 59.7%는 우리사회가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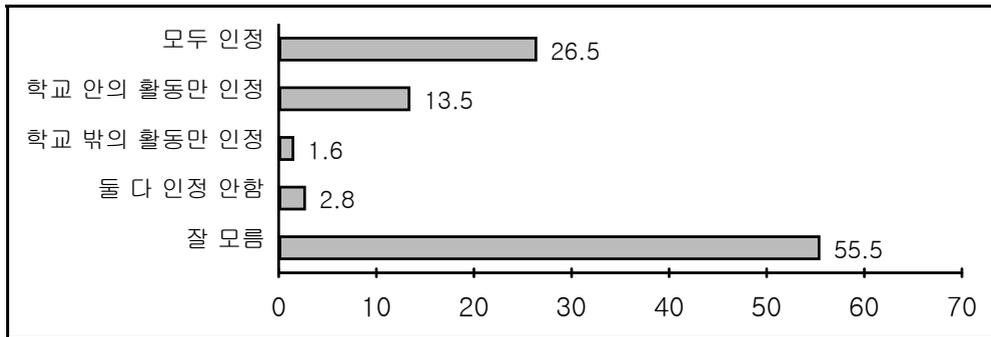
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일수록 우리나라에서 결사·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참여행동의 경험 빈도에서 다른 경험에 비해 토론이나 서명참여 등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시간·공간적인 제약, 가정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③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는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동아리(아동·청소년 자율·자치모임 등 포함)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학교가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에 대한 자료는 [그림 IV-16]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55.5%의 아동·청소년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자신의 학교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동아리 활동을 모두 인정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26.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는 응답도 13.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 비율만으로 환산했을 때, 모두 인정한다는 응답비율은 59.7%,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는 응답비율은 30.4%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상당수의 학교가 교사가 어느 정도 지도·통제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학교 밖의 활동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표 IV-21>와 같다.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4.885$ ,  $p<0.001$ ,  $\chi^2=391.777$ ,  $p<0.001$ ,  $\chi^2=45.204$ ,  $p<0.001$ ). 성별에 따른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그림 IV-16】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 활동 허용 여부(%)

표 IV-21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단위 : %, 명)

구분	모두 인정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	학교 밖의 활동만 인정	둘 다 인정 안 함	잘 모름	전체 (N)	$\chi^2$
성별	남	25.4	13.7	2.0	3.7	100(4771)	44.885***
	여	27.7	13.3	1.1	1.9	100(4316)	
	전체	26.5	13.5	1.6	2.8	100(9087)	
교급	초	28.5	8.5	1.8	2.5	100(2809)	391.777***
	중	23.1	10.2	1.9	3.2	100(3110)	
	일반계고	30.3	23.1	1.1	2.7	100(2436)	
	전문계고	21.2	15.0	1.0	3.0	100(732)	
	전체	26.5	13.5	1.6	2.8	100(9087)	
경제수준	상	31.7	12.6	1.3	4.0	100(1273)	45.204***
	중	25.8	13.5	1.7	2.5	100(7268)	
	하	22.5	16.0	1.2	4.9	100(494)	
	전체	26.5	13.5	1.6	2.8	100(9035)	

\*  $p < 0.05$ , \*\*  $p < 0.01$ , \*\*\*  $p < 0.001$

활동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모두 인정한다는 응답비율은 여학생이 높은 데 반해,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당국이 남학생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에 더 규제를 가한다는 것으로, 남학교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급에 따른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교급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급보다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볼 때도 중학생은 다른 교급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는 비율과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른 교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의 학교 밖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무관심은 학교의 규제 때문일 수도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계층이 하인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과 ‘둘 다 인정하지 않음’의 비율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들이 아동·청소년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제약을 더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치 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 및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근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sup>39)</sup>, 헌법 제21조<sup>40)</sup>, 초중등교육법 제17조<sup>41)</sup>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sup>42)</sup>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이와 같은 법률적·제도적 근거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각은 그들의 집회 행위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P세대<sup>43)</sup>로 불리는 요즘의 아동·청소년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참여의 기반은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 덕분으로,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다. 실례로 아동·청소년

39)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40)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1)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42)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43) P는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 shifter)를 뜻함.

년들은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을 통해, 2000년 여름에는 두발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육부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촛불시위로 확산하여 대국민운동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에도 중·고등학생이 촛불시위를 주도하였고, 미국산쇠고기수입 반대에서는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60-70%가 청소년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들의 급식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인터넷과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여 모임과 집회를 유도했으며, 이어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집회 후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하는 등,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사후 ‘미친 소 몰아내는 10대 연합’이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생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국회와 정당, 언론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촛불집회의 참여를 통해 교과서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 스스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이성적으로 분별되고 절제된 용어 사용을 지향하자고 주장하는 바를 보면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이 걱정하는 미숙한 존재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그에 책임과 자율의식을 고취시킨다면 한층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를 통한 표현 활동을 보다 성숙하게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유익한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발휘하도록 심층적인 시사토론과 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하는 태도부터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령별 미디어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지도자용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 연구하여 인터넷 미디어교육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재와 교육과정을 성인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은 온전히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관점과는 상이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와 표현의 자유가 청소년의 실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연결고리화 하는 매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우병쇠고기 수입은 그들의 식생활인 급식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을 것이므로, 아동·청소년들 본인의 문제를 성인들에게만 일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에 얻는 유익함을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기기활용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1998년도에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다섯번째 정책 영역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을 선정하고 1)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2)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3) 문제청소년 선도 예방,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등의 정책 과제와 세부사업 선정하였으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조직에 대한 비전이 없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수단이 별로 없었다. 「지역사회 ‘큰 어른’을 통한 청소년지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청소년봉사대 발족,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구축 및 활동 전개」 등의 사업정도가 있으나, 실제 이의 시행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자로 지역사회 창출에 참여하는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미국 보건성의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연계」를 위한 전략을 참고할 만하다. 이 전략은 기존의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결과에 관심을 둔다.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가치 등을 발달시키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참여 모델이다.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10대의 새로운 디지털 문화로 인터넷 강국을 만든 주역은 바로 10대 아동·청소년들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된 주역은 ‘안단테’라는 닉네임의 청소년이었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의 시작도 ‘촛불소녀’라는 닉네임의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득권층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 연예인 팬클럽에서의 흥미성 활동일 뿐이라는 철없는 아이들의 재밌거리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성인들의 집회와 시위에 못지않게 성숙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성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유익과 실익을 고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사생활의 보호

##### (1) 지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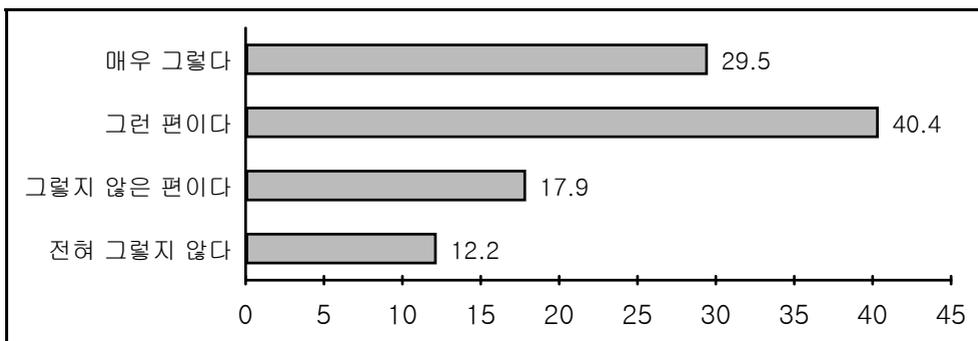
사생활의 보호에 대해서는 협약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아동이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한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것과 명예 및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이들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사생활의 보호 관련 통계는 제시된 바가 없다(임희진, 김현신, 2011).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과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을 산출하였고, 올해 2차년도에는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을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등록금,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IV-1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69.9%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률도 30.1%나 되었다. 이는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비 미납에 대한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비 미납은 가정의 경제적인 특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은 교육비 미납 학생의 정보 공개로 인해 수치심과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갖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IV-17]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에 대한 아동·청소년들 응답의 좀 더 구체적인 결과는 <표 IV-2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chi^2=71.637, p<0.001, \chi^2=338.610, p<0.001, \chi^2=30.039, p<0.001$ ).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33.5%와 여학생의 26.5%가 학교에서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신의 정보 공개나 친구의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생활 공개와 관련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러한 정서적인 특성은 개인차를 많이 보이므로 남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많은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는 좀 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급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40.0%), 초등학생(39.0%), 중학생(27.2%), 일반계 고등학생(20.7%)의 순으로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명 중 4명 정도가 교육비 미납 학생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과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나 교사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사회에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이나 중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22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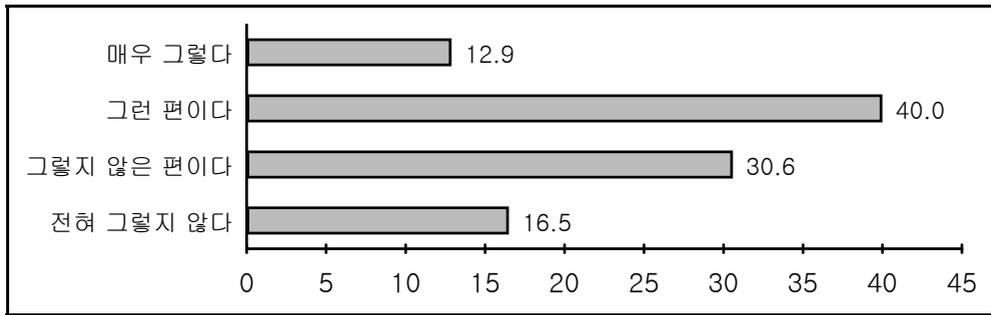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 별	남	14.8	18.7	38.3	28.2	100(4750)	71.637***
	여	9.4	17.1	42.6	30.9	100(4303)	
	전체	12.2	17.9	40.4	29.5	100(9053)	
교 급	초	17.3	21.7	31.1	29.8	100(2793)	338.610***
	중	10.0	17.2	44.5	28.3	100(3096)	
	일반계고	7.3	13.4	45.1	34.1	100(2433)	
	전문계고	18.6	21.4	42.0	18.0	100(733)	
	전체	12.2	17.9	40.3	29.5	100(9055)	
경 제 수 준	상	14.4	16.6	35.8	33.1	100(1268)	30.039***
	중	11.7	18.0	41.5	28.8	100(7274)	
	하	14.2	20.3	35.3	30.2	100(493)	
	전체	12.2	17.9	40.4	29.5	100(9003)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②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학교는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47.1%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일탈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들은 문제아라는 낙인감으로 인해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기본적인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림 IV-18】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률은 <표 I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1.693, p<0.001, \chi^2=364.196, p<0.001, \chi^2=30.927, p<0.001, \chi^2=105.119, p<0.01$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50.5%와 여학생의 43.3%가 학교에서 학생이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은 조사대상 학교 중 남학교와 여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남자학교에서 징계처분 내용 공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남학교의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급에 따른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응답률을 살펴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응답빈도가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조사대상 고등학교의 과반수가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38.8%가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한번 문제로 낙인찍힌 초등학생은 그 낙인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되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학생선도를 하기 위해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선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응답률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표 IV-23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18.8	31.7	36.8	12.7	100(4747)	61.693***
	여	14.0	29.3	43.5	13.2	100(4298)	
	전체	16.5	30.6	40.0	12.9	100(9045)	
학교 규모	초	12.8	26.0	40.7	20.5	100(2783)	364.196***
	중	15.3	29.4	43.4	11.9	100(3102)	
	일반계고	19.2	36.3	36.4	8.1	100(2431)	
	전문계고	26.7	33.9	34.7	4.7	100(729)	
	전체	16.5	30.6	40.0	12.9	100(9045)	
지역 규모	대도시	16.3	30.7	39.5	13.5	100(3936)	30.927***
	중소도시	18.2	30.5	39.5	11.9	100(3828)	
	읍/면	12.2	30.5	43.1	14.3	100(1283)	
	전체	16.5	30.6	40.0	12.9	100(9047)	
경제 수준	상	16.7	24.7	38.3	20.4	100(1267)	105.119**
	중	16.0	31.6	40.5	11.9	100(7233)	
	하	24.1	30.6	36.6	8.7	100(494)	
	전체	16.5	30.6	40.0	12.9	100(8994)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일탈 행동을 보이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아동·청소년들을 낙인찍어 이들이 학교에서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기 보다는 레질리언스(resilience)<sup>44)</sup>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③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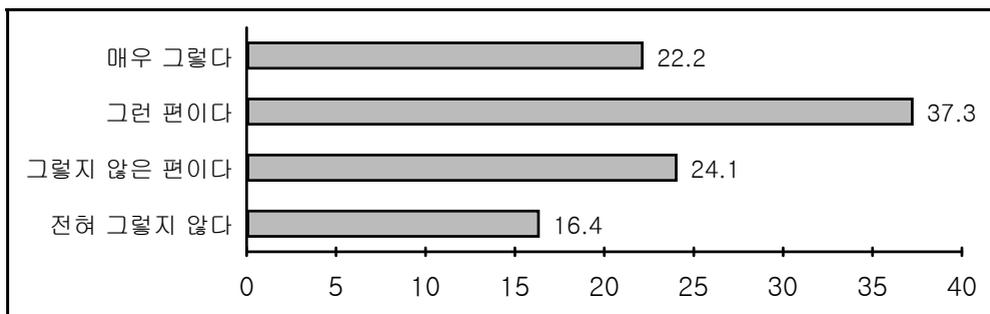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44)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공개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을 반영한 지표이다. [그림 IV-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40.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가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 개인 시험성적이 공개된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대학입시 및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다양한 학습경험을 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데, 학교에서의 시험성적 공개는 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학교 및 교사의 태도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치열한 경쟁의 장소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률은 <표 IV-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4.588$ ,  $p<0.001$ ,  $\chi^2=1058.522$ ,  $p<0.001$ ,  $\chi^2=137.680$ ,  $p<0.001$ ).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43.5%, 여학생의 37.2%가 선생님이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와 관련된 학교의 학생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부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를 살펴보면, 교급이 높을수록 교사가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5~6명 정도가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고등학교가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과중한 학업부담과 더불어 개인의 시험성적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9]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표 IV-24 학교상황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19.5	24.0	35.0	21.6	100(4739)	74.588***
	여	13.0	24.2	39.9	22.9	100(4298)	
	전체	16.4	24.1	37.3	22.2	100(9037)	
교급	초	10.2	13.9	34.6	41.3	100(2792)	1058.522***
	중	15.9	27.1	40.7	16.3	100(3097)	
	일반계고	20.4	29.4	38.4	11.9	100(2419)	
	전문계고	29.2	32.6	29.6	8.5	100(729)	
	전체	16.4	24.1	37.3	22.2	100(9037)	
경제수준	상	17.0	16.8	32.7	33.5	100(1265)	137.680***
	중	15.9	25.3	38.3	20.5	100(7225)	
	하	20.9	26.6	34.8	17.7	100(492)	
	전체	16.4	24.1	37.3	22.2	100(8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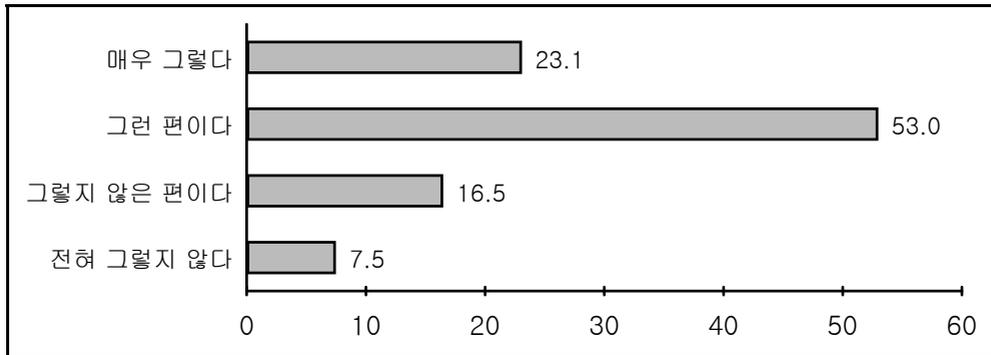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교사가 개인 시험성적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다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 등에 대한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지표이다. 학교 내 따돌림이나 구타 등의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심적 괴로움을 부모나 학교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더 극심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거나 혹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따라서 학교 내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육체적 문제를 비공개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0]에는 학교 내에 학생들의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 가능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률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의 76.1%가 학교 내에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상담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좀 더 전문적인 상담기구 설치와 상담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20】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표 IV-25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성별	남	9.1	16.8	50.9	100(4752)	41.858***	
	여	5.8	16.1	55.2	100(4296)		
	전체	7.5	16.5	53.0	100(9048)		
교급	초	8.7	14.2	42.4	100(2780)	497.761***	
	중	6.5	13.3	56.8	100(3106)		
	일반계고	7.0	21.4	59.6	100(2431)		
	전문계고	8.9	22.2	55.0	100(731)		
전체	7.5	16.5	53.0	23.1	100(9048)		
경제수준	상	8.7	13.0	43.1	35.1	100(1273)	152.590***
	중	7.0	16.9	54.9	21.2	100(7233)	
	하	11.4	20.2	49.1	19.3	100(491)	
	전체	7.5	16.5	52.9	23.1	100(8997)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학교 내에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표 IV-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1.858, p<0.001, \chi^2=497.761, p<0.001, \chi^2=15.340, p<0.05, \chi^2=152.590, p<0.001$ ).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74.1%, 여학생의 78.1%가 학교 내에서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가 포함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남학교보다 여학교에 비공개 상담기구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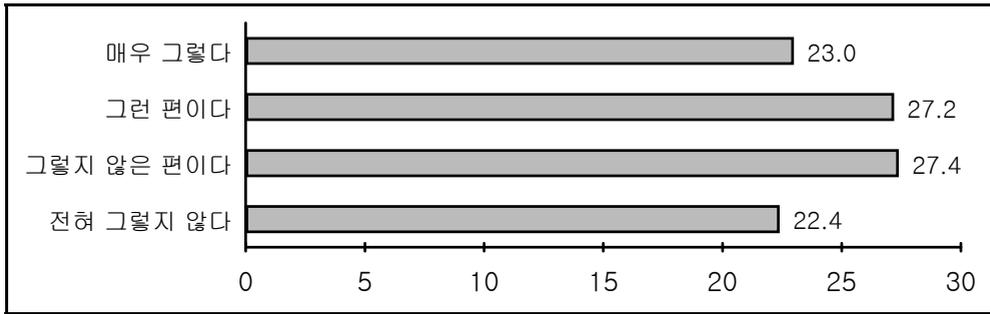
교급에 따른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를 살펴보면, 중학생(80.2%), 초등학생(77.1%), 일반계 고등학생(71.6%), 전문계 고등학생(69.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비해 비공개 상담기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등학생의 응답률도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의 학교 내 비공개 상담기구 설치 비중을 중학교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 내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의 비공개 상담기구의 수가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의 비공개 상담기구의 수보다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비율이 높고 학교에서의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비공개 상담기구의 설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등·하교시 휴대전화 회수·반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정도는 아동·청소년들이 등교 후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 것을 인권침해로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수업 중 친구와 문자·SNS 등을 통한 대화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휴대전화를 회수·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IV-21]은 아동·청소년들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을 나타낸 것으로, 50.2%의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49.8%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을 의미한다. 즉,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휴대전화 소지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수업권 등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권리행사에 제재를 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1】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표 IV-26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교급	초	33.6	22.6	25.3	18.5	100(2808)	446.633***
	중	21.0	29.5	25.0	24.5		
	일반계고	14.5	31.7	31.9	21.9		
	전문계고	11.6	22.6	27.7	38.1		
	전체	22.4	27.4	27.2	23.0		
지역규모	대도시	20.4	27.2	29.6	22.8	100(3954)	36.783***
	중소도시	23.8	27.6	24.5	24.1		
	읍/면	24.4	27.3	27.6	20.7		
	전체	22.4	27.4	27.2	23.0		
경제수준	상	29.1	23.1	25.2	22.6	100(1271)	70.356***
	중	21.6	28.6	27.3	22.5		
	하	16.8	21.7	31.0	30.6		
	전체	22.4	27.4	27.2	23.0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이 등교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IV-2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46.633$ ,  $p<0.001$ ,  $\chi^2=36.783$ ,  $p<0.001$ ,  $\chi^2=70.356$ ,  $p<0.001$ ). 즉,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즉, 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비공개 상담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 및 또래들에게 학교폭력, 왕따,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광범위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혹은 교육청 내에 상담교사 및 상담기구 설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부터 학교상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181개 지역교육청에 임용·배치하였다.

전문상담교사란 학교상담자 중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지역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임용·배치되어 학교상담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를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학생들의 심리 및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릴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신규전문상담교사 250명, 전직 임용교사 250명을 선발하여 단위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상담교사 상담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44.9%에 지나지 않았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아동·청소년들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교육청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상담교사 1인당 상담학생 비율이 높아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지역단위의 순회교사 시스템이 아닌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 시스템이 의무화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전문상담교사 출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시적으로 단기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만들어 전문상담인력을 배출하고자 하였고, 또한 일선의 교사들에게 소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들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상담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마음 깊숙한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해주는 것으로,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식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내담자에게 더 심각한 정서·심리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섬세한 과정이 상담의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적인 상담이론 및 상담실제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전문상담사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직업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를 정규직화하여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전문상담교사의 증원, 전문화, 처우 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공무원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무원의 수급 및 대우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범부처가 힘을 합쳐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정보접근권

### (1) 지표의 의미

정보접근권은 협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다양한 국내외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아동이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심신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대중매체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협약 제29조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일반토론의 주제로 ‘아동과 매체(The child and the media)’<sup>45)</sup>에 대해서 논의하고, 매체교육, 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행동계획, 아동 학대 보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권고를 채택했다(임희진, 김현신, 2011).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는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과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과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등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지표만을 산출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발달·참여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어린이도서관 수’,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매체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독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비율과 관련된 자료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매년 집계하는 「출판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출판통계에 실린 우리나라의 출판 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정기간행물 및 교과서 등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출판통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총 신간도서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는 <표 IV-27>에 나타나 있다.

**표 IV-27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단위: 종, 부, %)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총계	40,291	44,036	9.3	100.00%	106,309,626	109,550,227	3.0	100.00%
아동	7,352	9,546	29.8	21.68%	26,199,626	37,705,148	43.9	34.42%

\*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출판통계」 재구성

45)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child\\_and\\_media.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child_and_media.pdf)

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총 신간 발행 종수는 44,036종이었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sup>46)</sup>의 신간 발행 종수는 7,352종이었다. 이는 총 신간 발행 종수의 2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회과학, 철학, 종교, 문학, 예술, 어학, 만화 등 여타 분야의 점유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2010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도, 총 신간발행 종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데 반해, 아동·청소년 분야의 도서는 전년대비 29.8%의 증가율을 보여 총 신간 발행 종수 증가율의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분야의 신간 발행 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전집류를 선호하는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아동·청소년용 전집 도서의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up>47)</sup>

신간 발행 종수를 다시 발행 부수로 환산해서 보면, 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총 신간 발행 부수는 109,550,227권이었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의 신간 발행 부수는 37,705,148권이다. 이는 총 신간 발행 부수의 34.42%로, 이 역시도 여타 분야의 신간도서 점유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도, 총 신간발행 부수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데 반해, 아동·청소년 분야의 도서는 43.9%의 증가율을 보여 총 신간발행 부수 증가율의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분야의 신간발행 증가율은 아동·청소년들이 도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소양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분야의 신간 발행 증가율이 부모의 전집류 선호로 인한 증가율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아동·청소년이 읽을 도서를 구입하는 주체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부모일 경우가 상당수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도서선택권 및 이에 따른 정보접근권이 부모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② 어린이도서관 수

어린이도서관 수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동·청소년의 지역 내 문화시설을 통한 정보접근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도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방대한 양의 서적을 구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나 자주 보게 될 도서가 아닌 경우는

46) 도서 출판 현황 집계 시 도서 구분은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로 나뉘어지므로 아동·청소년 도서에 참고서는 포함되지 않음.

47) <http://www.kpa21.or.kr> (자료검색일, 2012. 9. 20)

대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통한 정보접근이 수월해진다는 것으로, 지역 내 도서관 설립은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을 크게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적인 대중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일반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을 일반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만으로 제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IV-2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759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중 아동·청소년을 위해 건립된 어린이도서관은 71곳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표 IV-28**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구 분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서울	11	101
부산	2	30
대구	4	26
인천	9	26
광주	2	16
대전	1	22
울산	1	11
경기	26	163
강원	1	47
충북	3	32
충남	2	51
전북	1	45
전남	2	57
경북	-	58
경남	4	53
제주	2	21
전체	71	759

\*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총괄표(<http://www.libsta.go.kr/potal/stat/libStatSummary.do>, 자료검색일: 2010. 10. 1) 재구성

관의 약 9.4%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도서관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이 약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수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도서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울, 인천 순이었다. 경기도,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5곳 미만이었으며, 특히 경북 지역에는 어린이도서관이 1곳도 없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 중 근접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특히 부모나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근접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의 거주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은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일반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다. 하지만 열람실의 경우 그 도서보유량이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장소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 ③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학교 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은 학교 내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비율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보유율을 알아보려고 하는 지표이다. 24세 미만의 상당수 아동·청소년이 학생이고, 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장서 보유율은 아동·청소년이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재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표 IV-29>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97.4%, 중학교의 95.2%, 고등학교의 97.9%의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서관 설치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 이상이나, 아직까지 초등학교의 151개교, 중학교의 150개교, 고등학교의 49개교에는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학교에 도서관이 없을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 IV-29 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도서관 보유학교수	비율	학교수	도서관 보유학교수	비율	학교수	도서관 보유학교수	비율
2004	5,541	4,466	80.6	2,888	2,552	88.4	2,080	1,915	92.1
2005	2,646	4,513	79.9	2,935	2,474	84.3	2,095	1,890	90.2
2006	5,733	4,894	85.4	2,999	2,727	90.9	2,144	1,983	92.5
2007	5,756	4,958	86.1	3,032	2,728	90.0	2,159	2,013	93.2
2008	5,813	5,089	87.5	3,077	2,802	91.1	2,190	2,051	93.7
2009	5,829	5,301	90.9	3,106	2,842	91.5	2,225	2,090	93.9
2010	5,854	5,548	94.8	3,130	2,950	94.2	2,253	2,168	96.2
2011	5,882	5,731	97.4	3,153	3,003	95.2	2,282	2,233	97.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주: 1) 도서관은 교내 일반 교사와 별도로 당초부터 도서관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시설(교사내의 일반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도서실과 구별됨)

2) 비율=도서관 보유학교수/학교수×100

3) 학교수 및 도서관 보유학교수는 본교만을 대상으로 함.

표 IV-30 학교도서관(실)의 학생 1인당 장서수

(단위: 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2000	14,761,564	3.7	11,093,005	6.0	11,118,438	5.4	6,938,692	7.6	58,887,614	35.4
2005	34,171,354	8.5	15,390,907	7.7	15,215,719	8.6	10,644,766	12.5	80,278,684	43.2
2006	39,447,111	10.1	17,026,229	8.2	15,553,486	8.8	10,988,478	13.4	86,155,850	45.6
2007	46,686,633	12.2	19,102,056	9.3	16,929,394	9.2	11,100,351	14.0	90,564,353	47.2
2008	50,611,889	13.8	21,265,768	10.4	18,562,014	9.7	10,933,845	14.2	94,016,793	48.4
2009	56,537,192	16.3	24,575,844	12.2	20,579,475	10.5	10,531,001	13.8	98,772,380	49.8
2010	64,055,427	19.4	27,925,729	14.1	22,913,090	11.7	11,185,771	14.6	102,336,619	50.4
2011	72,006,386	23.0	30,793,912	16.1	25,607,755	13.2	11,792,345	15.2	109,332,765	52.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주: 학생 1인당 장서수 = 장서수 / 재적 학생수

아동·청소년의 도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수는 학교 도서관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판가름하게 해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제시된 ‘연도별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표 IV-30>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1인당 장서수는 23.0권, 중학교는 16.1권, 고등학교는 13.2권, 전문대학은 15.2권, 대학은 52.9권으로 나타나,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으로 학교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가 많았다. 대학의 경우, 다양한 전공학부, 학과가 존재하고 학문의 깊이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서적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학생 1인당 장서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대학보다 전공의 수도 적고,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보다 1인당 장서수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1인당 장서수가 적다는 것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정보접근 기회가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1인당 장서수가 적다는 것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당국이 대학 입시나 취업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 수업 이외의 교양을 얻을 수 있는 서적들을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고등학교의 1인당 장서수의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더욱 더 확실해지는데,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1인당 장서수 증가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도서관에 신간 도서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나 학계, 사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이 대학진학나 취업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고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종류의 장서를 비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서의 1인당 장서수와 증가율은 학교사회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④ 매체 이용률

매체 이용률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대중 매체나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은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V-31 매체 이용률

구 분	만9~24세			만12세~18세	
	이용(%)	주중 평균시간	주말 평균시간	2011년 이용(%)	2008년* 이용(%)
TV(DMB)포함	97.7	1:19	2:15	97.7	94.9
이동전화(문자포함)	92.4	1:00	1:05	94.4	81.4
인터넷 (이메일, 커뮤니티, 메신저,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	84.2	0:55	1:13	86.4	95.8
책(교과서 제외, 잡지 포함)읽기	79.6	0:49	0:47	75.5	58.3
인터넷 게임(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포함)	79.2	0:56	1:25	79.8	60.5
MP3(CD 플레이어 포함)듣기	78.3	1:04	1:00	83.2	64.7
비디오(DVD, 인터넷 영화 포함)	65.0	0:47	1:24	61.0	-**
종이신문 읽기	37.6	0:21	0:16	36.0	8.6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주: \*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비교

\*\* 문항 상이 비교불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표 IV-31>에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매체 중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97.7%)였으며, 그 다음이 이동 전화(92.4%), 인터넷(84.2%), 책(84.2%)의 순이었다. 이러한 매체 이용률을 2008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2008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인 인터넷이 TV와 이동 전화 다음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연령이 달라진 것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아동·청소년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으로 TV 시청,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TV 시청은 특별한 노력 없이 화면을 보는 것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편하고 손쉬운 정보접근 방법으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혹은 저조했던 2008년도의 경우에는 TV가 있는 특정 장소에서만 TV 시청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TV를 통한 정보습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TV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발달한 SNS로 인해 상호 정보교환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이동전화 이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TV가 주중, 주말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중에는 MP3, 이동전화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았고, 주말에는 인터넷 게임, 비디오 시청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았다. 주중 MP3의 이용시간이 많은 것은 소지가 쉽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말 이용시간이 많은 인터넷 게임이나 비디오 시청은 한 번 매체를 이용하면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매체의 특성 상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매체 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을 제한하고 언론, 출판, 예술작품 등의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개념을 통일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심의기관에서 심의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매체 이용 제한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항에는 다양한 매체물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법」에 따른 공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신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을 매체물의 종류에서 따로 분리하여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 매체물을 심의·경정하는 역할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다.

이상과 같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 매체물 지정 및 규제가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내용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성의 내용을 사항별로 열거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가 여부가 논란되고 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 요건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제한의 사유는 법률로서 명확히 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은 자의적 심의의 위험성을 내포함에 비추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두 번째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은 유해 매체물을 심의하는 기관이 매체 심의 시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유해매체를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준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개별 심의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근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심의 기관의 인터넷 웹툰에 관한 심의 논란에서 보듯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임의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심의 기관들이 병행하여 자의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면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 기관의 일원화이다. 현행의 산발적인 심의 기관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이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요구된다. 현대의 기술적 환경은 동일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영상물, 공연물, 방송 등 유통 플랫폼 위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심의 기구들은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일원화된 심의 기구에서 담당함이 현대의 기술적 경향에

더욱 합당할 것이다. 또한 심의 기관의 일원화를 통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좀 더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심의 기관에 관한 민간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원화된 심의 기관에 있어서도 심의 절차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 즉 콘텐츠 생산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내용인 액세스권<sup>48)</sup>과 반론권<sup>49)</sup>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셋째, 유해 매체물 심의에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 실제로 자유가 침해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콘텐츠 생산자들이므로 청소년의 참여와 무관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개별적 심의 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갖기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단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또한 청소년의 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제도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책 마련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문화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고 판단해 봄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심의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추후 심의기관의 일원화와 자율규제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변경과 입안에 있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자율 규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우월적인 정신적 자유권에 있어서는 그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가 요구됨이 원칙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명령지시적 규제는 자의적이고 과잉된 규제 경향이 존재하고 규제 회피가 많아지며 규제 준수율도 낮아지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자나 단체의 전문성을 충분히

48) '액세스권'이라는 권리개념은, 영미법(英美法)에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세스권'은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거대화·독점화한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異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액세스(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반론권(反論權)'은 그 하나의 측면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4549&mobile&categoryId=200000319>).

49)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한 유형으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969년에 있었던 미국의 레드라이온방송국사건은 연방통신법이 규정하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레드라이온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받은 사람이 반론방송을 요구하여, 연방최고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방송법(91조 1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6조 1항)에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사건 및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제정된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보도된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방송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반해, 반론권은 보도된 사실의 이해 관계자가 기사와는 다른 내용의 견해도 게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0254&mobile&categoryId=200000319>).

활용하여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율 규제가 더욱 실효적일 수 있다.

##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의 5개 하위 영역, 24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 영역의 지표는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회참여 경험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참여권 보장 수준’이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영역의 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영역의 지표는 ‘결사·집회 경험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사생활의 보호 영역의 지표는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도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정보접근권 영역의 지표는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어린이도서관 수’,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매체 이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 및 결사·집회의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약 75% 정도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80% 이상이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의 참여수준이나 참여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요구 및 필요도는 높지만 실제 참여 수준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 정책이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아동·청소년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사회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부모님의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방법에 대한 활동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및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적과 대학입시만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아동·청소년이 학업활동 외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및 아동·청소년이 발달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연령에 대한 차별 등을 개선시켜나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위해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아동·청소년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참여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이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간행물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서는 과반수의 학교가 학교 간행물 발행에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학교운영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의견이나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이 상호존중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교 선택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중립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경우 12.7%가 종립학교인 만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종립학교 당국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종립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계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선택권 보장, 종교가 없는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강제적인 권고 사항 집행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시험 성적 등이 다른 아동·청소년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험률은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학교 사회에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도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임을 감안해 볼 때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학생의 인권과 여학생의 인권이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일탈 행동을 보이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에서마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학교에서의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키워나갈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70% 이상의 학교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학교 내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기구 설치와 상담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정보를 가장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고 도서관 설치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 아직까지 도서관이 설치되어 않은

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1인당 장서수가 적고 장서 증가율도 적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도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도서관 내의 장서 보급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아동·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 매체물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 정책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입양(제21조),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이다. 1차년도(2011년)에 이 영역에서 9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1차년도(2011년)에 다루지 못한 「부모의 지도와 책임」 및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 지표의 의미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협약 제5조와 제18조 1항,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비롯한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협약 제5조는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원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아동의 1차적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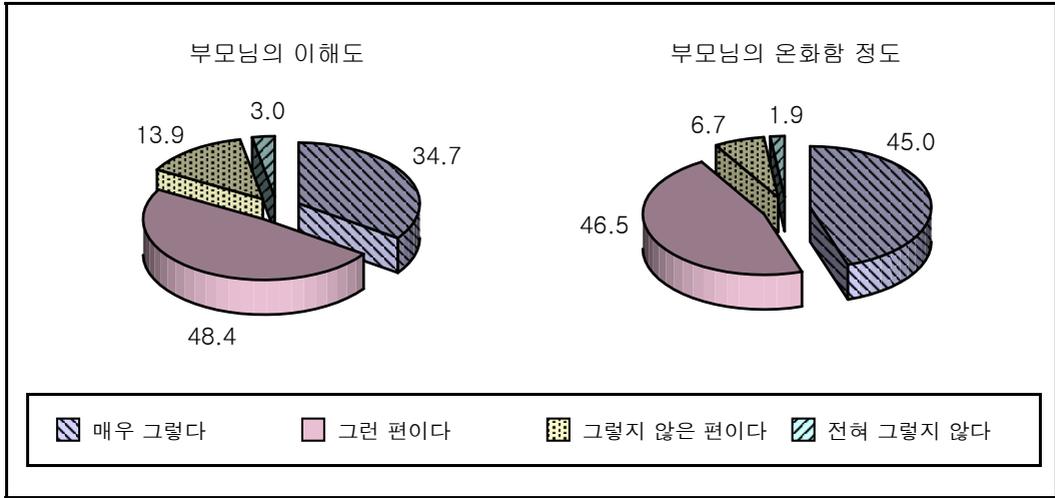
### ①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잘 이해해주시는 정도’와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모님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가 높을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스스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님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는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은 [그림 IV-2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83.1%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잘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의 91.5%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가 매우 높기는 하였으나, 온화함 정도가 이해도보다 약 8%p 높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일부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긴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먼저, 교급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님(보호자)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응답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99.036, p<0.001, \chi^2=433.533, p<0.001$ ). 부모님(보호자)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 모두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약 80% 이상의 학생이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른 교급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춘기의 시기적 특성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IV-22】 부모·자녀 관계(%)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에서,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 응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3.561, p<0.001, \chi^2=52.644, p<0.001$ ). 부모님(보호자)의 이해도와 온화함 모두에서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90% 이상은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약 82~85%만이 부모님(보호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여,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약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74.0%인데 반해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6.3%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는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이해도와 온화함 정도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chi^2=426.766, p<0.001, \chi^2=321.763, p<0.001$ ).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90% 이상이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인

표 IV-32 부모·자녀 관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부모님의 이해도	교급	초	2.0	7.9	39.7	50.3	100(2784)	499.036***	
		중	4.5	15.8	49.8	29.9	100(3109)		
		일반계고	2.2	17.2	55.2	25.4	100(2433)		
		전문계고	3.4	16.9	52.5	27.2	100(732)		
		전체	3.0	13.9	48.4	34.7	100(9058)		
	가족유형	양부모	2.6	13.3	48.8	35.2	100(7981)	73.561***	
		한부모	7.1	18.9	42.7	31.3	100(773)		
		조손가정	3.8	14.2	52.8	29.2	100(106)		
		기타	1.8	16.5	45.9	35.8	100(109)		
		전체	3.0	13.9	48.3	34.8	100(8969)		
	경제수준	상	2.5	6.8	35.4	55.2	100(1262)	426.766***	
		중	2.6	14.4	50.9	32.1	100(7251)		
		하	10.9	22.9	44.1	22.1	100(494)		
		전체	3.1	13.8	48.3	34.8	100(9007)		
	부모님의 온화함 정도	교급	초	1.1	5.2	33.6	60.0	100(2773)	433.533***
			중	3.2	8.6	49.0	39.3	100(3098)	
일반계고			1.0	5.8	54.7	38.5	100(2428)		
전문계고			2.1	7.1	56.7	34.1	100(730)		
전체			1.9	6.7	46.5	45.0	100(9029)		
가족유형		양부모	1.6	6.4	46.4	45.6	100(7961)	52.644***	
		한부모	4.6	9.1	46.0	40.3	100(769)		
		조손가정	1.9	12.4	49.5	36.2	100(105)		
		기타	0.9	8.3	49.5	41.3	100(109)		
		전체	1.9	6.7	46.4	45.0	100(8944)		
경제수준		상	1.8	4.4	30.3	63.5	100(1256)	321.763***	
		중	1.6	6.6	49.1	42.8	100(7230)		
		하	6.5	14.6	47.9	31.0	100(493)		
		전체	1.9	6.7	46.4	45.0	100(8979)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이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91.9%인데 반해, 이해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83.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인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보호자)가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인데 반해, 이해해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인 아동·청소년들의 부모의 온화함 정도와 이해도가 다른 계층보다 현저하게 낮고, 특히 온화함과 이해도의 응답률 차이도 현격하게 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저소득 가정 중 부모·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이 상당수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②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와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아동·청소년들과 부모 각각 상대방에 대한 정보 및 생각을 공유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표 IV-3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30분 미만(42.1%)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분~1시간 미만(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2시간 이상(27.0%)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분~1시간 미만(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 6.8%, 어머니의 경우는 2.5%로 나타나, 아버지와의 대화 부재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가 직장의 업무 과다로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대화기술의 부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남성은 과묵해야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 남성들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에 비해 적고, 또 그로 인해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표하곤 한다. 이는 곧바로 자녀와의 대화시간 감소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33 부모와의 대화시간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미만	30분 ~1시간미만	1~2시간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아버지	6.8	42.1	21.7	11.3	12.6	5.5
어머니	2.5	22.4	26.8	18.2	27.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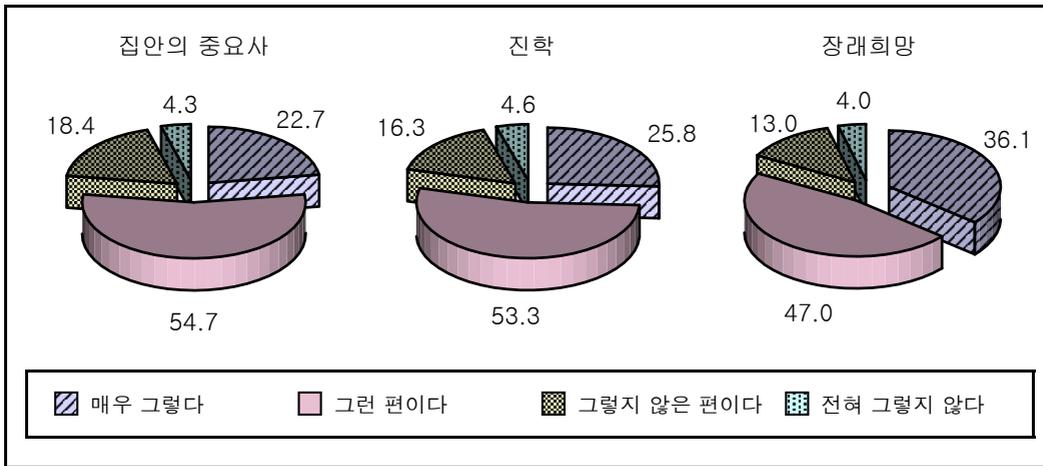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③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는 부모(보호자)의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는 정도’, ‘진학할 상급학교 결정시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주는 정도’,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을 존중해주는 정도’의 결과로 알아보았다. 이 지표는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측면에서 부모로서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된다.

부모(보호자)의 자녀의견 존중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V-2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77.4%는 부모님(보호자)이 집안의 중요사 결정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응답하였으며, 79.1%와 83.1%는 부모님(보호자)이 진학 및 장래희망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하여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에 대한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3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를 살펴보면, 세 항목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정에서의 의견 존중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chi^2=24.152$ ,  $p<0.001$ ,  $\chi^2=44.748$ ,  $p<0.001$ ,  $\chi^2=30.549$ ,  $p<0.001$ ). 특히, 진학결정과 관련해서 여학생의 81.6%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의 76.0%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학생들의 진학 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관여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23】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교급에 따른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하였다( $\chi^2=224.909, p<0.001, \chi^2=119.976, p<0.001, \chi^2=319.949, p<0.001$ ). 중학생이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지표와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항목 중 자녀이해도와 부모의 온화함 정도에서 중학생들은 다른 교급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춘기인 중학생들의 반항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부모와의 갈등이 가정 내에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부모가 자녀를 태하는 태도와 의견 존중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를 살펴보면, 세 항목 모두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chi^2=344.528, p<0.001, \chi^2=246.467, p<0.001, \chi^2=272.697, p<0.001$ ).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1명 정도는 전혀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표 IV-34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집안의 중요사 결정	성별	남	4.9	19.0	55.2	20.9	100(4769)	24.152***
		여	3.6	17.7	54.2	24.6	100(4317)	
		전체	4.3	18.4	54.7	22.7	100(9086)	
	교급	초	4.3	15.6	48.3	31.8	100(2810)	224.909***
		중	5.1	19.9	55.1	19.9	100(3110)	
		일반계고	3.1	18.9	60.5	17.5	100(2436)	
		전문계고	4.6	21.0	57.9	16.4	100(732)	
	경제수준	전체	4.3	18.4	54.7	22.7	100(9088)	344.528***
		상	4.0	11.9	44.3	39.8	100(1274)	
		중	3.9	18.7	56.9	20.5	100(7266)	
		하	9.5	30.1	49.3	11.1	100(495)	
	진학 결정	성별	전체	4.2	18.4	54.7	22.7	100(9035)
남			5.69	17.4	52.9	24.0	100(4771)	
여			3.5	15.0	53.8	27.8	100(4317)	
교급		초	4.6	16.3	53.3	25.8	100(9088)	119.976***
		중	4.8	13.9	48.4	32.9	100(2810)	
		일반계고	5.0	17.4	54.1	23.4	100(3110)	
		전문계고	3.8	17.1	57.0	22.1	100(2435)	
경제수준		전체	4.6	16.3	53.3	25.8	100(9087)	246.467***
		상	4.9	10.7	42.5	41.9	100(1273)	
		중	4.2	16.9	55.5	23.5	100(7267)	
		하	8.9	22.1	49.7	19.3	100(493)	
장래희망 결정		성별	전체	4.5	16.3	53.3	25.8	100(9033)
	남		4.6	13.7	47.9	33.8	100(4769)	
	여		3.3	12.1	45.9	38.6	100(4317)	
	교급	초	4.0	13.0	47.0	36.1	100(9086)	319.949***
		중	3.6	10.8	37.0	48.7	100(2809)	
		일반계고	5.3	14.4	48.6	31.7	100(3109)	
		전문계고	2.9	13.7	53.6	29.8	100(2435)	
	경제수준	전체	3.8	12.8	56.2	27.1	100(733)	272.697***
		상	4.0	13.0	47.0	36.1	100(9086)	
		중	3.7	8.2	33.9	54.2	100(1273)	
		하	3.6	13.5	49.2	33.8	100(7265)	
	경제수준	전체	9.9	16.4	48.8	24.9	100(494)	272.697***
상		4.0	12.9	47.0	36.1	100(9032)		
중		3.6	13.5	49.2	33.8	100(7265)		
하		9.9	16.4	48.8	24.9	100(494)		

\*  $p < 0.05$ , \*\*  $p < 0.01$ , \*\*\*  $p < 0.001$

#### ④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수는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들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육시설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신 양육·교육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물론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이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수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어머니의 지나친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취업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종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시설,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보육시설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1). 각 보육시설 종류별로 보육시설의 수에 대한 자료는 <표 IV-35>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총 39,84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정보육시설이 5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민간보육시설(37.7%), 국·공립보육시설(5.3%)의 순으로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00	19,276	1,295	2,010	9,294	6,473	-	204
2001	20,097	1,306	1,991	9,803	6,801	-	196
2002	22,147	1,330	1,633	11,046	7,939	-	199
2003	24,142	1,329	1,632	12,012	8,933	-	236
2004	26,903	1,349	1,537	13,191	10,583	-	243
2005	28,367	1,473	1,495	13,748	11,346	42	263
2006	29,233	1,643	1,475	13,930	11,828	59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3,184	61	320
2008	33,499	1,826	1,458	14,275	15,525	65	350
2009	35,550	1,917	1,470	14,368	17,359	66	370
2010	38,021	2,034	1,468	14,677	19,367	74	401
2011	39,842	2,116	1,462	15,004	20,722	89	449

\*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재구성

또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보육시설 수를 살펴보면 매년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보육시설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총 보육시설에서 각 종류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보육시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은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설치·운영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정보육시설의 비율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 및 사회의 복지실현보다는 개인사업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중매체에서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젊어지고 갈 영·유아들의 기본적인 신체·인지·정서·사회 등의 모든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가정 및 사회의 인적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보육사업을 단지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 ⑤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는 우리나라의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IV-36>에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11년 현재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총 1,348,7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영·유아 추계 인구가 2,759,816명<sup>50)</sup>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48.9%가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의 보육아동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어 2012년도에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영·유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2012년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수가 많았다. 보육시설 수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 52.0%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재원 보육아동의 수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가 많았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대개

50) 보건복지부(2011)가 발간한 「보육통계」에 실린 연도별 영유아 추계 인구에서 인용



이러한 특수보육시설들은 부모나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써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이용주체, 보육교사현황에서 일반적인 보육시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특수보육시설의 일반현황은 <표 IV-37>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보육통계」 자료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은 총 10,433곳이었으며, 이는 전체보육시설의 26.2%에 해당된다. 설립주체별로는,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시설(3,870곳, 전체 특수보육시설의 36.5%), 민간보육시설(3,759곳, 36.0%), 국·공립보육시설(1,902곳, 18.2%) 순으로 특수보육시설이 많았다. 국·공립특수보육시설은 18.2%로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의 비율보다는 낮았으나, 일반 어린이집에서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5.3%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나타났다. 전체 815곳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84곳이었으며, 이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59.4%에 해당한다. 아직도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고, 자신의 자녀를 장애아들과 같이 양육·교육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장애아 통합 보육을 하는 시설을 민간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아를 일반 영·유아들과 같이 양육·교육시키는 것은 장애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들의 심리·정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 교육권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및 정부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지원의 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수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106명<sup>52)</sup>의 아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6.1%에 해당한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각 가정과

시 18명 이상의 미취학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종일반(7:30~19:30) 기준]

장애아통합: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휴 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52) 각 특수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아동현원의 합

아동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이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국가 및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인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37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638	56	223	305	54	-	-
		아동	아동정원	29,663	2,806	13,616	12,180	1,061	-
		영아아동현원	24,653	2,549	10,447	10,630	1,027	-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169	33	100	34	2	-	-
		아동	아동정원	8,154	1,259	5,494	1,361	40	-
		장애아동현원	6,152	1,027	4,027	1,063	35	-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815	484	46	251	32	-	2
		아동	아동정원	73,681	46,084	5,063	21,788	608	-
		장애아동현원	3,513	2,299	174	956	72	-	12
방과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461	93	74	278	11	1	4
		아동	아동정원	36,548	8,006	8,033	19,646	197	122
		방과후아동현원	7,114	1,825	749	4,433	46	-	61
시간 연장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7,844	1,093	372	2,715	3,586	4	74
		아동	아동정원	359,392	86,167	36,639	165,677	63,769	264
		시간연장아동현원	39,313	4,989	1,961	16,361	15,598	44	360
휴일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238	95	40	69	28	-	6
		아동	아동정원	17,773	8,264	4,339	4,162	508	-
		휴일아동현원	461	35	136	247	39	-	4
24 시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268	48	13	107	94	-	6
		아동	아동정원	13,995	4,040	1,101	6,537	1,709	-
		24시간아동현원	900	149	53	427	269	-	2

\*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재구성

- \* 주: 1) 영아아동현원: 보육나이가 0,1,2세인 아동현원  
 2) 장애아동현원: 아동자격이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인 아동현원  
 3) 방과후: 방과후전담 + 방과후 통합 어린이집

⑦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교사 대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1).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질 좋은 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이를 영·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들은 발달 특성 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렵고,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는 예측불허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1인당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의 경우 1:3, 만 1세는 1:5, 만2세는 1:7, 만3세는 1:15, 만 4~5세는 1:20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실제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표 IV-38>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수는 180,24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수 대비 보육아동 수를 산출해보면,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7.5명이었다. 이는 2006년의 교사 1인당 아동수인 10.0명보다 낮아진 수치로 지속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육아동수	1,040,361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보육교사수	104,320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교사 1인당 아동수	10.0	9.1	8.2	7.8	7.7	7.5

\*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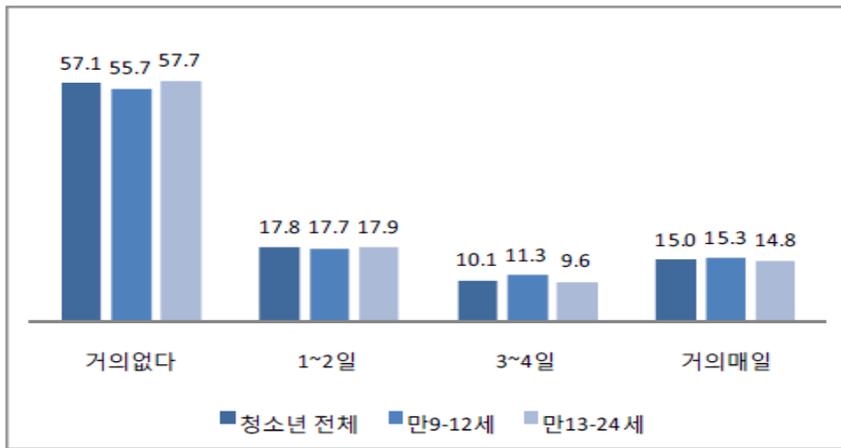
원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 주: 2011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1 보육통계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임.

⑧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는 평일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청소년의 수를 나타낸다. 아동·청소년의 양육책임자인 보호자의 부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요구를 그때그

때 채워줄 수 없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곳곳에 잠재해있는 위험요소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V-24】 방과후 보호자 부재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의 현황은 여성가족부(2012)의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림 IV-24]에 제시되어 있다. 만9세에서 24세 아동·청소년의 57.1%는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8%는 일주일에 1~2일, 10.1%는 일주일에 3~4일을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동·청소년의 15.0%는 거의 매일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2명이 방과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3~4일 이상을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9~12세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6.6%로 나타나, 13~24세의 아동·청소년의 비율(24.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9~12세의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이들은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발달특성상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자 부재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들의 가정상황,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과후 보육 및 양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부모의 직접 양육과 보육시설을 통한 양육에 대하여 국가 및 사회가 어떠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육아책임은 자녀의 모에게 편중되어 부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성보호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보육의 공공성 개념이 확대되었고, 육아가 더 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직접적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부모 공동 양육책임과 관련된 사회적, 국가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여성이 혼자 양육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좁게는 자녀의 아버지가, 넓게는 국가 및 사회가 여성의 양육의 부담을 나누어갓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사회적 제도는 크게 모성보호제도와 부의 가족 돌봄 참여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성보호제도란 다음 세대의 재생산과 관계된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지혜, 2005). 일반적으로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성 보호, 산모와 수유모의 건강 보호(시간외 노동의 금지, 야간작업의 금지, 위험, 유해 작업의 금지, 갭내노동의 금지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조치(양육권)로 나뉘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과 산후에 연속하여 90일의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의무화, 가족 돌봄 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의 법적 근거들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이탈 및 이에 대한 임금삭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어머니와 자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여성의 육아 부담을 가족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가족 돌봄 참여제도는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

급격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부의 역할이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두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후기산업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문제는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Mahon, 2002; Bergqvist and Nyberg, 2002)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돌봄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성별 분리에 근거한 복지체제는 가족의 변화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부의 돌봄 노동참여를 제도화하는 문제야말로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윤홍식, 2005). 아버지의 가족 돌봄 참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과 출산휴가 기간이 너무 짧으며 무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 같은 모성보호정책 및 아버지의 가족 돌봄 제도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 책임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남녀평등고용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들을 새로이 도입·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제도가 성중립적으로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한지영, 2010). 따라서 모성보호제도 및 아버지의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사업주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및 남성 근로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완전한 양성평등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로 마련된 출산휴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아버지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또 그 성격상 무급휴가는 배제되어야 실효적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의 양육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과 유연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40시간근로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지영, 2010).

보육시설을 통한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관리, 보육서비스의 부담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공공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보육시설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육인력 관리, 보육서비스 질 관리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공급 및 운영 관리는 인허가와 지도감독의 방식으로, 인력 관리는 자격관리제도,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질 관리는 평가인증제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백선희, 2011).

보육서비스는 서비스의 부담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서비스의 부담 측면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법정 보육서비스와 비법정 보육서비스인 특별활동으로 구분된다. 법정 보육서비스는 국가 및 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2007년 제정된 표준보육과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만5세 유아에게는 표준보육과정과는 별도로 보육과 교육의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법정 서비스인 특별활동은 부모의 추가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는 만5세 이하 보육료지원, 장애아, 다문화자녀 무상보육,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 야간, 휴일, 24시간, 시간제,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성을 갖춘 교사,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사업이 요구된다.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고시에서는 만0세에서 만4세까지를 규정하고 있고 만5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만6세에서 취학전 시기 영유아의 보육, 취학 후 학교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방과후 보육, 주말, 방학기간의 보육 또한 보육의 범위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보육교사는 학력 및 경력기간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관리 기능이 초중등교사에 준할 정도까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5%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상적으로는 50% 이상이 요구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백선희, 2011).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는 수요대비 공급 과잉인 현실이다. 정리하면 보육시설은 공급과잉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그 비중이 미미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이 인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의 요구와 부모공동의 육아책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구로 무상보육 논의가 첨예하다. 무상보육은 그 개념상의 혼란은 차치하고 재정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2012년 초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정책은 현재까지 0~2세에 한해 부모 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양육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 ‘예산부족’의 이유로 시행 7개월 만에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보육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정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현황과 관련 없이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무상보육의 개념은 복지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상 보육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반발을 양산하고 있다. 복지사회로의 재편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및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적용 시기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 연령별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 2)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 (1) 지표의 의미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는 협약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1차, 제2차,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바 없으며, 이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그 수준에 합당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확대 운영되었다.<sup>53)</sup>

표 IV-39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수

(단위 : 개소)

구 분	전체어린이집수(A)	인증통과어린이집수(B)	통과율(C=B/A)
계	38,021	29,882	78.6
서울	5,870	4,874	83.0
부산	1,689	1,531	90.6
대구	1,544	1,314	85.1
인천	1,857	1,681	90.5
광주	1,192	1,178	98.8
대전	1,535	1,234	80.4
울산	754	584	77.5
경기	11,273	7,645	67.8
강원	1,085	935	86.2
충북	1,112	877	78.9
충남	1,687	1,209	71.7
전북	1,531	1,420	92.7
전남	1,135	966	85.1
경북	1,998	1,663	83.2
경남	3,234	2,314	71.6
제주	525	457	87.0

\*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재구성

\*\* 주: 전체 어린이집수(A): 2011년 12월말 정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2011년 12월말까지 신규로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수53) <http://kca.childcare.go.kr>. (2012. 10. 1. 자료검색)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표 IV-39>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38,021곳이었으며,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의 수는 29,882였다. 즉, 전체 어린이집 중 78.6%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통과한 것으로 상당히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집(98.8%)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통과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북(92.7%), 부산(90.6%)의 순으로 통과율이 높았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은 67.8%에 지나지 않아 통과율이 가장 낮았으며, 경남(71.6%)과 충남(71.7%)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이 낮았다. 따라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받게 되고, 인증현판이 붙어있는 어린이집은 정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및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대상 선정을 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영·유아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좋은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많고,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보육교사의 잡무가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채용하는 원아들의 등원을 금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실제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영·유아를 위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인증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평가인증 지표를 통해 어린이집을 평가하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토대가 되는 보육의 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경험하는 보호와 교육의 발달적 적합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을 위한 환경의 제공,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의 전문성, 합리적인 운영체계 등을 의미한다. 평가인증지표는 어린이집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평가하게 된다.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 7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인 미만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의 5개 영역 5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점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받게 되고, 인증현판이 붙어있는 어린이집은 정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평가인증에 통과된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에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및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대상 선정을 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평가인증 사실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보육시설물들을 평가기간에만 대여하거나 초과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심사기간 동안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많고,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보육교사의 잡무가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의 심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시설을 신설할 때 미리 평가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준비된 환경의 보육시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제도를 악용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추후에 다시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3) 소결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의 2개 하위 영역, 9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 영역의 지표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이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영역의 지표는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다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잘 이해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70%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하여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가족 유형이나 경제적 수준이 중 이상인 아동·청소년들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잘 이해한다거나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 이들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 간의 대화 기술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 중 5.3%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이었으며,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가율은 가정이나 민간 보육시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보육시설이 국가 및 사회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이 낮아지는 등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육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들의 삶의 초기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그에 수반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양육책임자인 보호자의 부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요구를 그때그때 채워줄 수 없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곳곳에 잠재해있는 위험요소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들의 가정상황,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과후 보육 및 양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근거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와 부의 가족 돌봄 참여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영역과 관련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실시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이 다양한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현실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영·유아를 위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인증사업의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내용은 장애(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보건서비스(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생활수준(제27조 1항, 2항, 3항)이다. 이 영역의 대부분은 1차년도(2011년)에 다루었고 이 영역에서 39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생활수준」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 1)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1) 지표의 의미

생활수준은 협약의 제27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당사국이 인정하고, 이러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의식주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협약 제26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6조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사국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제18조 3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수준과 사회보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두 하위영역을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임희진, 김현신, 2011).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들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가 제시되었다. 1차년도(2011년)에는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지표를 산출하였고, 이 절에서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청소년 실업률’을 산출하여 이 영역을 보완하고자 한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 중 집에 보호자가 없거나 방과후 특별한 활동을 하기 원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특기·적성, 보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도에 발행한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00%,

중·고등학교는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의 아동·청소년 참여 실태는 <표 IV-40>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56.6%의 아동·청소년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2명 중 1명 이상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고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50.4%, 중학생의 48.3%, 일반계 고등학교의 80.9%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어,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이러한 학습이 학교의 강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40 방과후학교<sup>1)</sup> 참여실태**

(단위: %, 만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sup>2)</sup>	
	참여율 <sup>3)</sup>	비용 <sup>4)</sup>	참여율 <sup>3)</sup>	비용 <sup>4)</sup>	참여율 <sup>3)</sup>	비용 <sup>4)</sup>	참여율 <sup>3)</sup>	비용 <sup>4)</sup>
2009	51.3	1.3	43.1	1.2	43.1	0.6	80.1	2.6
2010	55.6	1.4	45.0	1.3	50.0	0.7	84.6	2.8
2011	56.6	1.5	50.4	1.6	48.3	0.6	80.9	2.6

\* 자료: 통계청,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통계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  
2) 일반고등학교임.  
3) 참여율은 유상+무상임.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형태는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장애아동·청소년,

표 IV-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소	46개소	100개소	151개소	185개소	178개소	171개소	200개소	200개소
연인원	282,000	1,260,000	1,890,000	2,165,760	2,064,825	1,905,000	2,300,000	2,300,000
지원인원	2,350명	4,200명	6,300여명	7,680여명	7,245여명	6,700여명	8,000여명	8,000여명

\* 자료: e-나라지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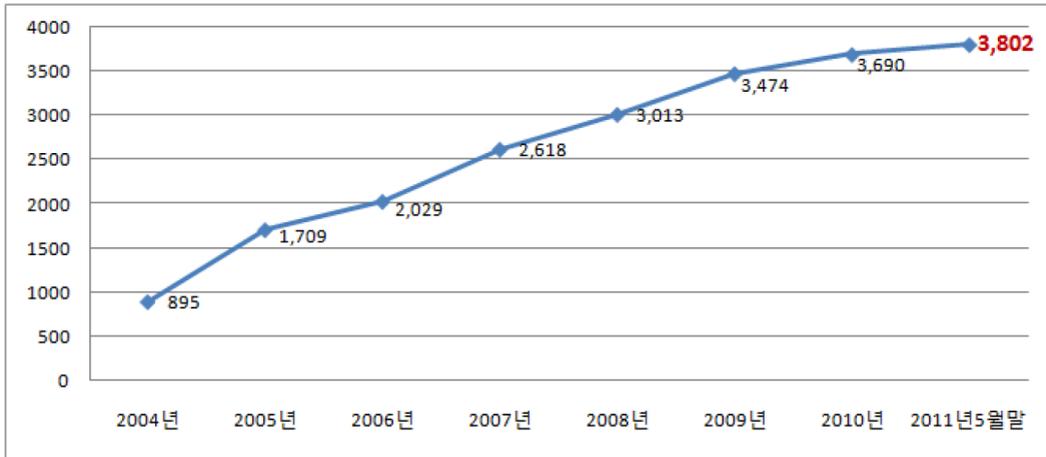
\*\* 주: 2012년 자료는 2012년 7월 기준임.

다문화가정아동·청소년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무상으로 참여하게 해주는 형태이다. 일반형은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참여 청소년 전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혼합형은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 청소년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은 <표 IV-4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2005년 전국 46개소로 시범 운영되었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총 참여인원은 2,300,000명에 달한다. 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은 8,000여명으로 총 참여인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수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부터 감소하였고, 2011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도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수가 감소한 이유는 운영자금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이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 육성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아동 비율은 2007년까지 3.3%를 유지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3.5%를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청소년 활동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청소년, 특히 빈곤아동·청소년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1).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부모가 집에 있어도 양질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림 IV-2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표 IV-4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2,089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3,129
초등학생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4,061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58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8,853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334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354
기타	-	22	99	317	196	-	-	-

\*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림 IV-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5월 기준으로 3,8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4년에 895개소이던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현황은 <표 IV-42>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102,08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센터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아동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전체의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33.4%), 중학생(18.5%)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이 짧아 일찍 하교하기 때문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자료는 <표 IV-43>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만 15~24세의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인데 반해, 20~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나타나, 경제활동 참가율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15~19세

표 IV-43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구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24세	36.9	33.3	30.2	28.1	26.3	25.4	25.5
남자	31.2	26.7	24.3	23.1	21.0	20.4	20.2
여자	41.9	39.0	35.5	32.7	31.1	29.9	30.4
15~19세	12.0	9.1	7.5	7.3	6.5	6.2	6.9
남자	9.5	8.0	6.3	6.5	5.6	4.9	5.5
여자	14.5	10.3	8.9	8.1	7.5	7.5	8.5
20~24세	63.1	57.2	54.6	52.6	50.1	49.2	48.9
남자	58.8	49.8	48.4	47.3	43.9	44.1	42.7
여자	66.1	62.6	59.1	56.4	54.6	53.0	53.5

\* 자료: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주: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청소년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대학입시나 취업준비로 인해 특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세 이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남자 청소년의 20.2%, 여자 청소년의 30.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20~24세의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학생에 비해 11.2%나 높았다. 이러한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만19세 이상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자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실업률

청소년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와 더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과 관련된 자료는 <표 IV-44>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청소년 실업률은 9.8%로, 구직을 원하는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러한 청소년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11.9%였으며,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9.5%로 나타나,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학생 신분인 15~19세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일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11.2%, 여자 청소년의 9.0%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구직자들 중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구인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 청소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성별에 따라 연도별 실업률 추이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15~19세 청소년들의 실업률 오르내림이 좀 더 심한 것은 이들이 대개 아르바이트 형식의 비정규 상태로 일을 하므로, 근로조건 및 근로상태가 더 열악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고용불안 상태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4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업자	실업률										
15~24세	208	10.2	180	10.0	147	8.8	145	9.3	149	9.9	150	9.8
남자	94	12.3	80	11.7	74	11.4	68	11.5	69	11.9	65	11.2
여자	114	9.0	100	9.0	73	7.2	77	7.9	79	8.6	85	9.0
15~19세	35	12.6	24	10.4	22	9.3	22	10.2	25	12.2	28	11.9
남자	17	13.4	11	10.4	10	9.5	12	12.2	13	15.1	15	15.1
여자	18	11.9	13	10.5	11	9.2	10	8.6	12	10.3	13	9.6
20~24세	173	9.9	156	9.9	126	8.7	123	9.2	124	9.5	122	9.5
남자	77	12.1	69	11.9	64	11.7	64	11.4	56	11.4	50	10.4
여자	96	8.6	87	8.8	62	6.9	67	7.9	67	8.3	72	8.9

\* 자료: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주: (1)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하여 방과후 전담시설 중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학생 및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학교가 정규수업외의 시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아동·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업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교육·보육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기능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의 기능보완은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청소년의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한다. 사교육비 경감은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한다는 것이며, 교육복지 실현은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의 지역사회화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측면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여 사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고자 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방과후학교에서는 사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였다. 사교육을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은 여러 학원을 전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원 차량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초기의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여타 사교육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도 정규 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의 교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방과후 교사를 위한 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방과후학교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기능 확보, 저소득층 아동들의 특기·적성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보장 및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과후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 및 교사의 확보를 통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2) 소결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2개 하위 영역, 3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지표는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청소년 실업률’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 중 집에 보호자가 없거나 방과후 특별한 활동을 하기 원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전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고 볼 때, 이러한 이용율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질적인 문제 등이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제도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지므로,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호 및 교육적 기능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예산 증액 및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적·교육적·지역적 특성 및 그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 실업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구직을 원하는 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개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근로조건 및 근로상태가 매우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1) 교육에의 권리

#### (1) 지표의 의미

교육에의 권리는 제28조에 담겨 있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서 국제적으로 보장의 대상이 된 이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2조(1951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e)(v)(1965년), 사회권규약 제13조(1976년),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0조(1979년),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제30조(1990년),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2006년) 등 많은 조약, 선언 등으로 규정되고 중시되고 있다. 국내법에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권규약 제13조는 국제인권법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교육권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의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본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달성되어야 할 교육권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규약 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를 채택하고,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가용성이란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접근성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 접근성은 가장 취약한 집단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교육에 차별 없이 법률상·사실상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비차별의 접근성, 교육이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물리적 접근성, 누구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는 경제적 접근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수용성은 교과과정이나 교수법과 같은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응성은 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네 가지 필수 요소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용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논평 제13호는 사회권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의 성질상,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용한 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할 의무이자 즉각적인 의무이며, 제13조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 역시

즉각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항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도입 및 재정 지원,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에 대한 접근 보장, 등교거부·중도탈락 감소를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8호(2006)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에서 체벌과 아동의 사생활 침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규율을 금지하고 있다. 3항은 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장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보장되어야 할 그 외의 권리에 대해 알 수 없으며,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교육에의 권리는 그 자체가 인권임과 동시에 그 밖의 모든 권리실현의 기반이 될 불가분하며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다(喜田 외, 2009).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남·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학교 현황’, ‘학교급별 진학률’,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중·고등학생 학업중단률’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황’, ‘취학률’,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진로교육 경험률’, ‘진로교육 만족도’, ‘학업중단율’, ‘학교상담교사 배치율’을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학교 현황

학교 현황은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동·청소년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도에 발간한

표 IV-45 학교급별 규모(2011)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유아 교육	유치원		8,424	564,834	38,662	
	소계		8,424	564,834	38,662	
초 중등 교육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5,882(328)	3,132,477	180,623	
		공민학교	1	7	2	
	중학교 과정	중학교	3,153(33)	1,910,572	110,658	
		고등공민학교	4	186	18	
	고등학교 과정	일반고등학교	1,554	1,425,882	90,464	
		특성화고등학교	499	340,227	27,327	
		특수목적고등학교	120	63,727	5,801	
		자율고등학교	109	113,962	7,491	
		방송통신고등학교	40	15,072	-	
		산업체부설고등학교	[1]	[42]	[7]	
		산업체특별고등학교	[6]	[286]	[25]	
		고등기술학교	9	1,140	93	
	각종학교		24	8,635	590	
	특수학교		155	24,617	7,407	
	소계		11,550	7,036,504	430,474	
고등 교육	전문대학 과정	전문대학	147	776,738	12,891	
		원격 대학	사이버대학(년2제)	2	3,577	30
			원격대학(평생교육시설)	1	2,671	15
			기술대학	-	41	-
		사내대학	1	83	1	
		각종학교	1	44	7	
		기능대학	12	25,817	894	
		전공대학	3	9,690	190	
	대학 과정	대학	183(11)	2,065,451	58,104	
		산업대학	9	122,916	1,869	
		교육대학	10	20,241	820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학	1	268,561	148
			사이버대학	16	103,917	506
			원격대학(평생교육시설)	1	969	9
		기술대학	1	135	-	
사내대학		1	93	10		
각종학교		4	4,829	180		
대학원과정	대학원	1,167{41}	329,933	6,516		
소계		434	3,735,706	82,190		
계		20,408	11,337,044	551,326		

전체대비 비율(%)	유아교육	14.3	5.0	7.0
	초중등교육	56.6	62.1	78.1
	고등교육	2.1	33.0	14.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주: 1) ( ) [ ] 는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은 대학의 수만 포함함.

2) 대학원 학교수는 대학부설대학원과 대학원 대학의 합이며, { } 는 대학원 대학의 수만을 표시한 것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표 IV-45>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의 구분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초중등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8,424개의 유치원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564,834명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8,424개의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은 4,502곳, 사립유치원은 3,922곳으로 나타나, 총 유치원의 53.4%만이 국·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비 지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약 50%에 이르는 유치원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유아들이 모든 교육의 시초인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 및 유아교육의 의무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학교와 공민학교<sup>54)</sup>로 나뉜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는 각각 5,882개교, 3,153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의 98.7%(5,806개교)와 중학교의 79.5%(2,506개교)가 국·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sup>55)</sup>, 특수목적고등학교<sup>56)</sup>, 자율고등학교<sup>57)</sup>,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산업체특별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sup>58)</sup>로 나뉘며, 2011년

54)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사람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 기관

55)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56)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57)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58)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기준으로 총 2,331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국·공립고등학교는 1,335개교로 전체 고등학교의 58.5%<sup>59)</sup>를 차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국·공립학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 및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재단에서 다른 학교급보다 고등학교의 설립에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특성 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주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은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대학원과정으로 나뉜다. 고등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교는 총 434개교이다. 이 중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의 국·공립학교는 총 48개교로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 ② 취학률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sup>60)</sup> 대비 해당 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표 IV-4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유치원 43.2%, 초등학교 98.6%, 중학교 97.6%, 고등학교 9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취학연령인 만5세아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만5세아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에 다니는 유아들의 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통합하여 집계하였을 때 취학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취학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990년 이후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1980년에 4.1%였던 취학률이 2011년에 42.8%로 상승하여 약 10배 정도의 취학률 증가를 보였다.

59) 산출기준은 고등학교과정 중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총 학교수 2,282개교 중 국·공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임

60) 유치원(5세), 초등학교(6~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고등교육기관(18~21세)을 의미

표 IV-46 취학률

(단위: %)

구분	유치원 <sup>61)</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80	4.1	3.9	97.7	98.2	73.3	70.9	48.8	44.3
1985	18.9	18.5	-	-	82.0	81.7	64.2	61.7
1990	31.6	31.4	100.5 <sup>62)</sup>	101.0	91.6	92.0	79.4	77.2
1995	26.0	26.1	98.2	98.4	93.5	93.7	82.9	82.4
2000	26.2	26.2	97.2	97.8	95.0	95.8	89.4	89.4
2005	31.1	31.0	98.8	98.9	94.6	95.0	91.0	91.0
2006	33.9	33.8	98.8	98.9	96.2	96.6	90.3	90.6
2007	36.2	36.3	99.3	99.3	96.0	96.1	91.3	91.7
2008	37.5	37.5	99.0	99.2	93.2	93.1	90.0	90.5
2009	39.5	39.5	97.9	98.0	96.2	96.0	92.5	92.9
2010	40.6	40.7	98.6	98.6	97.6	97.6	92.4	92.7
2011	42.8	43.2	98.2	98.2	97.8	98.0	92.8	92.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베이스(www.kosis.kr).

\*\* 주: 1) 유치원의 경우, 1992년부터 취원 적령이 4~5세에서 3~5세로 확대됨에 따라, 1990년 이전 자료는 취원 적령이 4~5세임.

2) 유치원 재적 원아수에는 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됨.

3)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4) 2000년 이전의 인구는 통계는(2001.12)의 장래인구추계를 기준하였고, 2000년 이후는 통계청(2006.11)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를 기준하였음(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5) '-'는 해당자료 없음.

성별에 따른 취학률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남자 아동·청소년과 여자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여학생의 취학률이 평균 취학률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는 여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남학생보다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61)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소속된 원아수는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62) 취학률의 경우 재학생 중 조기 입학자나 과령아로 인하여 수치가 100%가 넘는 경우가 있음.

### ③ 진학률

진학률은 졸업생 수 대비 상급학교 진학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아동·청소년의 학업의 지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진학률은 교육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아동·청소년의 진학률 자료는 <표 IV-47>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99.9%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는 95.3%,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75.0%의 진학률을 보였다.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해서 진학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은 75.2%, 전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은 63.7%로 나타나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 취지가 대학진학보다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에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전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표 IV-47**      **진학률**

(단위: %)

구분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일반계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문계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80	95.8	94.1	84.5	80.8	27.2	22.9	39.2	35.4	11.4	8.0
1985	99.2	99.1	90.7	88.2	36.4	34.1	53.8	53.5	13.3	9.9
1990	99.8	99.8	95.7	95.0	33.2	32.4	47.2	49.8	8.3	6.3
1995	99.9	99.9	98.5	98.4	51.4	49.8	72.8	75.8	19.2	17.2
2000	99.9	99.9	99.6	99.6	68.0	65.4	83.9	84.6	42.0	35.7
2005	99.9	99.9	99.7	99.8	82.1	80.8	88.3	88.8	67.6	62.0
2006	99.9	99.9	99.8	99.8	82.1	81.1	87.5	88.1	68.6	63.3
2007	99.9	99.9	99.6	99.7	82.8	82.2	87.1	88.0	71.5	66.6
2008	99.9	99.9	99.7	99.7	83.8	83.5	87.9	88.6	72.9	69.5
2009	99.9	99.9	99.6	99.7	81.9	82.4	84.9	86.3	73.5	70.8
2010	99.9	99.9	99.7	99.7	79.0	80.5	81.5	83.6	71.1	70.6
2011	99.9	99.9	99.7	95.3	72.5	75.0	75.2	78.6	63.7	62.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DB

\*\* 주: 1) 2011년부터 진학자의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중전 : 2월 졸업 당시 대학합격자).

2) 재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연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연도별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의 진학률은 1990년대 이후 거의 100%에 가까운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끼고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자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평균 진학률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2명의 자녀만을 낳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구분 없이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가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계고등학교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자 전문계고등학생의 진학률이 전문계고등학생의 평균 진학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사회의 일부에서는 여성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학교의 외적 환경이나 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 공교육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자료<sup>63)</sup>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OECD 교육지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는 <표 IV-48>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PPP 기준으로 초등교육 6,658달러, 중등교육(중·고등학교) 9,399달러,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 9,513달러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중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는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7%p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63) 2007년 이후는 OECD 기준으로 산출방식이 바뀌게 되어, 교육기본통계에서 산출되는 공교육비 자료는 없음.

표 IV-4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2005 (2008년 발표)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06 (2009년 발표)	한국	4,935	21	7,261	31	8,564	37
	OECD 평균	6,437	20	8,006	25	12,336	40
2007 (2010년 발표)	한국	5,437	20	7,860	30	8,920	34
	OECD 평균	6,741	20	8,267	24	12,907	40
2008 (2011년 발표)	한국	5,420	20	7,931	30	9,081	34
	OECD 평균	7,153	21	8,972	26	13,717	41
2009 (2012년 발표)	한국	6,658	25	9,399	35	9,513	35
	OECD 평균	7,719	23	9,312	27	13,728	4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OECD 교육지표 결과발표」 재구성.

원자료: OECD(각 년도), OECD 교육지표.

\*\* 주: 1) 2005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9.01원이며, 1인당 GDP는 US\$ 21,342임.

2) 2006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60.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3,083임.

3)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4)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85.72원이며, 1인당 GDP는 US\$ 26,877임.

5) 2009년도 한국 PPP 환율은 \$1당 804.11원이며, 1인당 GDP는 US\$ 27,171임

6)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7)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상당부분 민간에 의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보고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이 중 정부부담 4.9%, 민간부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9. 11). 이는 OECD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6.4%)에서

정부부담의 비율(5.4%)이 민간부담(0.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 민간부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공교육비 투자 비율을 늘려,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통계청(2011)에서 발간한 「사교육비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도의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환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청소년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원이었다. 이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26.2만원), 일반계고등학생 (25.9만원), 초등학생(24.1만원) 순으로 1인당 사교육비가 높았다.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표 IV-4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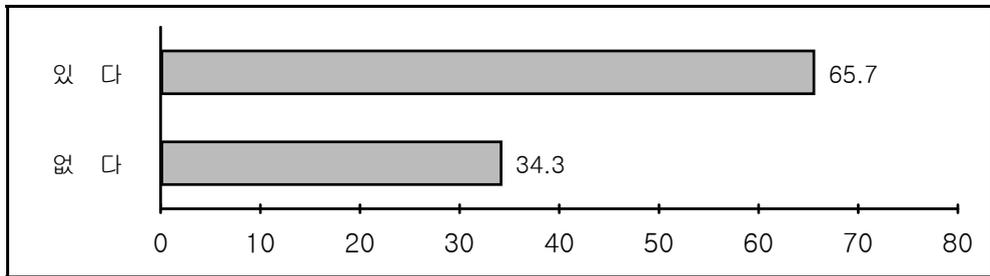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용	비용	전년비(차)	비용	전년비(차)	비용	전년비(차)	비용	전년비(차)
계	22.2	23.3	5.0	24.2	3.9	24.0	-0.8	24.0	0.0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4.5	0.0	24.1	-1.6
중학교	23.4	24.1	3.0	26.0	7.9	25.5	-1.9	26.2	2.7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21.8	0.5	21.8	0.0
일반고	24.0	24.9	3.8	26.9	8.0	26.5	-1.5	25.9	-2.3

\* 자료: 통계청(2011).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⑥ 진로교육 경험률

진로교육 경험률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이 어린시기부터 진로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자료는 [그림 IV-2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중 65.7%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3%는 진로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IV-26】 진로교육 경험 유무(%)

표 IV-50 진로교육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교급	초	54.1	45.9	100(2812)	244.236***
	중	71.4	28.6	100(3106)	
	일반계고	70.0	30.0	100(2431)	
	전문계고	71.5	28.5	100(731)	
	전체	65.7	34.3	100(9080)	
지역 규모	대도시	68.8	31.2	100(3949)	30.664***
	중소도시	63.2	36.8	100(3842)	
	읍/면	63.6	36.4	100(1287)	
	전체	65.7	34.3	100(9078)	

\*  $p < 0.05$ , \*\*  $p < 0.01$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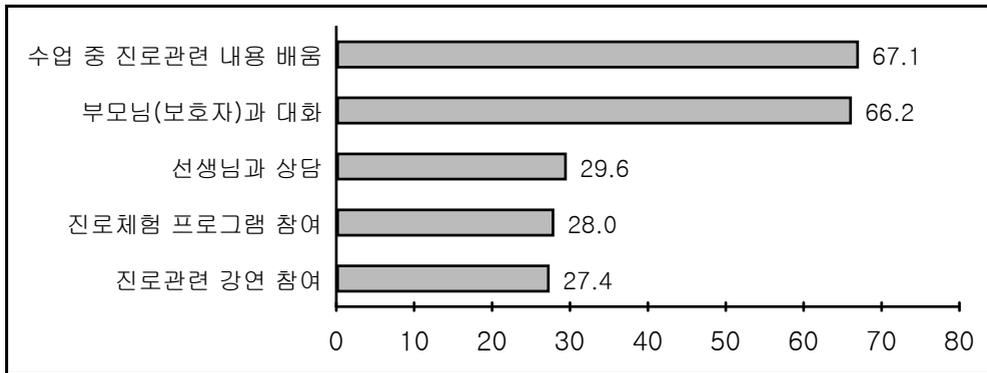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률이 교급별,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표 IV-50>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등학생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44.236$ ,  $p<0.001$ ,  $\chi^2=30.664$ ,  $p<0.001$ ).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적은 것은 이들이 아직 미래의 직업 등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린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알고 이를 모의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규모에 따른 진로교육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당국이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외에도 강연, 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진로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육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학교수업시간에 진로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나, 부모님(보호자)과 대화, 선생님과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진로관련 강연 참여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와 선호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써, 앞으로의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그림 IV-27>).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경험했던 진로관련 활동 중 높은 경험률을 보인 것은 ‘수업 중 진로관련 내용 배움’(67.1%)과 ‘부모님(보호자)과의 대화’(6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생님과 상담’(29.6%),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28.0%), ‘진로관련 강연 참여’(27.4%)의 아동·청소년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진로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자료는 <표 IV-51>에 제시되어 있다. 수업 중 진로관련 내용을 배운 것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37.024$ ,  $p<0.001$ ,  $\chi^2=44.757$ ,  $p<0.001$ ). 진로관련 내용을 배운 것에



【그림 IV-27】 진로관련 경험(%)

대한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81.3%), 중학생(74.5%), 일반계고등학생(65.6%), 초등학생(56.4%)의 순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전문계고등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 상 일반적인 진로교육 이외에 일반 수업시간에서도 자주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 중 진로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험률의 차이를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수업 중 진로관련 내용을 배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계층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수업 중 진로관련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진로에 대하여 부모님(보호자)과의 대화한 경험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3.253, p<0.001, \chi^2=447.158, p<0.001, \chi^2=54.359, p<0.001, \chi^2=130.225, p<0.001$ ). 그 결과,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이나 중인 아동·청소년일수록 부모님(보호자)과 진로에 대하여 대화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님(보호자)과의 대화 경험과 관련해서는,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67.3%,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59.4%,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45.4%가 부모님(보호자)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여,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대화를 훨씬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중 20.4%는 부모님(보호자)과 최근 1년간 진로관련 대화를 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상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전담해줄 진로교육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51 진로관련 경험

(단위 : %, 명)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 (N)	$\chi^2$	
수업 중 진로 관련 내용 배움	교 급	초	17.7	25.9	48.7	7.7	100(2785)	437.024***
		중	5.1	20.4	64.0	10.5	100(3094)	
		일반계고	8.9	25.5	54.4	11.2	100(2405)	
		전문계고	3.4	15.2	65.4	15.9	100(728)	
		전체	9.9	23.0	56.8	10.3	100(9012)	
	경 제 수 준	상	14.8	21.0	53.2	10.9	100(1264)	44.757***
		중	9.1	23.4	57.4	10.2	100(7205)	
		하	7.9	22.6	58.5	11.0	100(491)	
		전체	9.8	23.0	56.9	10.3	100(8960)	
	부모님 (보호자) 과 대화	성 별	남	11.9	25.2	44.8	18.1	100(4725)
여			8.4	21.9	47.0	22.7	100(4286)	
전체			10.2	23.6	45.9	20.3	100(9011)	
교 급		초	19.3	24.5	37.3	18.9	100(2786)	447.158***
		중	7.3	25.9	46.5	20.3	100(3096)	
		일반계고	4.7	19.4	53.4	22.5	100(2402)	
	전문계고	6.6	24.5	50.8	18.1	100(728)		
	전체	10.2	23.6	45.8	20.3	100(9012)		
가 족 유 형	양부모	9.9	22.8	46.7	20.6	100(7939)	54.359***	
	한부모	12.2	28.4	41.6	17.8	100(771)		
	조손가정	20.4	34.3	25.0	20.4	100(108)		
	기타	14.0	28.9	45.6	11.4	100(114)		
	전체	10.2	23.5	46.0	20.2	100(8932)		
경 제 수 준	상	14.3	19.3	37.9	28.5	100(1266)	130.225***	
	중	9.3	24.0	47.6	19.1	100(7207)		
	하	13.8	29.9	40.7	15.5	100(491)		
	전체	10.2	23.6	45.9	20.2	100(8964)		
선생님과 상담	교 급	초	53.0	30.5	14.8	1.8	100(2778)	1010.215***
		중	30.5	40.6	26.4	2.5	100(3089)	
		일반계고	16.3	42.4	37.7	3.5	100(2403)	
		전문계고	15.9	39.7	38.6	5.8	100(728)	
		전체	32.5	37.9	26.8	2.8	100(8998)	
	경 제 수 준	상	38.1	33.4	24.7	3.8	100(1264)	50.259***
		중	31.8	39.0	26.7	2.6	100(7194)	
		하	27.6	34.1	33.9	4.5	100(490)	
		전체	32.4	37.9	26.8	2.8	100(8948)	

진로 체험 프로 그램 참여	교 급	초	48.1	25.6	20.8	5.6	100(2782)	281.340***	
		중	34.7	37.1	25.6	2.7	100(3093)		
		일반계고	34.3	39.0	24.3	2.4	100(2400)		
		전문계고	28.2	34.5	33.0	4.4	100(728)		
		전체	38.2	33.8	24.4	3.6	100(9003)		
지 역 규 모		대도시	35.8	34.0	26.3	4.0	100(3926)	30.275***	
		중소도시	40.6	34.0	22.3	3.1	100(3797)		
		읍/면	38.4	32.8	24.7	4.1	100(1279)		
		전체	38.2	33.8	24.4	3.6	100(9002)		
진로 관련 강연 참여	교 급	초	59.3	25.1	13.2	2.4	100(2781)	878.393***	
		중	39.1	36.3	22.0	2.7	100(3090)		
		일반계고	26.8	35.4	34.1	3.7	100(2402)		
		전문계고	20.1	30.5	43.7	5.6	100(730)		
		전체	40.5	32.1	24.3	3.1	100(9003)		
	경 제 수 준		상	47.2	28.1	21.4	3.3	100(1265)	43.993***
			중	39.8	32.9	24.3	3.0	100(7198)	
			하	33.0	32.4	31.1	3.5	100(488)	
			전체	40.5	32.2	24.2	3.1	100(8951)	

\*  $p < 0.05$ , \*\*  $p < 0.01$ , \*\*\*  $p < 0.001$

선생님과 최근 1년간 진로에 대해 상담해 본 경험은 교급,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10.215$ ,  $p < 0.001$ ,  $\chi^2=50.259$ ,  $p < 0.001$ ). 즉, 교급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일수록 선생님과 진로에 대해 상담한 경험이 높았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선생님과 진로상담 경험과 관련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의 아동·청소년이 중이나 상인 집단의 아동·청소년들보다 교사와 진로상담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님(보호자)과의 상담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은 진로상담 상대로 부모보다 교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동안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81.340$ ,  $p < 0.001$ ,  $\chi^2=30.275$ ,  $p < 0.001$ ). 즉, 전문계고등학생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에서 전문계고등학생이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들보다 경험률이 높은 이유는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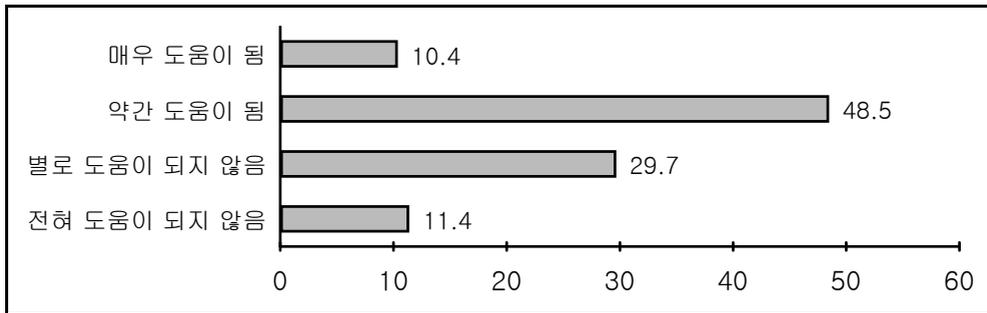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진로관련 강연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교급,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78.393$ ,  $p<0.001$ ,  $\chi^2=43.993$ ,  $p<0.001$ ). 고등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관련 강연에의 참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로, 학교차원에서 이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연자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⑦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자료는 [그림 IV-2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58.9%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10명 중 약 6명 정도는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1.4%의 아동·청소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IV-52>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 정도는 아동·청소년의 교급,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560.574$ ,  $p<0.001$ ,  $\chi^2=32.223$ ,  $p<0.001$ ,  $\chi^2=141.953$ ,  $p<0.001$ ). 교급별 진로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78.6%, 중학생의 52.2%, 일반계고등학교의 49.1%, 전문계고등학교의 62.2%가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교육 경험률이 다른 교급에 비해 월등히 낮았던 것에 비해 실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만족도가 중학생이나 일반계고등학교의 만족도보다 높은 이유는 전문계고등학교의 목적이 전문적인 산업인력양성인만큼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8】 진로교육 만족도(%)

표 IV-52 진로교육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N)	$\chi^2$
교급	초	5.8	15.6	55.8	22.8	100(1516)
	중	11.7	36.1	45.4	6.8	
	일반계고	15.9	35.0	44.8	4.3	
	전문계고	11.5	26.4	52.4	9.8	
	전체	11.4	29.7	48.5	10.4	
지역규모	대도시	11.4	29.1	49.2	10.3	100(2712)
	중소도시	12.6	31.2	46.7	9.4	
	읍/면	7.5	27.3	51.5	13.7	
	전체	11.4	29.7	48.5	10.4	
경제수준	상	11.1	20.3	48.4	20.3	100(819)
	중	11.0	31.3	48.7	9.0	
	하	18.7	31.6	44.4	5.3	
	전체	11.4	29.8	48.4	10.3	

\*  $p < 0.05$ , \*\*  $p < 0.01$ , \*\*\*  $p < 0.001$

지역규모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및 경제적 특성상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 ⑧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중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업중단자<sup>64)</sup>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교육 및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요구 및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율에 대한 자료는 <표 IV-53>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0.6%, 중학생의 1.0%, 고등학생의 2.0%가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주로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표 IV-53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등 학교	학업중단자	16,793	18,406	23,898	20,450	17,644	11,634	18,836	
	학생수	4,116,195	4,022,801	3,925,043	3,829,998	3,672,207	3,474,395	3,299,094	
	학업중단율	0.4	0.5	0.6	0.5	0.5	0.3	0.6	
중학교	학업중단자	14,165	15,669	18,968	20,101	19,675	15,736	18,866	
	학생수	1,933,543	2,010,704	2,075,311	2,063,159	2,038,611	2,006,972	1,974,798	
	학업중단율	0.7	0.8	0.9	1.0	1.0	0.8	1.0	
고 급 이 계 고 교	합 계	학업중단자	24,037	23,076	27,930	32,943	34,450	34,540	38,887
		학생수	1,746,560	1,762,896	1,775,857	1,841,374	1,906,978	1,965,792	1,962,356
		학업중단율	1.4	1.3	1.6	1.8	1.8	1.8	2.0
	일 반 계	학업중단자	9,427	10,166	12,616	15,477	16,145	17,419	21,368
		학생수	1,232,010	1,259,792	1,281,508	1,347,363	1,419,486	1,484,966	1,492,227
		학업중단율	0.8	0.8	1.0	1.1	1.1	1.2	1.4
	전 문 계	학업중단자	14,640	12,910	15,341	17,466	18,305	17,121	17,519
		학생수	514,550	503,104	494,349	494,011	487,492	480,826	466,129
		학업중단율	2.8	2.6	3.1	3.5	3.8	3.6	3.8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 분야별 교육통계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주: 1)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년도 재적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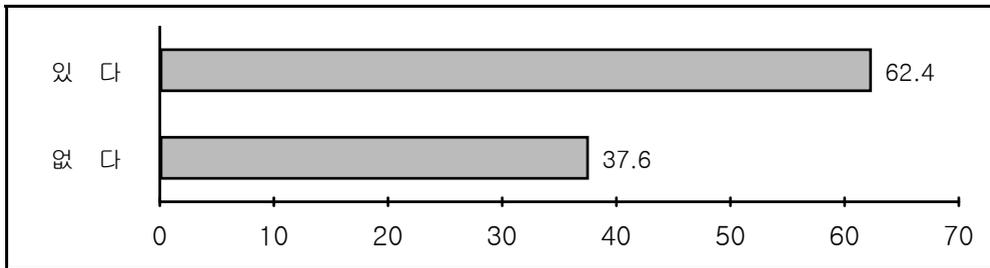
64)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적·중퇴 및 휴학한 자를 말함.

은 3.8%로 다른 교급의 학업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전문계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을 상승과 같이 생각해보다면, 대학진학을 원하는 전문계고등학생들이 전문적인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히 전문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많다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와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와 관련된 자료는 [그림 IV-29]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중 62.4%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 정도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9】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성별, 교급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54>와 같다. 그 결과, 여학생일수록, 교급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chi^2=80.551, p<0.001, \chi^2=251.407, p<0.001, \chi^2=25.220, p<0.001, \chi^2=77.134, p<0.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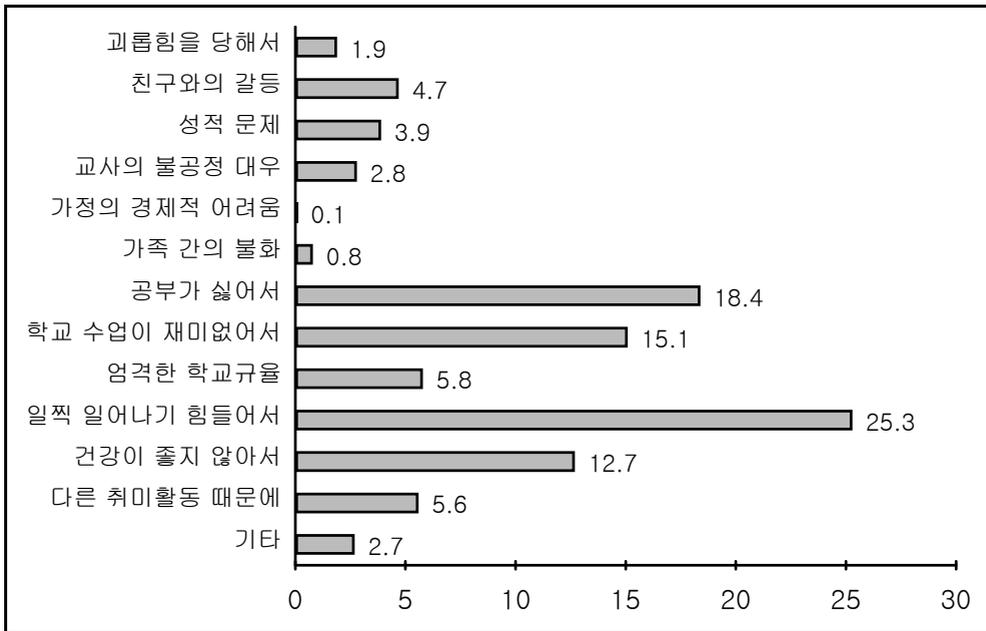
표 IV-54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성별	남	58.1	41.9	100(4766)	80.551***
	여	67.2	32.8	100(4316)	
	전체	62.4	37.6	100(200)	
교급	초	51.5	48.5	100(2812)	251.407***
	중	63.2	36.8	100(3107)	
	일반계고	71.0	29.0	100(2432)	
	전문계고	72.2	27.8	100(731)	
	전체	62.4	37.6	100(400)	
가족유형	양부모	61.9	38.1	100(8001)	25.220***
	한부모	70.1	29.9	100(775)	
	조손가정	55.6	44.4	100(108)	
	기타	54.9	45.1	100(113)	
	전체	62.4	37.6	100(8997)	
경제수준	상	54.4	45.6	100(1273)	77.134***
	중	62.9	37.1	100(7265)	
	하	76.5	23.5	100(494)	
	전체	62.4	37.6	1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0]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가 2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공부가 싫어서(18.4%)’,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15.1%)’, ‘건강이 좋지 않아서(12.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의 재량에 따라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등교시간이 이른데다, 방과후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가기 싫은 이유로 2순위와 3순위는 ‘공부가 싫어서’와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로



【그림 IV-30】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나타났는데, 두 가지 항목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55>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지역규모,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 없이, 아동·청소년들은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공부가 싫어서’,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의 순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응답하였다. 단,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층의 아동·청소년이 다른 응답 양상을 띠었다. 즉, 이들은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공부가 싫어서’,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의 순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응답하여, 다른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건강상의 이유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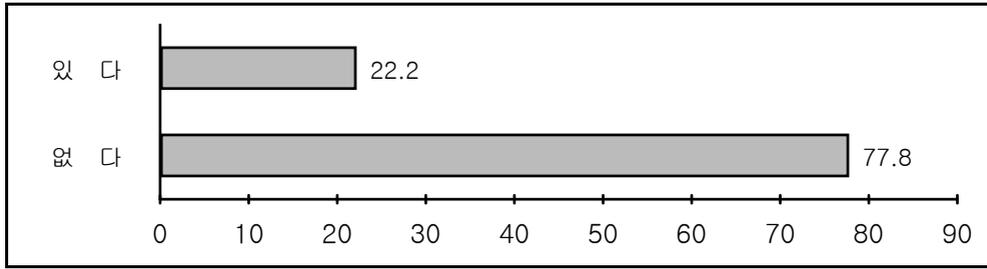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31]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업중단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22.2%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할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5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다중응답)<sup>65)</sup>

(단위: %)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와의 갈등	성적문제	교사의 불공정 대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불화	공부가 싫어서	학교 수업이 재미 없어서	엄격한 학교규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건강	다른 취미활동 때문에	기타
성별	남	2.52	2.96	4.41	3.05	0.16	0.83	19.34	16.37	6.40	21.72	12.80	6.35	3.03
	여	1.38	6.39	3.45	2.52	0.14	0.72	17.57	13.94	5.28	28.78	12.51	4.84	2.42
	전체	1.93	4.71	3.92	2.78	0.15	0.78	18.43	15.13	5.83	25.34	12.65	5.58	2.72
학년	초	4.57	6.27	4.10	2.93	0.14	0.59	18.53	10.30	2.93	22.40	16.31	6.98	3.87
	중	1.89	5.41	4.03	3.13	0.12	0.86	19.13	16.81	5.98	24.61	10.81	4.59	2.58
	일반고	0.30	3.20	4.34	1.90	0.14	0.77	18.20	16.53	6.80	28.04	12.27	5.51	1.94
	전문고	0.38	2.92	1.70	3.95	0.22	0.99	16.22	17.35	9.80	27.02	11.02	5.68	2.69
	전체	1.93	4.71	3.93	2.78	0.14	0.78	18.42	15.14	5.82	25.34	12.66	5.58	2.72
	대도시	2.12	4.43	3.81	2.83	0.11	0.75	17.68	15.93	6.66	24.67	12.97	5.42	2.56
	중소 읍/면	1.53	5.21	3.90	3.08	0.12	1.58	20.07	14.18	6.10	24.32	12.61	5.78	2.41
지역 규모	전체	1.93	4.71	3.92	2.78	0.14	0.76	18.44	15.13	5.83	25.33	12.66	5.58	2.73
	양부모	1.90	4.54	3.80	2.76	0.11	0.67	18.40	14.97	5.83	25.90	12.87	5.44	2.74
	한부모	1.52	5.93	4.33	2.90	0.46	1.56	18.88	17.26	6.27	20.57	10.89	6.58	2.77
	조손	4.22	7.32	4.78	1.69	0.00	1.12	17.18	13.23	3.94	23.94	12.11	9.01	1.40
	기타	3.92	5.88	2.52	5.32	0.56	1.96	20.72	12.32	6.44	24.94	9.24	4.48	1.68
가족 유형	전체	1.91	4.72	3.85	2.79	0.15	0.77	18.46	15.14	5.85	25.35	12.63	5.58	2.72
	상	2.80	5.40	3.47	3.62	0.04	0.34	16.97	12.05	5.53	23.20	16.50	6.84	3.17
	중	1.85	4.52	4.00	2.64	0.09	0.78	18.74	15.33	5.62	25.93	12.35	5.40	2.69
	하	1.29	5.81	3.71	2.90	1.07	1.47	17.86	18.35	8.72	21.75	9.48	5.19	2.32
경제 수준	전체	1.92	4.72	3.91	2.78	0.15	0.77	18.47	15.14	5.82	25.22	12.66	5.56	2.73

65)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결과 산출 기준: 아동·청소년들이 응답한 1, 2, 3순위에 각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를 산출한 후, 전체 사례수 대비 각 항목 사례수를 산출한 비율임.



【그림 IV-31】 학업중도포기 생각 여부(%)

표 IV-56 학업중도포기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교급	중	15.8	84.2	100(3104)	146.451***
	일반계고	28.3	71.7	100(2432)	
	전문계고	29.0	71.0	100(732)	
	전체	22.2	77.8	100(6268)	
지역규모	대도시	20.9	79.1	100(2769)	11.047**
	중소도시	22.2	77.8	100(2691)	
	읍/면	26.4	73.6	100(807)	
	전체	22.2	77.8	100(6267)	
가족유형	양부모	21.4	78.6	100(5478)	14.404**
	한부모	27.6	72.4	100(615)	
	조손가정	29.2	70.8	100(65)	
	기타	22.9	77.1	100(70)	
경제수준	상	20.1	79.9	100(536)	68.567***
	중	21.1	78.9	100(5244)	
	하	37.7	62.3	100(453)	
	전체	22.2	77.8	100(6233)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표 IV-56>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학업중도포기 생각 여부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chi^2=146.451$ ,  $p < 0.001$ ,  $\chi^2=11.047$ ,

$p<0.01$ ,  $\chi^2=14.404$ ,  $p<0.01$ ,  $\chi^2=68.567$ ,  $p<0.001$ ). 즉, 교급이 높을수록,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원인에 교급이 올라갈수록 느끼는 학업의 어려움과 학교에 대한 불만족, 가정 혹은 부모와의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⑨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학교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등학교 배치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학교 당국의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청소년기본법에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의하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초·중·고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는 <표 IV-57>에 제시되어 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11,327곳의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는 5,085곳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44.9%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5곳만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내의 학교상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의 68.4%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울산(66.8%), 부산(60.0%)의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다. 반면, 충남지역은 25.3%의 학교만이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및 5대 광역시(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만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이외 지역의 학교상담 실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57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학교수	배치학교수	배치율
서울	1,290	883	68.4%
경기	2,203	1,001	45.4%
인천	490	248	50.6%
대전	292	150	51.4%
충북	470	181	38.5%
충남	707	179	25.3%
대구	431	242	56.1%
경북	955	299	31.3%
부산	612	367	60.0%
울산	232	155	66.8%
경남	946	394	41.6%
광주	301	163	54.2%
전북	753	240	31.9%
전남	830	267	32.2%
강원	632	241	38.1%
제주	183	75	41.0%
전체	11,327	5,085	44.9%

\* 자료: 우원식(2012). 2012년 국정감사보도자료,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전국 초중고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현황

### (3) 관련 정책 및 대안

교육에의 권리에 대한 정책 및 대안에서는 학업중단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및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연도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교육내용의 선택과 결정권, 수업과정의 참여권, 교육기회 접근의 선택권, 학습과정에서의 조력 받을 권리 등의 확장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병환, 2007). 따라서 정규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일지라도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에 접근하여 학습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정의내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및 그 밖의 설립,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안학교가 명실 공히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으로써 인가받고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러한 대안학교 이외에 미인가 대안학교도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2006년 이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의 종류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sup>66)</sup>,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sup>67)</sup>,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위탁형 대안학교<sup>68)</sup>, 현행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sup>69)</sup>가 있다. 이 중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임금 수준이 열악하고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및 정부는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각 부처별로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66) 정규교육 안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지향하고자 1998년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성화학교 미자율학교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을 말함. 일반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67)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68)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교육'이란 목적 하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장이 위탁하는 학생을 맡아 교육하는 곳

69) 제도권 밖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수용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

상담, 교육,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고위험사례 조기 발견 및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사업과 빈곤지역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지원하는 해밀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사업과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아웃리치사업 및 거주 보호를 위한 쉼터 지원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설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인 ‘성장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소년원을 대안교육센터로 전환하여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이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10개 기관은 학교 출석 일수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학업중단 사유를 세분화하여 학업중단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정 경제의 빈곤과 일탈행동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발적인 중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어학연수나 유학, 학교부적응, 가사문제, 질병, 품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학연수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업중단자는 문제아 혹은 학교부적응자’라는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일탈행동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제도권의 학교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 및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법 및 특성화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와 관련이 있다. 즉, 대부분의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부진을 나타내며, 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함으로써 점차 학교를 떠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입시와 관련된 과목을 싫어하고, 이들끼리의 모임과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학교를 떠나게 된다. 따라서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법 개발 및 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을 찾아 이에 대한 특성화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특성화 교과는 미용이나 제빵 등의 기술교육이

대부분인데, 이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드라마, 연기, 노래, 춤 등의 방송연예영역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위탁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전에 학업중단의 전조증상을 보이거나 위험군으로 분리되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의 전조 증상은 대부분 등교 거부로 나타나는데, 이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석이 장기화되기 전에 전문 교사를 투입하여 학생의 고층에 관심을 보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방문이나 학생 개인의 면담 등이 필요한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문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 중단을 고민하는 잠재적 중단자들의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했거나 직업세계에서 성공을 한 경우, 학업중단의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학교의 특강 강사로 활용하거나 멘토 상담자, 진로 상담자 등 실질적인 조언자로 활용하여 선배들의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을 세밀히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피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더라’ 식의 이야기보다는 학교 밖의 세상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패하는 사례와 함께 성공하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으로 ‘학교 밖의 자유를 찾아서’ 학교를 떠난다는 우발적인 생각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획이 없이 중단을 결정하면, 사후에도 막연히 학교를 동경하여 복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학 후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재중단을 하게 된다.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중고생의 22.2%가 학업중도포기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모두 중단을 결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정과 학교의 지지와 지원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을 위한 학교중단 전조증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잠재적인 학업중단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정보는 물론 가정환경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관리와 함께 부모관리도 병행하여야 한다. 학생과 부모, 교사와 학교가 함께 협조하여 체계적인 관찰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등의 시스템을 보안 강화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초등과정에서부터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지원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여 교외의 지역내 지원단체와 연결하고,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다. 또한 현재 위탁교육은 중고교 과정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초등과정에도 확대하여 아동의 다양한 자질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중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연간 출석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면 퇴학처리를 하게 되는데, 퇴학 전에 학부모를 불러 자퇴나 전학을 권하기도 한다. 단기 결석일 경우에는 교사의 훈계나 질책을 심하게 듣기도 하지만, 일주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이 포기하고 방치하다가 장기 결석으로 이어지면 행정적으로 학업중단처리를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숙려제도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학업중단 최종 결정 전에 학생들에게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전문상담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숙려제도는 현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숙려기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세밀히 개별화하여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업중단에 대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했는지, 또 사후 계획이 있는지 등 학업중단 후의 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유흥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충동성을 조절하기 어려운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유흥문화에 흡수되어 일탈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면 점차 가정에서도 반감지 않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부모의 부정적인 꾸중이 가출로 이어지게 된다. 가출을 하면 돈이 필요하므로 범죄에 접근하게 되며, 여학생은 성산업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로를 겪는다. 따라서 학업중단 후 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무소속으로 떠도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대안학교 및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할 때, 학교 측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안학교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안학교의 입학 시기가 학교마다 다르고 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범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안학교 입학을 정기 및 수시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학업중단자들에게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사후, 학생들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원을 모두 갈급해 하는데, 정보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의 대부분인 73%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상담 전공자들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퇴자들에게는 정보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 따라서 상담자격자 외에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상계열의 전공자와 특성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자가 모두 위기 청소년이 아니므로 상담 접근만으로는 실효성을 온전히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해밀학교의 경우는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학생이 개인적인 접촉을 주로 시도하여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규학교기관의 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 대 기관의 연계와 의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안학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실상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법령과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경력 5년 미만의 교원 자격이 없는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교사의 임금 처우지원이 이루어져 교사신분의 안정과 더불어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지속되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 2) 교육의 목표

### (1) 지표의 의미

아동권리협약의 제29조에는 교육의 목표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떤 교육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교육의 목표에 대한 규정 또한 교육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사회권규약 제13조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협약 제29조에서는 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 존중의 계발,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지식교육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시위주이며 경쟁적이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아니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징계절차’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학습부진아 출현율’, ‘학교수업 이해도’, ‘학교수업 만족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사교육 경험률’,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인권교육 실시율’,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써,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아동·청소년의 교육의 질은 좋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각 아동·청소년의 발달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표 IV-5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유치원은 14.6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7.3명, 고등학교는 14.8명, 전문대학 39.1명, 대학교 26.7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유형에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교사 1명이 15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적용하여 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일일이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높은 수치이다.

**표 IV-58**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치원	22.4	20.7	19.5	17.5	17	16.2	15.5	15.2	14.8	14.6
초등학교	35.6	28.2	28.7	25.1	24	22.9	21.3	19.8	18.7	17.3
중학교	25.4	24.8	20.1	19.4	19.4	19.1	18.8	18.4	18.2	17.3
고등학교	24.6	21.8	19.9	15.1	15.1	15.3	15.5	15.7	15.5	14.8
전문대학	39	49	51.2	44.1	44.5	44.5	41.6	39.3	39.4	39.1
대학교	30.7	26.5	27.6	25.7	24.9	25	24.5	24.9	24.9	26.7

\* 자료: e-나라지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재적학생수/재직교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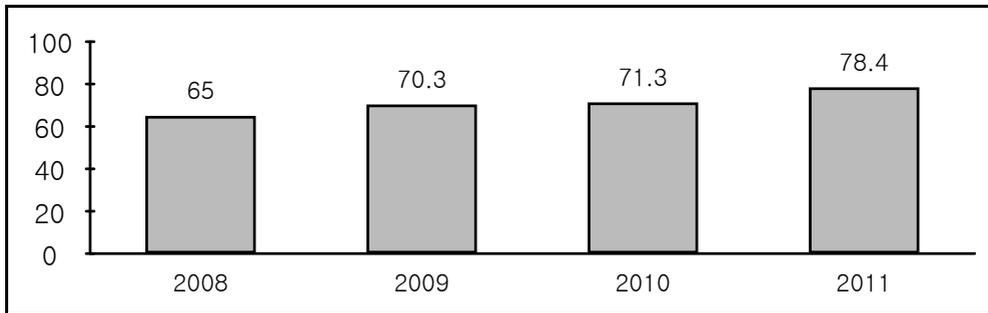
2)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경우 기간강사는 교원수에서 제외됨.

3) 고등교육기관은 재학생과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

## ②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아동·청소년이 학교교육에서 받고 있는 교육내용을 얼마나 획득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학교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정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수준 평가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평가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1년도 평가에서 초6, 중3, 고2학년 아동·청소년 중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78.4%인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7~8명이 보통수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통학력 이상인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아동·청소년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2】 보통학력 이상 비율(%)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학년과 교과별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59>에 제시되어 있다. 학년별로 학업성취도 수준을 분석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70% 후반~80% 초반까지의 비율을 보여 중3이나 고2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2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08년도에 57.5%에서 2011년도에 83.2%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나 과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다른 과목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사교육에서도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2학생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는 사회와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의 고2의 전반적인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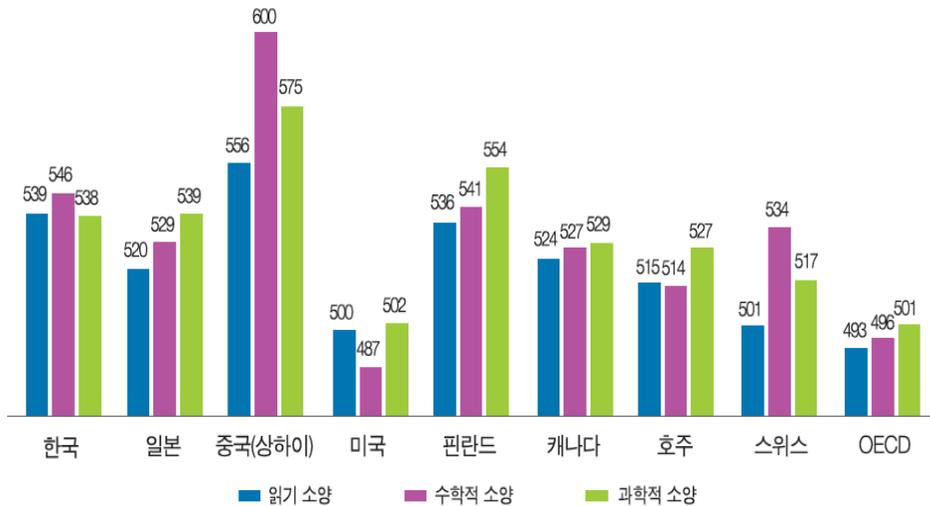
**표 IV-59**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단위: %)

		초6			중3			고2(일반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2008	국어	81.9	15.6	2.5	60.3	30.7	9.0	70.8	23.6	5.5
	사회	69.8	27.7	2.5	57.5	30.9	11.6	42.1	46.1	11.8
	수학	82.5	15.8	1.7	51.0	36.0	12.9	56.5	34.6	8.9
	과학	84.0	13.8	2.2	55.7	32.6	11.7	55.7	31.8	12.5
	영어	80.6	16.4	3.0	62.8	30.7	6.6	62.6	31.2	6.1
2009	국어	80.1	17.6	2.3	68.9	26.5	4.6	86.2	11.5	2.3
	사회	70.7	28.0	1.3	63.4	29.0	7.6	41.0	50.1	8.9
	수학	87.5	11.2	1.3	56.2	32.9	10.9	64.0	29.9	6.1
	과학	89.6	9.2	1.2	58.9	33.4	7.7	57.7	33.6	8.7
	영어	84.4	13.8	1.8	71.2	23.8	5.0	65.8	30.5	3.7
2010	국어	78.8	20.0	1.2	73.1	23.7	3.2	75.5	20.5	4.0
	사회	73.8	24.7	1.5	63.4	30.1	6.5	-	-	-
	수학	76.4	22.4	1.2	59.3	34.6	6.1	73.5	22.2	4.3
	과학	84.4	14.1	1.5	56.9	35.0	8.1	-	-	-
	영어	83.1	14.8	2.1	67.8	28.3	3.9	64.3	32.0	3.7
2011	국어	82.9	16.4	0.7	81.4	17.2	1.4	85.2	12.8	2.0
	사회	-	-	-	63.8	29.6	6.6	-	-	-
	수학	80.0	18.9	1.1	64.5	31.5	4.0	80.9	14.7	4.4
	과학	-	-	-	61.3	33.6	5.1	-	-	-
	영어	88.4	10.9	0.7	70.7	28.0	1.3	83.4	13.0	3.6

\* 자료: e-나라지표,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아동·청소년의 학습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평가 프로그램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만15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의 소양 수준을 파악하고 소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분석하여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을 주기로 학생들의 학습성취를 측정하여 비교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평가는 2009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33]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만15세 학생의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 점수는 각기 539점, 546점, 538점으로, OECD 국가 중 읽기 소양 1~2위, 수학적 소양 1~2위, 과학적 소양 2~4위로 상당히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33】 PISA 결과 학습 성취도 국제 비교

\* 출처: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원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 주: (1) 단위는 평균점수임.

(2) PISA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고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 점수임.

### ③ 학습부진아 출현율

학습부진아 출현율은 해당 학년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학습성취를 이루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습부진아는 성적저하 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학습 결손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학습에 대한 흥미의 상실, 주의 산만, 또래의 괴롭힘을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부진아 출현을 파악은 이들의 학습 결손 예방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부진아 출현율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의 기초학력 미달<sup>70)</sup>인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IV-6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도의 기초학력 미달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중 학습부진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학습부진아 출현율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2(3.3%), 초6(0.8%)의 순으로 학습부진아 출현율이 높았다.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학습부진아 출현율이 높은 이유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 내용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이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누적적인 학습 결손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습부진아 출현율이 높은 이유는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등학생으로, 중학교 때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이 아닌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IV-60** 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전체	7.2%	4.8%	3.7%	2.6%
초6	2.3%	1.6%	1.5%	0.8%
중3	10.2%	7.2%	5.6%	3.7%
고2	8.9%	5.9%	4.0%	3.3%

\* 자료: e-나라지표,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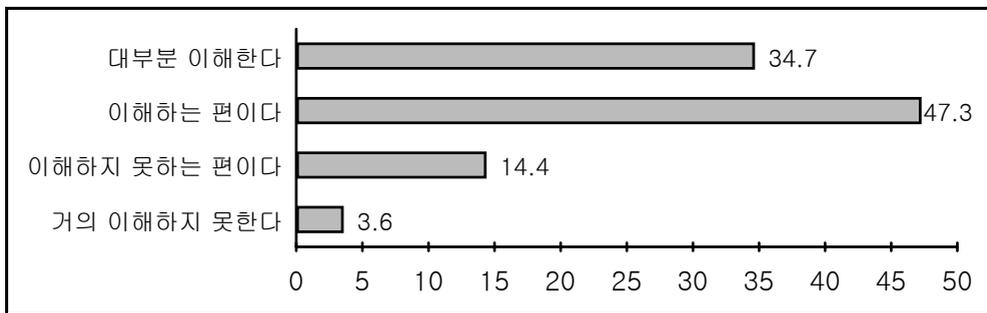
#### ④ 학교수업 이해도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70) 목표성취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상위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 이해도에 관한 자료는 [그림 IV-34]에 제시되어 있다. 82.0%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4.7%는 대부분 이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의 수업 내용을 잘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8.0%로 나타나, 10명 중 1~2명은 학교의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4】 학교수업 이해도(%)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 이해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자료는 <표 IV-6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29.129, p<0.001, \chi^2=397.711, p<0.001$ ).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96.2%가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교급보다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여 이것이 초등학교의 수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선행학습의 차원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고, 선행학습을 통해 학교의 수업 내용을 미리 들은 초등학생들은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아직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위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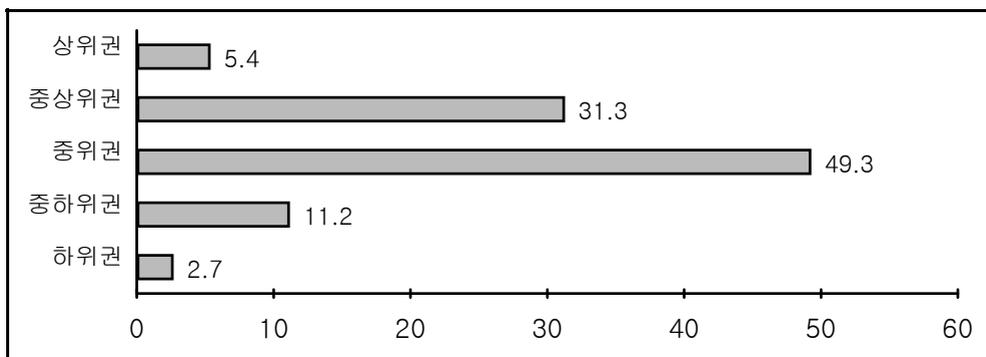
표 IV-61 학교수업 이해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해하는 편이다	대부분 이해한다	전체 (N)	$\chi^2$	
교급	초	1.3	5.4	41.8	54.4	100(2811)	729.129***
	중	4.4	18.0	48.3	29.3	100(3111)	
	일반계고	3.3	17.9	52.0	26.8	100(2435)	
	전문계고	9.7	21.6	49.0	19.8	100(733)	
	전체	3.6	14.4	47.3	34.7	100(9090)	
경제수준	상	2.4	5.4	39.2	53.1	100(1272)	397.711***
	중	3.3	15.3	48.9	32.5	100(7269)	
	하	11.7	24.2	44.8	19.2	100(495)	
	전체	3.6	14.4	47.3	34.7	100(9036)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학교수업 이해도와 관련하여 학교수업이 어느 수준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동·청소년에게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35]와 같다. 아동·청소년들의 49.3%는 학교에서의 수업이 중위권 아동·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도 36.9%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수업 수준이 평균적인 아동·청소년들의 수준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수업내용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IV-35】 학교수업 진행 수준(%)

학교수업 진행 수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결과는 <표 IV-6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학교수업 진행 수준은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3.505, p<0.001, \chi^2=406.788, p<0.001, \chi^2=186.697, p<0.001$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52.3%와 남학생의 46.6%가 학교수업 진행이 중위권에 맞추어 진행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들이 학교수업이 좀 더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학교 수업 진행 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생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52.4%가 학교 수업이 중위권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중위권 수준에서 학교 수업이 진행된다는 응답비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의 경우, 38~40%는 학교 수업이 중상위권 이상의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학교에서의 수업내용을 다소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위하여 학교에서 선수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계고등학생의 35.6%는 학교의 수업 진행이 하위권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2 학교수업 진행 수준

(단위: %, 명)

구분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전체(N)	$\chi^2$
성별	남	3.6	11.5	46.6	31.8	6.4	100(4761)	63.505***
	여	1.7	10.9	52.3	30.7	4.3	100(4314)	
	전체	2.7	11.2	49.3	31.3	5.4	100(9075)	
교급	초	2.4	8.5	52.4	29.4	7.3	100(2802)	406.788***
	중	2.5	11.1	47.7	33.9	4.7	100(3108)	
	일반계고	1.5	9.9	49.2	34.6	4.8	100(2433)	
	전문계고	8.9	26.7	44.7	16.1	3.5	100(733)	
	전체	2.7	11.2	49.3	31.3	5.4	100(9076)	
경제수준	상	2.0	8.9	43.3	35.6	10.1	100(1271)	186.697***
	중	2.4	11.4	51.3	30.4	4.4	100(7258)	
	하	8.5	15.4	37.3	31.8	6.9	100(493)	
	전체	2.7	11.2	49.3	31.3	5.4	100(9022)	

\*  $p<0.05$ , \*\*  $p<0.01$ ,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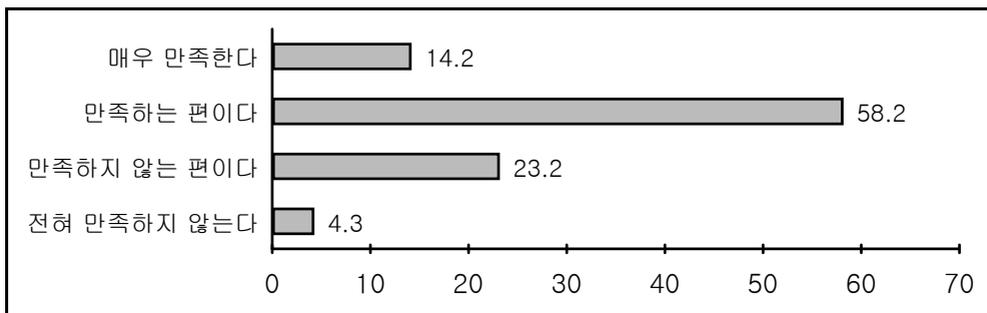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 수업 진행 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생각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계층이 중간인 아동·청소년은 학교 수업이 중위권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응답(51.3%)을 가장 많이 한 반면, 가정의 경제적 계층이 상인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이 중상위권 이상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응답(45.7%)을 더 많이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중위권 수준이라는 응답률과 중상위권 수준이라는 응답률이 비슷하였고, 다른 계층에 비해 중하위권 이하의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수업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⑤ 학교수업 만족도

학교수업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의 학교 적응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그림 IV-36〕). 학교수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72.4%인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7~8명은 학교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 만족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자료는 〈표 IV-6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59.068, p<0.001, \chi^2=512.927, p<0.001$ ). 교급에 따른 학교수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91.3%, 중학생의 67.9%, 일반계고등학생의 60.6%, 전문계고등학생의 59.0%



【그림 IV-36】 학교수업 만족도(%)

표 IV-63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N)	$\chi^2$	
교 급	초	1.8	6.9	56.1	35.2	100(2805)	1859.068***
	중	5.4	26.7	61.3	6.6	100(3111)	
	일반계고	5.0	34.5	57.8	2.8	100(2434)	
	전문계고	7.5	33.4	54.8	4.2	100(730)	
	전체	4.3	23.2	58.2	14.2	100(9080)	
경제수준	상	4.1	12.2	51.3	32.4	100(1268)	512.927***
	중	4.0	24.3	60.0	11.7	100(7267)	
	하	9.3	36.1	49.5	5.1	100(493)	
	전체	4.3	23.2	58.2	14.2	100(9028)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수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계층의 아동·청소년의 83.7%, 중인 아동·청소년의 71.7%, 하인 아동·청소년의 54.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비슷한 결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그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수업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⑥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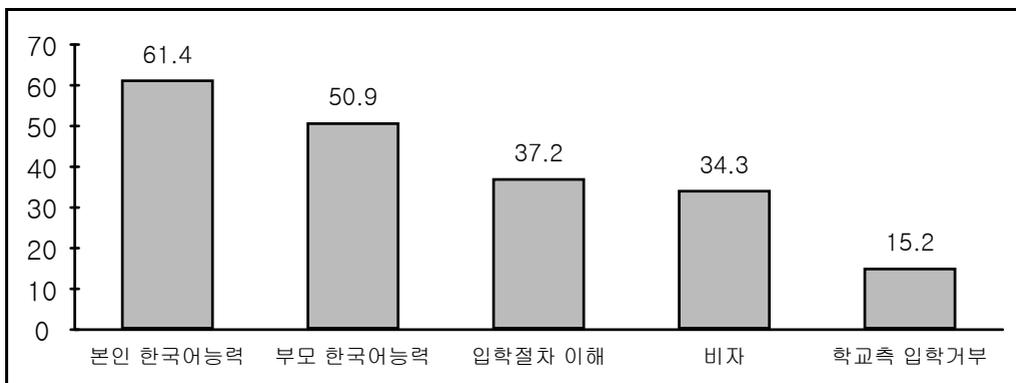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학교 입학의 수월성은 교육권 보장의 기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에 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모의 한국어 능력’,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비자(체류자격) 문제’, ‘학교 측 입학 거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자료의 분석결과는 [그림 IV-37]과 같다.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이들의 학습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주아동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아동의 50.9%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부모가 한국어를 못할 경우, 입학 상담이나 입학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주아동의 학교입학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문제와 학교 측의 입학 거부로 학교 입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4.3%와 15.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인우보증서만 제출해도 아동·청소년의 학교 입학을 허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문제와 학교 측의 입학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아동·청소년이 10명 중 1~4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학교사회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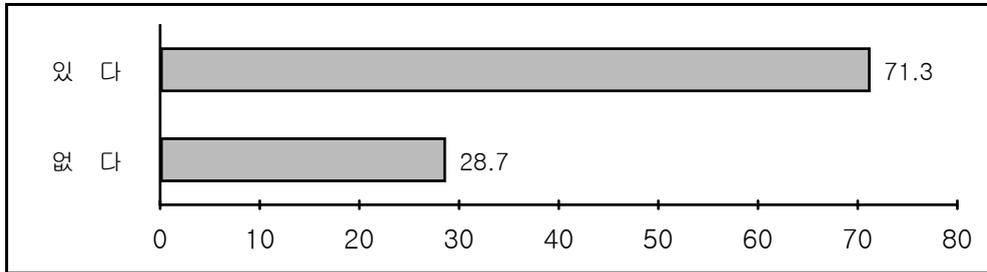
【그림 IV-37】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재구성

⑦ 사교육 경험률

사교육 경험률은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학교수업 이외에 성적향상(진학)을 위한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수업 이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차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률은 [그림 IV-3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71.3%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가 성적향상을 위하여 과외, 학원, 학습지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38]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표 IV-64>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hi^2=21.888, p<0.001, \chi^2=825.755, p<0.001, \chi^2=286.477, p<0.001$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chi^2=1.858, p>0.05$ ).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73.6%, 남학생의 69.2%가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교급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교급의 아동·청소년들의 사교육 경험이 70% 이상인데 반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26.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표 IV-64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성별	남	69.2	30.8	100(4771)	21.888***
	여	73.6	26.4	100(4309)	
	전체	71.3	28.7	100(9080)	
교급	초	78.5	21.5	100(2810)	825.755***
	중	75.7	24.3	100(3105)	
	일반계고	70.9	29.1	100(2432)	
	전문계고	26.3	73.7	100(733)	
	전체	71.3	28.7	100(9080)	
지역규모	대도시	71.7	28.3	100(3946)	1.858
	중소도시	71.4	28.6	100(3845)	
	읍/면	69.8	30.2	100(1287)	
	전체	71.3	28.7	100(9078)	
경제수준	상	82.1	17.9	100(1273)	286.477***
	중	71.4	28.6	100(7261)	
	하	41.5	58.5	100(492)	
	전체	71.3	28.7	100(9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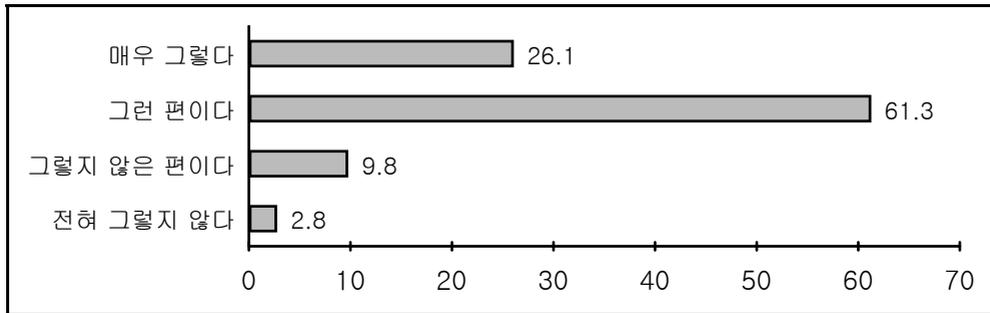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하는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교육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살펴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사교육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받은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IV-39]에 제시되어 있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 중 87.4%가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6.1%나 되었다. 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선행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원 등에서는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의 다양한 평가시기에 맞춰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성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암기식·주입식 위주의 학습에 익숙해져,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그림 IV-39】 사교육 효과성(%)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생각은 <표 IV-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3.315$ ,  $p<0.001$ ,  $\chi^2=156.537$ ,  $p<0.001$ ).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90.8%), 일반계고등학생(86.6%), 중학생(85.3%), 전문계고등학생(78.8%)의 순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아동의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학습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이후의 학습능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에 안주하여 학습하게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사고 및 자율적 행동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많은 우려를 낳는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사교육 효과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사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상인 계층의 아동·청소년 중 사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0.1%나 되었다. 이 결과는 사교육 관련 조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그 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비교적 비용이 고가인 과외교육 등 1:1 맞춤형 개인교습을 통해 성적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IV-65 사교육 효과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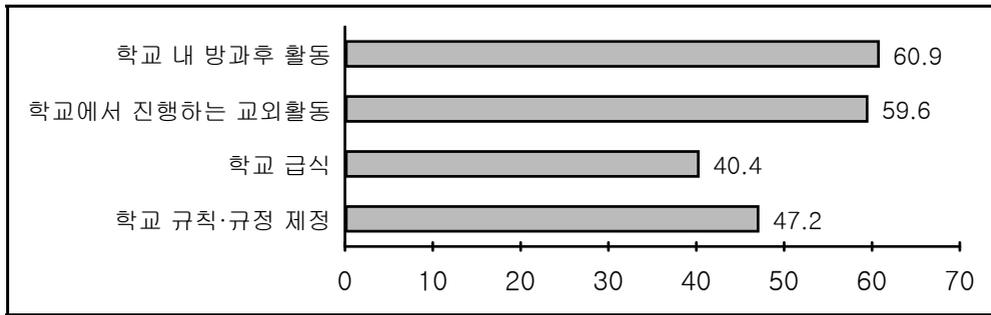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교 급	초	2.3	6.9	58.6	32.2	100(2202)	103.315***
	중	3.5	11.2	61.1	24.2	100(2347)	
	일반계고	2.6	10.8	64.9	21.7	100(1722)	
	전문계고	3.6	17.6	61.7	17.1	100(193)	
	전체	2.8	9.8	61.3	26.1	100(6464)	
경 제 수 준	상	3.8	6.4	49.7	40.1	100(1045)	156.537***
	중	2.5	10.3	63.8	23.4	100(5176)	
	하	6.3	14.1	58.5	21.0	100(205)	
	전체	2.8	9.8	61.3	26.1	100(6426)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⑧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는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을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학교는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지’,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광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방과후 활동,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외활동, 학교 급식,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 등의 활동은 모두 교육활동에 포함되며, 이는 교육 환경 및 질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V-40]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는 자신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 참여 및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외활동 참여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10명 중 4~5명은 학교 급식이나 규칙·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당국이 급식이나 규칙·규정 제정 같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보다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40】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아동·청소년의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의 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자료는 <표 IV-66>에 제시되어 있다. 교급에 따른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내 방과후 활동,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외활동, 학교 급식, 학교 규칙·규정 제정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학생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chi^2=1468.967, p<0.001, \chi^2=346.176, p<0.001, \chi^2=576.556, p<0.001, \chi^2=890.843, p<0.001$ ). 이러한 교급의 차이는 학교 내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정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초등학생의 83.1%가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40~50%대의 청소년만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20~30%로 나타나,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이 학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들의 20~30%정도가 전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부 학교 당국이 중·고등학생들의 일탈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다양한 규제 조항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내 방과후 활동,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외활동, 학교 급식, 학교 규칙·규정 제정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학생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chi^2=200.669, p<0.001, \chi^2=181.013, p<0.001, \chi^2=265.172, p<0.001, \chi^2=284.188, p<0.001$ ).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써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66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학교 내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정도	교급	초	5.8	11.1	41.4	41.7	100(2809)	1468.967***
		중	22.0	25.4	42.8	9.8	100(3101)	
		일반계고	30.6	19.3	34.5	15.6	100(2433)	
		전문계고	28.6	25.2	34.9	11.2	100(733)	
	경제수준	전체	19.8	19.3	39.5	21.4	100(9076)	200.669***
		상	15.1	13.3	36.7	34.9	100(1274)	
		중	20.1	20.2	40.3	19.3	100(7257)	
		하	28.1	22.1	34.8	15.0	100(494)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외활동 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정도	교급	초	11.6	20.2	45.7	22.4	100(2801)	346.176***
		중	13.3	26.7	47.6	12.4	100(3104)	
		일반계고	18.4	30.1	42.9	8.6	100(2436)	
		전문계고	18.3	28.2	47.5	6.0	100(731)	
	경제수준	전체	14.6	25.7	45.7	14.0	100(9072)	181.013***
		상	15.9	19.2	40.0	24.9	100(1273)	
		중	14.0	26.8	47.1	12.2	100(7252)	
		하	20.5	27.4	40.2	12.0	100(493)	
급식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정도	교급	초	15.7	29.9	39.8	14.6	100(2798)	576.556***
		중	23.2	38.2	33.8	4.9	100(3102)	
		일반계고	30.8	40.2	26.0	3.0	100(2432)	
		전문계고	33.5	34.2	26.9	5.3	100(731)	
	경제수준	전체	23.8	35.8	33.0	7.4	100(9063)	265.172***
		상	21.1	26.6	35.9	16.3	100(1269)	
		중	23.2	37.7	33.0	6.1	100(7249)	
		하	38.8	33.5	23.8	3.9	100(492)	
학교의 규칙· 규정 제정에	교급	전체	23.7	35.9	32.9	7.4	100(9010)	890.843***
		초	9.9	22.8	49.4	17.8	100(2785)	
		중	24.5	34.3	36.0	5.3	100(3104)	
		일반계고	27.5	36.7	32.2	3.6	100(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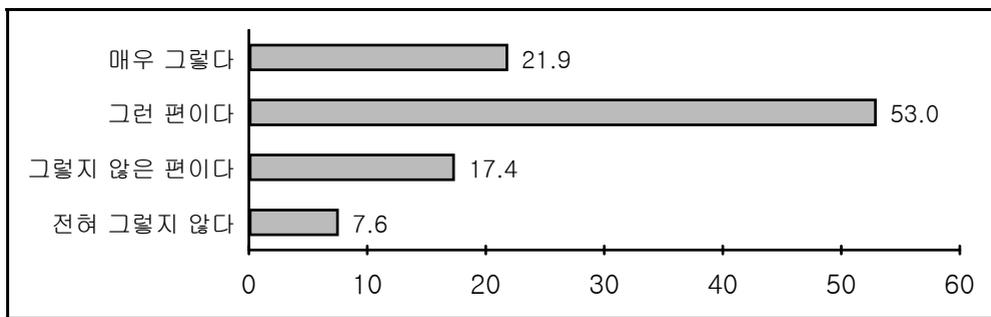
학생의견 반영 정도		전문계고	29.3	37.4	29.5	3.8	100(733)	284.188***
		전체	21.2	31.6	38.6	8.6	100(9053)	
	경제 수준	상	18.1	20.7	42.9	18.3	100(1268)	
		중	21.0	33.3	38.7	7.1	100(7239)	
		하	32.9	35.7	25.4	6.1	100(493)	
		전체	21.2	31.6	38.6	8.6	100(9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⑨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교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 공지는 학교의 교육방침 및 변화를 학생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학교당국과 학생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는 [그림 IV-4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74.9%는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5.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의 4명 중 1명이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표 IV-6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chi^2=844.961, p<0.001, \chi^2=247.963, p<0.001$ ).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85.1%, 중학생의 74.7%, 일반계고등학교의 66.4%, 전문계고등학교의 65.7%가 자신의 학교가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가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10~15%는 학교가 전혀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학교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및 교사의 교육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14.5%는 학교가 생활규정 및 변경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에게 더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표 IV-67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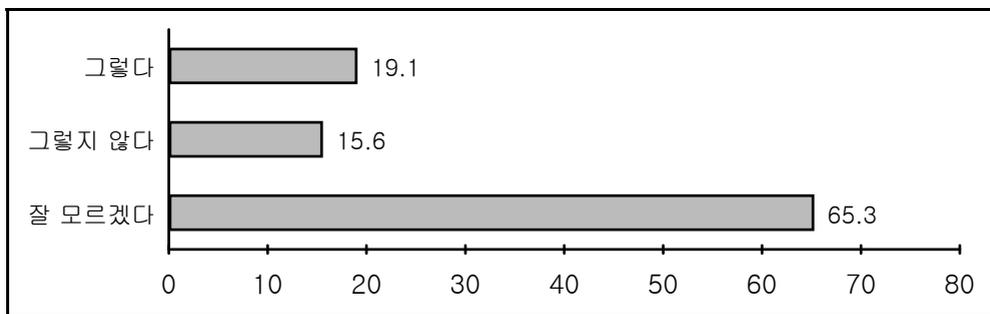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교급	초	3.7	11.1	46.0	39.1	100(2791)	844.961***
	중	7.5	17.7	56.9	17.8	100(3101)	
	일반계고	10.5	23.2	55.4	11.0	100(2428)	
	전문계고	13.4	21.0	55.3	10.4	100(733)	
	전체	7.6	17.4	53.0	21.9	100(9053)	
경제수준	상	7.7	10.3	45.2	36.8	100(1266)	247.963***
	중	7.1	18.5	54.6	19.7	100(7240)	
	하	14.5	20.2	48.5	16.8	100(495)	
	전체	7.6	17.5	53.0	22.0	100(9001)	

\*  $p<0.05$ , \*\*  $p<0.01$ , \*\*\*  $p<0.001$

⑩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는 학교가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학생에게 징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학생이 사실이 오도되어 억울하게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결과는 [그림 IV-4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잘 모르겠다’로, 65.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10명 중 6~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소명권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징계절차에 대한 학교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결과와 비교해서 본다면, 학교당국이 학교의 생활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지라도 아동·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학교규정을 모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가 징계대상 학생에 대해 소명권을 부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만을 100%로 환산하여 본다면,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55.0%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2개교 중 1개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2】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표 IV-68>에 제시되어 있다. 재학 중인 학교가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소명권을 부여하는지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표 IV-68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N)	$\chi^2$
성별	남	20.2	17.8	62.0	100(4765)	53.764***
	여	17.9	13.2	68.9	100(4315)	
	전체	19.1	15.6	65.3	100(9080)	
교급	초	38.7	12.7	48.6	100(2806)	1073.691***
	중	11.8	13.8	74.4	100(3106)	
	일반계고	8.6	18.7	72.7	100(2436)	
	전문계고	10.0	24.1	65.9	100(731)	
	전체	19.1	15.6	65.3	100(9079)	
경제수준	상	32.0	15.0	53.0	100(1270)	171.940***
	중	17.2	15.5	67.3	100(7264)	
	하	13.2	19.6	67.2	100(494)	
	전체	19.1	15.6	65.3	100(9028)	

\*  $p<0.05$ , \*\*  $p<0.01$ , \*\*\*  $p<0.001$

응답률은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53.764$ ,  $p<0.001$ ,  $\chi^2=1073.691$ ,  $p<0.001$ ,  $\chi^2=171.940$ ,  $p<0.001$ ).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68.8%, 남학생의 62.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에 대하여 더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공지해준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학교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다른 교급에 비해 학교 규칙을 아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만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소명권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권을 주는 학교보다 주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한번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동·청소년은 앞으로도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징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에 속하는 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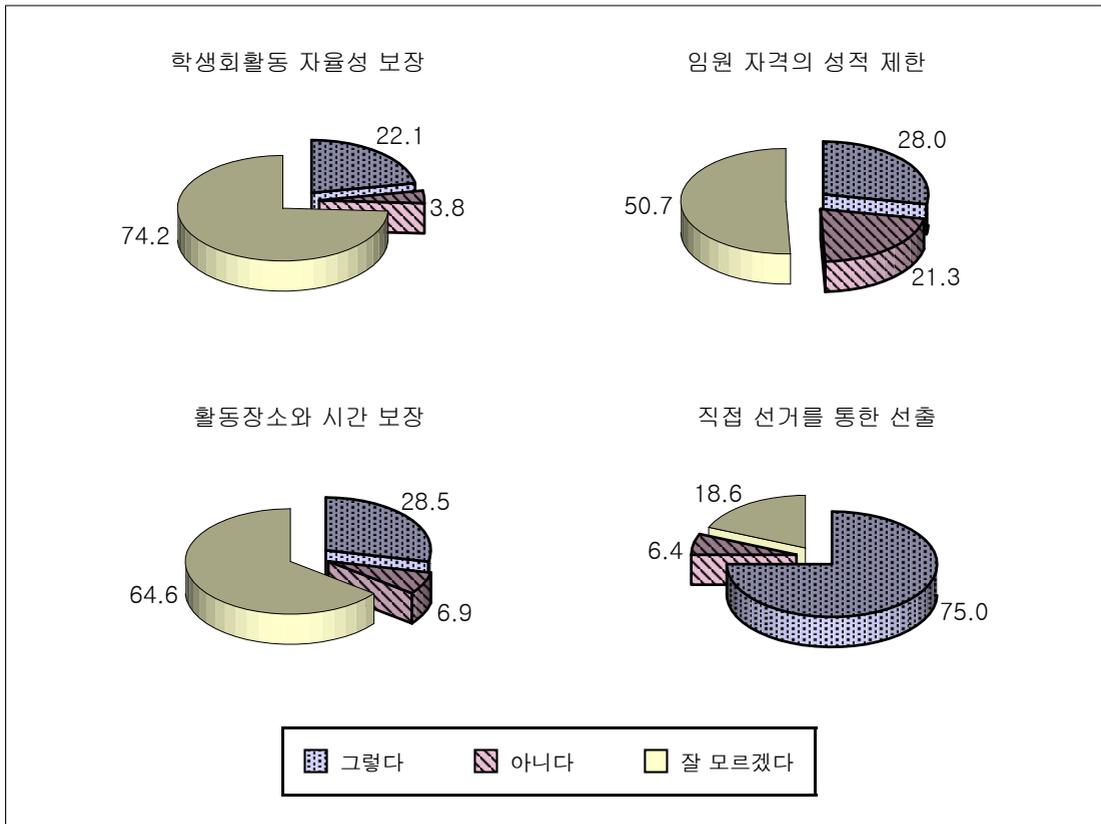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중이나 하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더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그로 인해 학교 및 학급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더 많이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소명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는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학생회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전교 학생들이 직접 뽑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학생회는 교내 학생대표들의 모임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이를 전달하고 또 학교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대표의 선출과정이나 운영과정이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될 때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적 시민역량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그림 IV-43]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네 가지 항목 중 직접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 항목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에서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회 운영이 학생대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아동·청소년들은 학생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 활동 장소와 시간보장,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모두에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그렇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당수 학교에서 성적 우수가 임원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 여부, 임원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모두에서



【그림 IV-4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5.892, p<0.001, \chi^2=1958.329, p<0.001, \chi^2=520.217, p<0.001, \chi^2=421.796, p<0.001$ ).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 여부와 관련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생회 활동에 대해 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을 보면,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의 학생회 활동은 학생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 항목 모두에서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표 IV-69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 여부 <sup>71)</sup>	교 급	중	19.3	4.5	76.1	100(3102)	35.892***
		일반계고	25.3	2.8	71.9	100(2427)	
		전문계고	23.0	3.7	73.3	100(730)	
		전체	22.1	3.8	74.2	100(6259)	
	경 제 수 준	상	28.1	5.6	66.3	100(534)	28.227***
		중	22.0	3.5	74.5	100(5236)	
		하	16.3	3.8	79.9	100(453)	
	전체	22.1	3.7	74.2	100(6223)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교 급	초	58.0	6.2	35.9	100(2802)	1958.329***
		중	13.2	26.7	60.2	100(3102)	
		일반계고	15.5	31.7	52.8	100(2426)	
		전문계고	18.3	21.5	60.2	100(731)	
		전체	28.1	21.3	50.7	100(9061)	
	경 제 수 준	상	41.1	17.4	41.5	100(1271)	153.281***
		중	26.6	21.9	51.5	100(7245)	
		하	15.9	22.6	61.6	100(492)	
전체		28.1	21.3	50.6	100(9008)		
활동 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교 급	초	44.2	6.6	49.2	100(2802)	520.217***
		중	21.4	5.8	72.8	100(3099)	
		일반계고	21.0	8.6	70.4	100(2425)	
		전문계고	23.0	7.4	69.6	100(731)	
		전체	28.5	6.9	64.6	100(9057)	
	경 제 수 준	상	40.7	8.6	50.7	100(1270)	141.392***
		중	27.0	6.4	66.6	100(7239)	
		하	20.7	9.9	69.4	100(493)	
전체		28.6	6.9	64.5	100(9002)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교 급	초	79.5	11.3	9.2	100(2800)	421.796***
		중	70.5	3.4	26.2	100(3102)	
		일반계고	77.3	4.6	18.1	100(2427)	
		전문계고	69.9	6.7	23.4	100(731)	
		전체	75.0	6.4	18.6	100(9060)	
	경 제 수 준	상	76.5	9.1	14.3	100(1270)	41.495***
		중	75.3	5.9	18.8	100(7243)	
		하	69.4	6.5	24.1	100(493)	
전체		75.2	6.4	18.5	100(9006)		

\*  $p < 0.05$ , \*\*  $p < 0.01$ , \*\*\*  $p < 0.001$

71) 초등학교생용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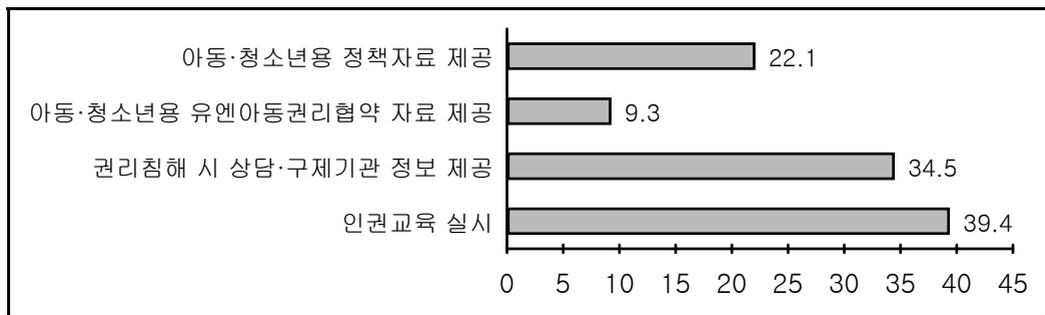
임원 자격에 성적제한이 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중·고등학생들은 성적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직접 선거를 통한 학생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교급의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 여부, 임원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모두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8.227, p<0.001, \chi^2=153.281, p<0.001, \chi^2=141.392, p<0.001, \chi^2=41.495, p<0.001$ ).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을 먼저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학생회의 운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학생회 활동의 자율성 보장, 활동 장소와 시간 보장,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에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가 좀 더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그렇다’는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생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 제한이라는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출된 이후의 학생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⑫ 인권교육 실시율

인권교육 실시율은 아동·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아동·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풀어쓴 아동·청소년용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해 및 인권 보호방법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용 인권 정보 제공을 포함한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의 계발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는 [그림 IV-4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39.4%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34.5%),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22.1%), 아동·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9.3%)의 순으로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어 있으며 도덕이나 사회교과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에 대한 비율은 9.3%에 지나지 않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홍보 부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매년 포함되는 내용으로, 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의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적 차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44】 인권교육 실시율(%)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0>에 제시되어 있다.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아동·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인권교육 실시 여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50.341, p<0.001, \chi^2=40.855, p<0.001, \chi^2=837.302, p<0.001, \chi^2=92.851, p<0.01$ ).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친화적 인권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른 교급에 비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표 IV-70 인권교육 실시율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N)	$\chi^2$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교급	초	24.2	75.8	100(2808)	50.341***
		중	24.6	75.4	100(3105)	
		일반계고	17.9	82.1	100(2436)	
		전문계고	18.2	81.8	100(732)	
		전체	22.1	77.9	100(9081)	
	경제수준	상	26.4	73.6	100(1273)	18.759***
		중	21.7	78.3	100(7261)	
		하	18.2	81.8	100(495)	
전체		22.2	77.8	100(9029)		
아동·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	교급	초	10.8	89.2	100(2809)	40.855***
		중	10.5	89.5	100(3106)	
		일반계고	6.2	93.8	100(2436)	
		전문계고	8.9	91.1	100(732)	
		전체	9.3	90.7	100(9083)	
	경제수준	상	12.4	87.6	100(1273)	20.009***
		중	9.0	91.0	100(7262)	
		하	6.5	93.5	100(494)	
전체		9.3	90.7	100(9029)		
권리침해 시 상당·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교급	초	56.1	43.9	100(2811)	837.302***
		중	25.3	74.7	100(3102)	
		일반계고	24.8	75.2	100(2431)	
		전문계고	23.1	76.9	100(731)	
		전체	34.5	65.5	100(9075)	
	경제수준	상	42.3	57.7	100(1273)	51.878***
		중	33.7	66.3	100(7257)	
		하	25.9	74.1	100(494)	
전체		34.5	65.5	100(9024)		
인권교육 실시 여부	교급	초	44.2	55.8	100(2811)	92.851***
		중	41.7	58.3	100(3102)	
		일반계고	34.3	65.7	100(2431)	
		전문계고	29.1	70.9	100(732)	
		전체	39.4	60.6	100(9076)	
	경제수준	상	41.4	58.6	100(1271)	7.670*
		중	39.5	60.5	100(7259)	
		하	34.2	65.8	100(494)	
전체		39.5	60.5	100(9024)		

\*  $p < 0.05$ , \*\*  $p < 0.01$ , \*\*\*  $p < 0.001$

고등학생의 경우 인권교육이 대학입시나 성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용 인권정보 제공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아동·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제공 여부,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인권교육 실시 여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759, p<0.001, \chi^2=20.009, p<0.001, \chi^2=51.878, p<0.001, \chi^2=7.670, p<0.05$ ).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아동·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및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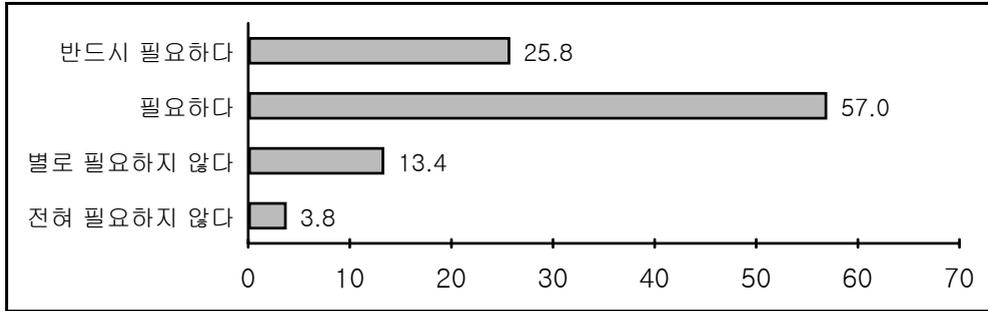
#### ㉓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인권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아동·청소년들은 위의 인권교육 실시율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인권친화적 정보 제공 및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림 IV-4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83.8%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5.8%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4명 중 1명은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친화적 정보 및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해줄 기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71>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0.968, p<0.001, \chi^2=191.536, p<0.001, \chi^2=13.609, p<0.05$ ). 즉, 여학생일수록, 교급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사회·학교에서 이들의 권리침해 경험이 더 많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V-45】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표 IV-71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N)	$\chi^2$
성별	남	5.8	15.3	54.0	24.9	100(4772)	150.968***
	여	1.6	11.3	60.4	26.7	100(4311)	
	전체	3.8	13.4	57.0	25.8	100(9083)	
교급	초	4.1	18.4	55.8	21.6	100(2806)	191.536***
	중	4.8	13.4	57.1	24.7	100(3109)	
	일반계고	1.8	8.4	58.9	30.9	100(2436)	
	전문계고	5.5	10.8	54.6	29.1	100(732)	
	전체	3.8	13.4	57.0	25.8	100(9083)	
경제수준	상	5.3	13.6	55.4	25.8	100(1269)	13.609*
	중	3.6	13.6	57.2	25.6	100(7268)	
	하	3.4	10.7	57.0	28.9	100(495)	
	전체	3.8	13.4	57.0	25.8	100(9032)	

\*  $p < 0.05$ , \*\*  $p < 0.01$ , \*\*\*  $p < 0.001$

### (3) 관련 정책 및 대안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청소년들은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제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이주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전입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이 허용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주아동·청소년의 학교전입학의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입학이 허용되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입학은 수월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이주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입학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은 수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에 이주아동·청소년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거나, 지원 단체에 다니거나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다니는 등의 교육적인 방임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류의 간소화 뿐 아니라 입학 절차상의 소요시간의 간소화도 고려하여, 아동이 교육적 방임 상태에 놓이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얻어서 국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은 초·중학교 입학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 이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이주 아동·청소년의 고등학교 입학 허가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남겨두고 있어 강제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일선의 고등학교에서는 이주아동·청소년의 학업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이주아동·청소년의 전입학을 꺼리고 있으며, 이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들 학생들이 옮겨가기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주아동·청소년 지원단체들은 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원할 시 학교에서 반드시 이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의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입학권을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주아동의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 절차는 동일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비자라 하더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입학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실제 학생의 문의에 잘못 응답하여 이주 아동·청소년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관련 정책이나 시행령의 제개정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교사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이 교육법이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아동·청소년과 부모들의 경우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어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나 교육 관계자들이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에게 학교 입학 절차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전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이주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제대로 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주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적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이주아동·청소년의 언어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주아동의 언어 문제는 학습 부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통의 문제로 이어져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만든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는 다문화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한국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대안학교는 2011년에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 각기 학교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도 단위에 1개교씩 설치되어 학교와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통학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나, 인터넷을 통한 수업방식 등의 다양한 접근으로 공교육에서 이탈된 이주아동·청소년을 편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이주아동·청소년을 꺼리는 이유는 이주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사 평가는 교사의 학급 평균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므로, 교사는 이주아동·청소년의 전입학으로 학급 평균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에 학급 평균 산정에는 이주아동·청소년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있으나, 이 방안은 이주아동·청소년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편의를 위한 방안이며,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차원에서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이에 이주아동·청소년의 독립적인 학업능력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아동·청소년의 평가 시 과목별 평가를 세분화하여, 아동의 우수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여섯째, 이주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모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NGO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폐지하고, 그 부모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법무부는 이 건의를 수용하되, 그 점을 악용하여 반사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특별 체류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다만, 2010년 9월, 초·중학교 주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자제하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정보를 유도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단속으로 동반 출국해야 할 경우에도 국내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있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와 같이 강제 출국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실현되고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 (1) 지표의 의미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협약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은 아동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2항에서는 당사국이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휴식’에 대해서는 ILO조약 제90호(1948년)에 청소년의 야간노동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이 있으며, 특히 14세 이하의 아동은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를 포함한 ‘14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야간노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학업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휴식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喜田 외, 2009).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sup>72)</sup>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장 저마틴 위원장이 2012년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모가 먼저 교육과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해 어린이가 균형 있는 생각과 자세를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어린이에게는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2. 5. 8).

「제3·4차 국가보고서」에는 이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문화기반시설 수’,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 시간’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 수’,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동아리 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여가활동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 (2) 지표의 현황 및 분석

### ①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문화공간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제공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문화공간은 2010년 기준으로 총 1,979개소로, 이 중 공공도서관이 759개소(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등록 박물관 655개소(33.1%), 지방문화원 228개소(11.5%)의 순으로 문화공간이 많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연도별로 문화공간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문화공간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공공도서관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해 보인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도서관 증가현황을

72)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부과제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 연구를 추진하였음.

표 IV-72 연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소)

년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9	1,883	703	630	141	182	227
2008	1,741	644	579	128	167	223
2007	1,619	601	511	115	161	225
2006	1,261	572	431	103	155	-
2005	1,133	526	364	93	15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IV-73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소)

시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서울	278	101	105	32	15	25
부산	66	30	12	4	7	13
대구	53	26	9	2	8	8
인천	66	26	22	5	5	8
광주	41	16	8	6	6	5
대전	48	22	15	4	2	5
울산	26	11	7	-	3	5
경기	360	163	109	31	26	31
강원	156	47	66	8	17	18
충북	101	32	39	6	12	12
충남	129	51	40	6	15	17
전북	109	45	30	3	17	14
전남	142	57	35	12	16	22
경북	167	58	57	6	23	23
경남	147	53	50	7	17	20
제주	90	21	51	13	3	2
총계	1,979	759	655	145	192	22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구성

살펴보면 703개소에서 759개소로 56개관이 증가한 데 비해 다른 문화기반시설은 2~2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폭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문화공간에 비해 도서관의 비중과 연도별 증가폭이 큰 이유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와 수요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우리나라 전체 문화공간의 18.2%(360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가장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문화공간이 14.0%(278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 면적의 약 16.83배<sup>73)</sup>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면적 대비 문화공간 비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서울 이외 특히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 ② 청소년수련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 수는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과 관련된 지표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sup>74)</sup>로 나뉘며, 이곳에서의 활동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수련시설 현황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위한 장소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반영하는 지표로, 아동·청소년의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는 <표 IV-7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73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2% 증가<sup>75)</sup>한 것이다. 총 73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문화의집이 2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73) 서울면적: 605㎢, 경기도면적: 10,184㎢ (출처: 브리테니커백과사전)

74)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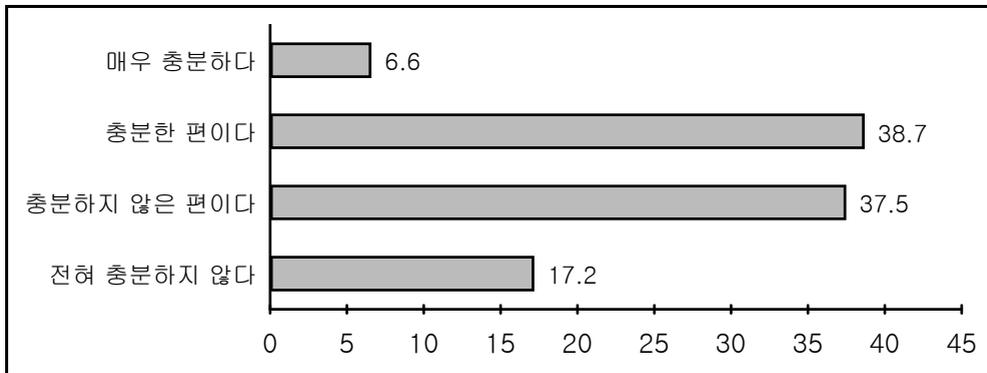
75) 2010년의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은 721개소임.



### ③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 및 활동시설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그림 IV-46]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중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3%,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7%로 나타나, 2명 중 1명은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도 17.2%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6】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를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7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chi^2=51.728$ ,  $p<0.001$ ,  $\chi^2=1052.516$ ,  $p<0.001$ ,  $\chi^2=219.927$ ,  $p<0.001$ ),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5.840$ ,  $p>0.05$ ). 성별에 따른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47.8%, 여학생의 42.5%가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문화 및 여가시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 및 여가활동을 더 선호해서일 수도 있고, 문화 및 여가시설이 남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V-75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 (N)	$\chi^2$
성 별	남	17.7	34.5	40.0	7.8	100(4751)	51.728***
	여	16.8	40.7	37.3	5.2	100(4311)	
	전체	17.2	37.5	38.7	6.6	100(200)	
교 급	초	6.5	27.2	51.3	15.0	100(2794)	1052.516***
	중	18.7	42.1	36.3	2.9	100(3101)	
	일반계고	26.0	42.4	29.5	2.1	100(2436)	
	전문계고	22.7	40.7	32.0	4.7	100(728)	
	전체	17.2	37.5	38.7	6.6	100(400)	
지 역 규 모	대도시	16.8	37.9	39.1	6.2	100(3943)	5.840
	중소도시	17.5	36.9	39.0	6.6	100(3831)	
	읍/면	17.6	38.0	36.8	7.6	100(1287)	
	전체	17.2	37.5	38.7	6.6	100(300)	
경 제 수 준	상	13.5	28.9	44.2	13.4	100(1266)	219.927***
	중	17.1	38.8	38.8	5.4	100(7249)	
	하	29.4	39.3	25.3	6.1	100(494)	
	전체	17.2	37.4	38.8	6.6	100(3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교급에 따른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차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은 66.3%가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반면, 중·고등학교생은 30~40%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고등학교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차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충분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위의 문화기반시설 수나 청소년수련시설 수의 지표에서 본 지역별 차이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57.6%, 중류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44.2%, 하인 가정 아동·청소년

의 31.4%가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입장료 부담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④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여가문화활동 필요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활동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여가문화활동 필요도는 <표 IV-76>에 제시되어 있다. 만13~24세의 청소년들 중 여가문화활동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성별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6**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않다	별로 필요하지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만13~24세	2.4	12.1	54.2	31.4
특/광역시	2.2	12.5	55.4	30.0
동부	2.7	11.7	53.0	32.6
읍/면부	2.3	11.6	53.4	32.8
남	2.6	13.3	53.8	30.4
여	2.2	10.9	54.5	32.3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⑤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여가문화활동 참여도는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와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휴일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 및 활동 증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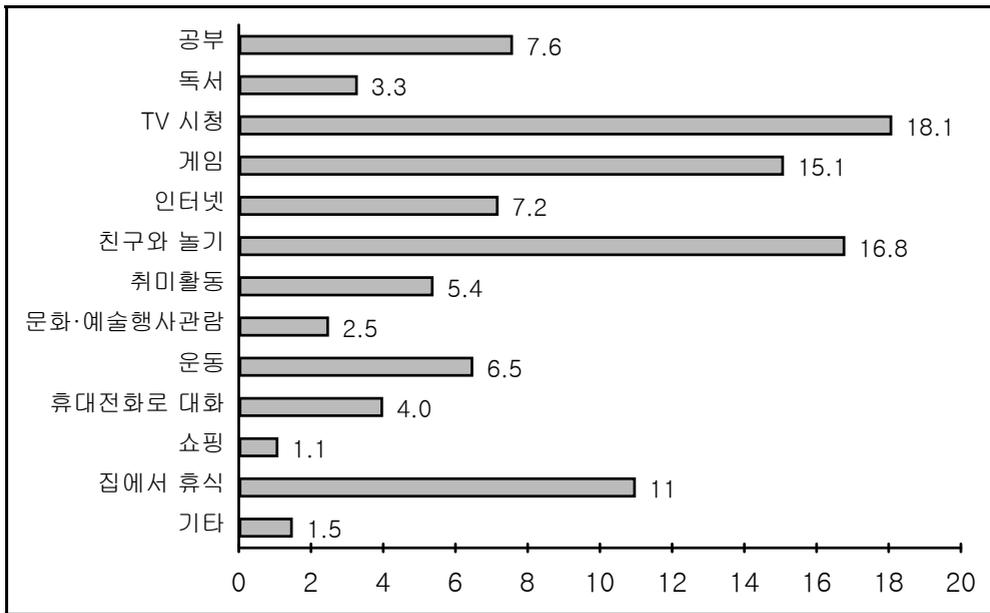
먼저, 여가문화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만13~24세의 아동·청소년 중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6.7%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 거의 비슷하게

표 IV-77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 참여하는 편이다
만13~24세	32.5	30.9	28.5	8.1
특/광역시	32.7	30.9	28.3	8.0
동부	33.2	30.4	27.3	9.1
읍/면부	29.6	32.2	32.5	5.7
남	33.7	30.7	27.4	8.2
여	31.4	31.0	29.5	8.1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IV-47】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필요도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나, 시간, 공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가정·학교·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문화 및 여가활동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V-78**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다중응답)<sup>76)</sup>

(단위: %)

구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	인터넷	친구와 놀기	취미 활동	문화 예술 행사 관람	운동	휴대 전화로 대화	쇼핑	집에서 휴식	기타	전체	
성별	남	7.5	3.3	15.0	23.8	5.1	17.1	4.0	2.2	10.2	1.6	0.4	8.8	1.2	100
	여	7.8	3.3	21.4	5.5	9.5	16.4	7.0	2.8	2.4	6.6	2.0	13.4	1.9	100
	전체	7.6	3.3	18.1	15.1	7.2	16.8	5.4	2.5	6.5	4.0	1.1	11.0	1.5	100
교급	초	8.3	5.4	17.5	14.6	2.9	19.1	5.8	3.0	8.6	1.7	1.2	9.7	2.2	100
	중	4.8	2.4	20.0	17.3	8.3	16.3	5.4	1.7	5.8	4.8	1.2	10.7	1.1	100
	일반고	11.8	2.2	17.1	12.6	10.3	13.0	5.4	2.5	5.4	5.0	1.0	12.8	0.9	100
	전문고	3.1	2.2	15.3	15.9	8.4	21.9	4.4	3.0	5.1	5.5	1.3	11.2	2.6	100
	전체	7.6	3.3	18.1	15.1	7.2	16.7	5.4	2.5	6.5	4.0	1.1	11.0	1.5	100
지역 규모	대도시	8.0	3.4	17.5	15.0	7.5	16.4	5.2	2.7	6.3	3.9	1.2	11.3	1.5	100
	중소	7.8	3.2	18.0	15.5	6.8	17.2	5.9	2.3	6.7	3.9	1.1	10.3	1.4	100
	읍/면	5.9	3.3	19.9	14.2	7.2	16.5	5.1	2.5	6.4	4.1	1.2	11.9	2.0	100
전체	7.6	3.3	18.1	15.1	7.2	16.8	5.4	2.5	6.5	4.0	1.1	11.0	1.5	100	
가족 유형	양부모	7.9	3.4	18.1	14.9	7.1	16.6	5.4	2.5	6.5	4.0	1.1	11.0	1.5	100
	한부모	4.6	2.4	17.2	17.2	8.2	18.0	5.5	2.5	5.8	3.9	1.5	11.3	2.0	100
	조손	5.8	1.7	18.9	20.1	5.3	19.0	5.3	3.1	8.5	4.6	0.6	6.0	0.9	100
	기타	6.5	4.1	21.1	10.6	9.5	18.8	5.0	0.9	7.7	3.0	0.6	10.3	1.9	100
	전체	7.6	3.3	18.1	15.1	7.2	16.8	5.4	2.5	6.5	4.0	1.1	11.0	1.5	100
경제 수준	상	10.3	5.2	16.0	13.6	4.3	16.4	5.7	3.8	9.1	2.8	1.2	10.0	1.7	100
	중	7.3	3.0	18.6	15.2	7.6	16.7	5.3	2.3	6.1	4.2	1.2	11.2	1.4	100
	하	4.4	3.1	15.3	17.6	8.2	16.8	5.8	2.7	5.4	4.1	1.1	10.7	3.1	100
	전체	7.6	3.3	18.1	15.1	7.2	16.8	5.4	2.5	6.5	4.0	1.2	11.0	1.5	100

76)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한 결과 산출 기준: 아동·청소년들이 응답한 1, 2, 3순위에 각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를 산출한 후, 전체 사례수 대비 각 항목 사례수를 산출한 비율임.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여가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에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그림 IV-47]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시청(18.1%), 친구와 놀기(16.8%), 게임(15.1%), 집에서 휴식(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특별한 문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활동들로써,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여가활동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동·청소년들이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본 자료는 <표 IV-78>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휴일에 많이 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게임(23.8%), 친구와 놀기(17.1%), TV 시청(15.0%)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TV 시청(21.4%), 친구와 놀기(16.4%), 집에서 휴식(13.4%)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은 TV 시청이나 집에서 휴식하는 등의 비교적 수동적인 활동으로 휴일을 보내는 반면, 남학생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게임 등을 포함한 게임을 하면서 휴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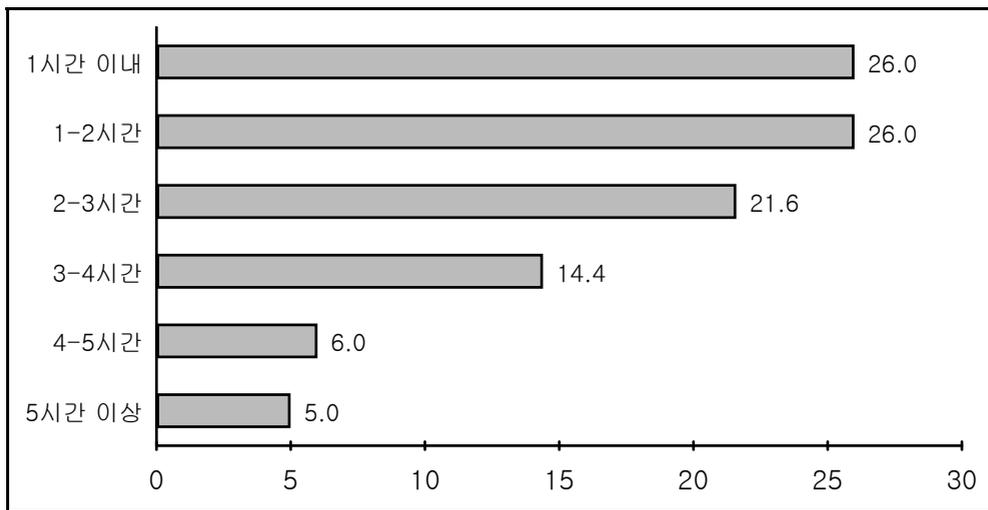
교급별 휴일에 많이 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기(19.1%), TV 시청(17.5%), 게임(14.6%), 중학생은 TV 시청(20.0%), 게임(17.3%), 친구와 놀기(16.3%), 일반계고등학생은 TV 시청(17.1%), 친구와 놀기(13.0%), 집에서 휴식(12.8%), 전문계고등학생은 친구와 놀기(21.9%), 게임(15.9%), TV 시청(15.3%)등의 순으로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이나 전문계고등학생은 휴일에 친구와 만나 놀이를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은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⑥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은 아동·청소년이 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동·청소년의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조사하였다([그림 IV-48]). 아동·청소년의 학교 수업 외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1시간 이내가 26.0%, 1~2시간 이내가 26.0%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52.0%는 학교 수업 이외에 평균 2시간 이내로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수업 이외에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을 학습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1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습하는 시간에 투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7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급,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26.170$ ,  $p<0.001$ ,  $\chi^2=43.018$ ,  $p<0.001$ ,  $\chi^2=371.357$ ,  $p<0.001$ ). 교급에 따른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2시간 이내 공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45.9%, 중학생 47.5%, 일반계고등학생 55.7%, 전문계고등학생 83.2%로 나타났으며, 4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5.2%, 중학생 11.7%, 일반계고등학생 8.7%, 전문계고등학생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습시간만을 놓고 본다면 초등학생의 학교 수업 이외의 학습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하루 중 학교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각 15.2%와 11.7%가 학교 수업 외에 하루 4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10명 중 1~2명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할애한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8】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지역 규모별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1~2시간 학습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데 반해,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은 1시간 이내로 학습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다른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학습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아동·청소년

년들의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인 아동·청소년은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학습 비율이 52.3%로 가장 높은 반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나 중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학습한다는 비율이 각각 24.4%, 26.7%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 이외에 4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평일의 대부분을 학습시간으로 보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표 IV-79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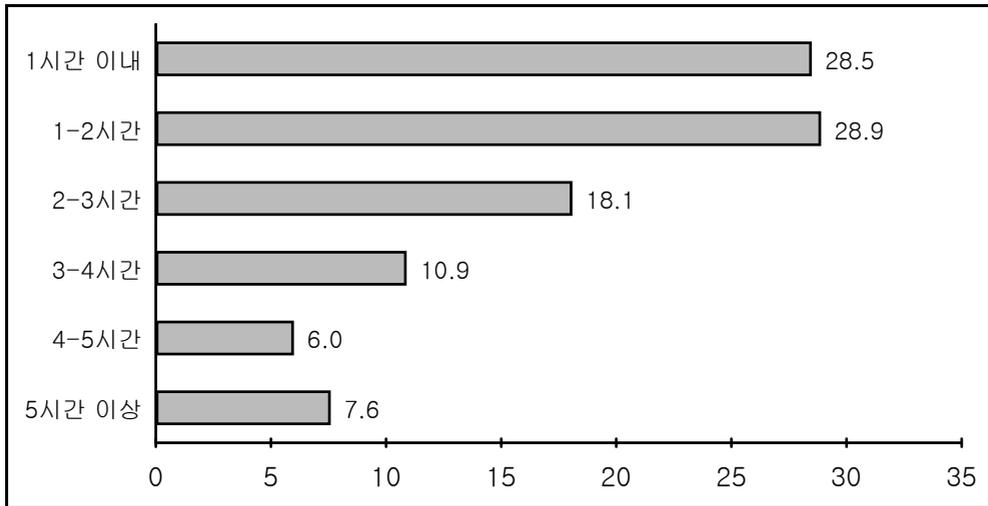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시간 이내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전체 (N)	$\chi^2$	
교 급	초	17.5	28.4	23.0	15.9	8.3	6.9	100(2807)	726.170***
	중	23.4	24.1	23.0	17.8	7.1	4.6	100(3111)	
	일반계고	28.2	27.5	21.8	11.8	6.5	4.2	100(2435)	
	전문계고	63.0	20.2	9.7	3.0	2.5	1.6	100(732)	
	전체	26.0	26.0	21.6	14.4	6.9	5.0	100(9085)	
지 역 규 모	대도시	24.7	24.8	22.3	15.4	7.5	5.3	100(3953)	43.018***
	중소도시	26.1	26.4	21.1	14.5	7.1	4.8	100(3842)	
	읍/면	30.1	28.6	20.8	11.1	4.9	4.4	100(1288)	
	전체	26.0	26.0	21.6	14.4	6.9	5.0	100(9083)	
경 제 수 준	상	13.8	24.4	23.9	17.8	9.8	10.2	100(1271)	371.357***
	중	26.4	26.7	21.8	14.2	6.8	4.1	100(7267)	
	하	52.3	21.3	13.0	8.3	2.2	2.8	100(493)	
	전체	26.1	26.1	21.6	14.4	7.0	4.9	100(9031)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아동·청소년의 평일 기준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49]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평일 기준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은 1~2시간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시간 이내(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명 중 1명 이상의 평일 기준 여가시간이 2시간 이내라는 것이다. 이는 공연 관람 또는 수련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며, 더욱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을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평일에 문화 및 여가생활을 계획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그림 IV-49】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표 IV-80>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은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578.504, p<0.001, \chi^2=48.034, p<0.001, \chi^2=94.574, p<0.001$ ). 교급에 따른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1~2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6%와 30.7%로 가장 많았던 데 반해, 일반계고등학생과 전문계고등학생은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각각 43.1%, 22.7%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등학생일수록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규모별 아동·청소년들의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54.8%, 중소도시 60.4%, 읍/면지역 59.3%로 나타나, 대도시 이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학교수업 이외의 평일 하루 평균 학습시간과 종합해보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수업 등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 평일에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평일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시간 이내의 여가시간을 갖는 비율이 상은 58.9%, 중은 57.6%, 하는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이나 중인 아동·청소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80 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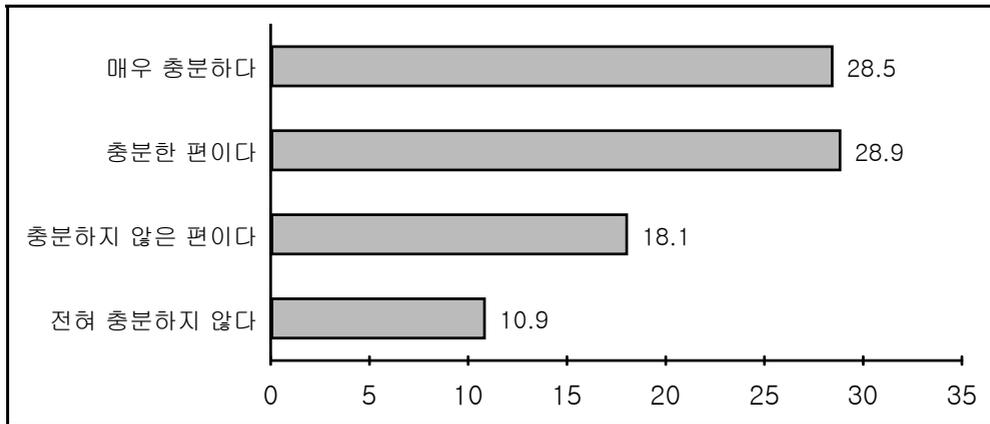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1시간 이내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전체 (N)	$\chi^2$
교 단 급	초	24.9	28.6	19.8	12.5	6.0	8.1	100(2760)	578.504***
	중	21.6	30.7	19.9	11.8	7.2	8.7	100(3030)	
	일반계고	43.1	30.3	14.0	6.5	3.2	3.0	100(2370)	
	전문계고	22.7	18.2	17.5	15.2	10.6	15.9	100(719)	
	전체	28.5	28.9	18.1	10.9	6.0	7.6	100(8879)	
지 역 규 모	대도시	25.6	29.2	19.3	11.9	6.4	7.6	100(3890)	48.034***
	중소도시	29.6	29.8	17.1	10.3	5.6	7.6	100(3741)	
	읍/면	33.9	25.4	17.1	9.7	6.3	7.5	100(1249)	
	전체	28.5	28.9	18.1	10.9	6.0	7.6	100(8880)	
경 제 수 준	상	29.1	29.8	19.0	10.	5.2	6.4	100(239)	94.574***
	중	28.6	29.0	18.3	10.9	6.1	7.1	100(7108)	
	하	25.9	24.3	12.7	11.6	7.3	18.3	100(482)	
	전체	28.5	28.9	18.1	10.9	6.0	7.6	100(7829)	

\*  $p < 0.05$ , \*\*  $p < 0.01$ , \*\*\*  $p < 0.001$

#### ⑦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는 아동·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가시간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충분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그림 IV-50]에 제시되어 있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7.4%였다. 이는 상당수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이 2시간 이내였던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0.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과 비슷하다. 즉,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공부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이 필요해도 공부로 인해 여가시간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0】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81>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12.565, p<0.001, \chi^2=111.891, p<0.001$ ). 교급에 따른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65.7%, 중학생의 44.1%, 일반계고등학생의 26.7%, 전문계고등학생의 42.8%가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계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교급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일수록 여가시간이 짧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의 55.7%, 중인 아동·청소년의 44.5%, 하인 아동·청소년의 43.5%가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일 평균 공부시간과 활용 가능 여가시간의 결과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공부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바쁘게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짧은 여가시간일지라도 여가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된 결과로,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문화행사 및 예술행사 관람, 운동, 독서 등의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81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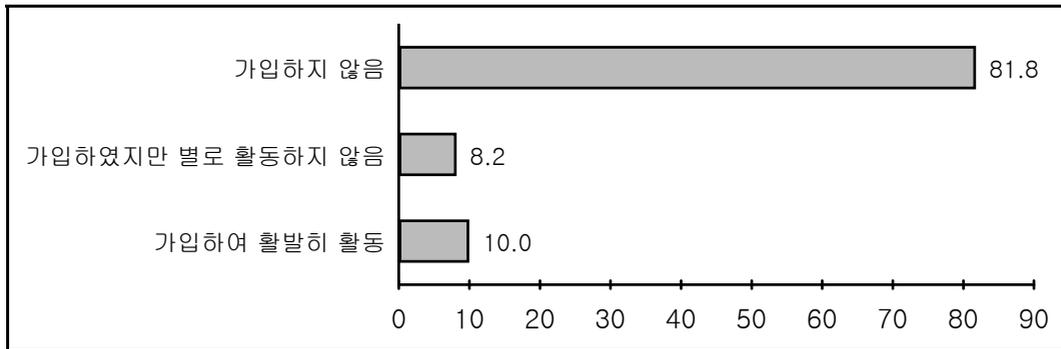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 (N)	$\chi^2$	
교 급	초	11.0	23.3	43.7	22.0	100(2804)	112.565***
	중	22.2	33.7	34.2	9.9	100(3108)	
	일반계고	40.7	32.5	23.0	3.7	100(2437)	
	전문계고	28.8	28.4	34.1	8.7	100(733)	
	전체	24.2	29.7	34.1	11.9	100(9082)	
지 역 규 모	대도시	22.6	30.2	35.4	11.9	100(3952)	13.427*
	중소도시	25.9	29.4	32.9	11.7	100(3841)	
	읍/면	24.4	29.3	33.9	12.4	100(1288)	
	전체	24.2	29.7	34.1	11.9	100(9081)	
경 제 수 준	상	19.5	24.8	35.8	19.9	100(1272)	111.891***
	중	24.8	30.7	34.0	10.5	100(7262)	
	하	28.5	27.9	31.6	11.9	100(494)	
	전체	24.3	29.7	34.1	11.9	1000(9028)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⑧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은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단체(예: 보이·걸스 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해당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동·청소년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이러한 단체가입 현황은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와 관련된 자료는 [그림 IV-5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이 아동·청소년단체를 통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1.8%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단체를 통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에 관한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는 <표 IV-82>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5.645$ ,  $p<0.001$ ,  $\chi^2=483.839$ ,  $p<0.001$ ,  $\chi^2=129.518$ ,  $p<0.001$ ,  $\chi^2=124.293$ ,  $p<0.001$ ).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 하는 비율이 남학생은 9.1%, 여학생은 11.1%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참여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20.1%가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생의 참여 및 활동 비율은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더 많고 또한 초등학교가 아동·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 공식적인 단체를 통한 참여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들보다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고, 읍면지역의 특성 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여가시간은 적지만, 보다 의미 있게 여가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82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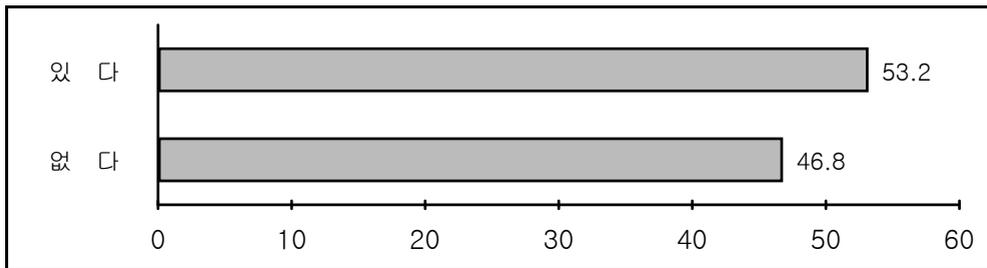
구분		가입하지 않음	가입하였지만 별로 활동하지 않음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	전체 (N)	$\chi^2$
성 별	남	83.7	7.2	9.1	100(4764)	25.645***
	여	79.6	9.3	11.1	100(4315)	
	전체	81.8	8.2	10.0	100(9079)	
교 급	초	71.7	8.2	20.1	100(2802)	483.839***
	중	86.7	6.7	6.6	100(3108)	
	일반계고	86.2	9.5	4.3	100(2436)	
	전문계고	84.8	9.8	5.3	100(731)	
	전체	81.8	8.2	10.0	100(9077)	
지 역 규 모	대도시	84.5	5.9	9.6	100(3951)	129.518***
	중소도시	82.4	8.5	9.1	100(3840)	
	읍/면	71.7	14.4	13.9	100(1286)	
	전체	81.8	8.2	10.0	100(9077)	
경 제 수 준	상	74.2	7.6	18.2	100(1269)	124.293***
	중	82.6	8.5	8.9	100(7263)	
	하	89.3	5.9	4.9	100(494)	
	전체	81.8	8.2	10.0	1000(9026)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⑨ 동아리 활동 참가율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는 아동·청소년 중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와 어떤 유형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 및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또한 어떠한 유형의 활동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에 대한 자료는 [그림 IV-5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중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5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6.8%의 아동·청소년들은 활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아동·청소년단체 가입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2】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8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453, p<0.05, \chi^2=78.307, p<0.001, \chi^2=8.133, p<0.05$ ). 성별에 따른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52.2%, 여학생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른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중학생(58.0%), 일반계고등학생(55.3%), 초등학생(47.6%), 전문계고등학생(47.3%)의 순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단체에 가입 및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율에서 나타난 비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은 단체 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보다 여가시간에 자신의 흥미나 취미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표 IV-83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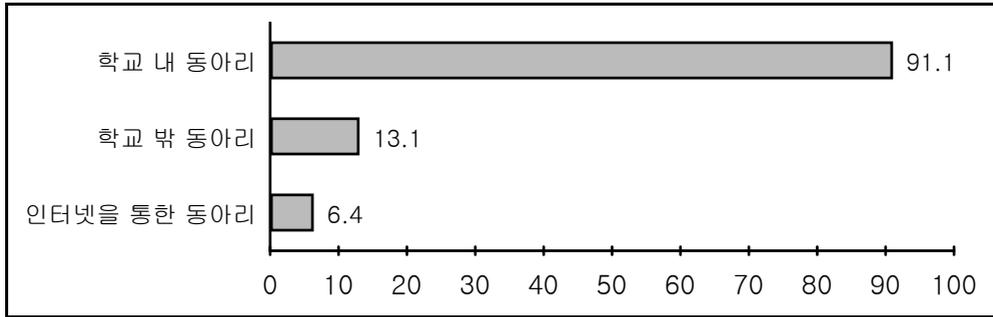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성별	남	52.2	47.8	100(4766)	4.453*
	여	54.4	45.6	100(4309)	
	전체	53.2	46.8	100(9075)	
교급	초	47.6	52.4	100(2811)	78.307***
	중	58.0	42.0	100(3106)	
	일반계고	55.3	44.7	100(2429)	
	전문계고	47.3	52.7	100(728)	
	전체	53.2	46.8	100(9074)	
경제수준	상	57.0	43.0	100(1271)	8.133*
	중	52.7	47.3	100(7262)	
	하	51.9	48.1	100(491)	
	전체	53.3	46.7	100(9024)	

\*  $p < 0.05$ , \*\*  $p < 0.01$ , \*\*\*  $p < 0.001$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시간 및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지표 결과와 연계해 생각해 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가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심리·정신적 안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입한 동아리 활동 형태와 관련된 자료는 [그림 IV-5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는 취미나 문화 활동 동아리의 활동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 내 동아리가 91.1%, 학교 밖 동아리는 13.1%, 인터넷을 통한 동아리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내 동아리 중심으로 취미나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형태를 성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자료는 <표 IV-8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학교 내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데 반해, 남학생은 학교 밖 동아리나 인터넷을 통한 동아리 활동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환경을 활용한 동아리



【그림 IV-53】 동아리 활동 형태(%)

표 IV-84 동아리 활동 형태<sup>77)</sup>

(단위: %, 명)

구분	학교 내 동아리	학교 밖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동아리	전체 (N)	
성별	남	90.2	13.8	6.7	100(2479)
	여	92.0	12.4	6.0	100(2337)
	전체	91.1	13.1	6.4	100(4816)
교급	초	85.7	16.7	6.9	100(1324)
	중	92.0	12.3	7.3	100(1801)
	일반계고	94.6	10.7	4.5	100(1347)
	전문계고	93.6	12.8	6.4	100(344)
	전체	91.1	13.1	6.4	100(4816)
경제수준	상	87.2	18.5	6.0	100(723)
	중	92.0	12.2	6.2	100(3818)
	하	89.2	12.3	9.1	100(255)
	전체	91.1	13.1	6.3	100(4796)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 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취미나 문화 생활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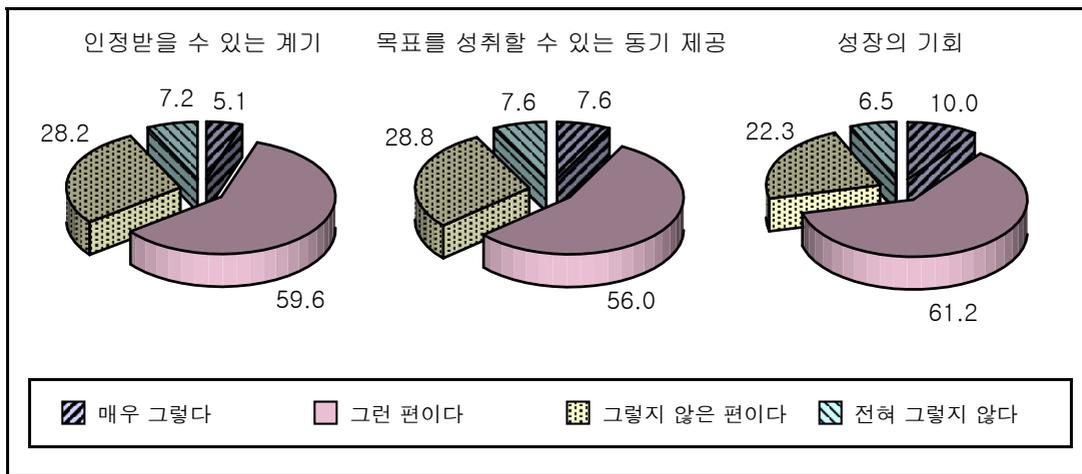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동아리 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의

77) 동아리 활동 형태는 다중응답자료를 교차분석한 것임.

학교 밖 동아리 활동 비중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아동·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인 계층의 아동·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동아리 활동 비율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 ⑩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는 ‘아동·청소년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아동·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지’, ‘아동·청소년활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활동 효과 및 만족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V-54】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림 IV-5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 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64.7%의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63.3%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71.2%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활동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을 교급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85>에 제시되어 있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등학생

**표 IV-85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N)	$\chi^2$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	교급	중	6.5	26.6	61.2	5.7	100(3074)	19.318**
		일반계고	8.1	30.0	57.7	4.2	100(2397)	
		전문계고	7.3	29.1	58.7	4.9	100(728)	
		전체	7.2	28.2	59.6	5.0	100(300)	
	경제수준	상	7.3	25.4	58.8	8.6	100(524)	27.652***
		중	6.9	28.2	60.1	4.8	100(5192)	
		하	9.8	33.0	52.8	4.4	100(451)	
		전체	7.2	28.3	59.3	5.1	100(300)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 제공	교급	중	6.8	27.7	57.3	8.2	100(3073)	20.418**
		일반계고	8.7	30.6	53.5	7.1	100(2397)	
		전문계고	7.3	27.6	59.1	6.0	100(728)	
		전체	7.6	28.8	56.0	7.6	100(300)	
	경제수준	상	7.1	25.6	54.5	12.8	100(523)	30.209***
		중	7.6	28.8	56.7	6.9	100(5191)	
		하	8.6	32.8	50.6	8.0	100(451)	
		전체	7.6	28.9	56.0	7.5	100(300)	
성장의 기회	교급	중	5.6	21.0	62.3	11.0	100(3067)	22.378**
		일반계고	7.3	24.4	59.2	9.1	100(2398)	
		전문계고	6.9	21.1	63.0	9.0	100(725)	
		전체	6.4	22.3	61.2	10.0	100(300)	
	경제수준	상	6.3	19.9	60.5	13.2	100(522)	19.550**
		중	6.3	22.2	61.9	9.6	100(5186)	
		하	8.5	26.6	53.8	11.2	100(448)	
		전체	6.4	22.4	61.2	10.0	100(3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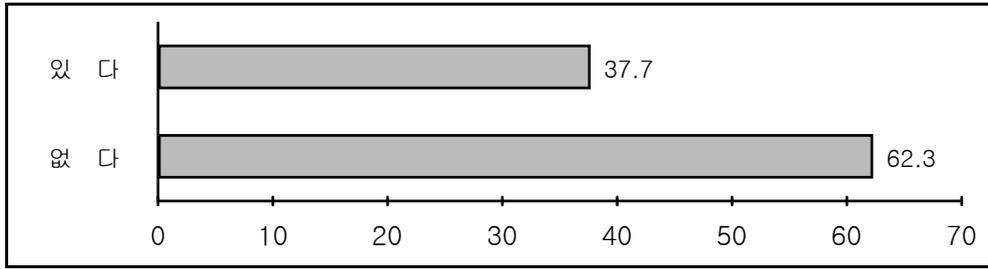
이 중학생이나 전문계고등학생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9.318, p<0.01, \chi^2=20.418, p<0.01, \chi^2=22.378, p<0.01$ ). 즉, 일반계 고등학생이 아동·청소년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교급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계고등학생과 다른 교급 청소년들과의 인식차의 원인은, 아동·청소년활동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대학입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chi^2=27.652, p<0.001, \chi^2=30.209, p<0.001, \chi^2=19.550, p<0.01$ ).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아동·청소년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아동·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취미나 문화생활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②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와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최근 1년간 총 참여횟수와 참여시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자원봉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그림 IV-5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37.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자원봉사활동제도에 따라 매년 학교에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가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평가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이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학교에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일지라도 그것을 실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을 위한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했을지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도 있을 것으로 보아,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표 IV-8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성별	남	36.5	63.5	100(4767)	5.736*
	여	39.0	61.0	100(4312)	
	전체	37.7	62.3	100(9079)	
고급	초	13.8	86.2	100(2812)	1037.546***
	중	48.6	51.4	100(3105)	
	일반계고	51.4	48.6	100(2432)	
	전문계고	37.4	62.6	100(730)	
	전체	37.7	62.3	100(9079)	
지역 규모	대도시	39.8	60.2	100(3950)	13.746**
	중소도시	35.8	64.2	100(3842)	
	읍/면	36.9	63.1	100(1288)	
	전체	37.7	62.3	100(9080)	
가족 유형	양부모	38.3	61.7	100(7998)	13.597**
	한부모	35.5	64.5	100(774)	
	조손가정	24.1	75.9	100(108)	
	기타	31.0	69.0	100(113)	
	전체	37.8	62.2	100(8993)	
경제 수준	상	34.6	65.4	100(1272)	9.128*
	중	38.0	62.0	100(7263)	
	하	41.9	58.1	100(492)	
	전체	37.7	62.3	100(9027)	

\*  $p < 0.05$ , \*\*  $p < 0.01$ , \*\*\*  $p < 0.00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표 IV-86〉),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5.736, p<0.05, \chi^2=1037.546, p<0.001, \chi^2=13.746, p<0.01, \chi^2=13.597, p<0.01, \chi^2=9.128, p<0.05$ ). 즉, 여학생일수록, 교급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 이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총 참여횟수와 시간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자원봉사의 총 참여 횟수는 평균 4.59회( $SD=5.299$ )였으며,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총 참여시간은 평균 16.30시간( $SD=26.167$ )이었다. 즉, 아동·청소년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1회 자원봉사시간은 평균 3~4시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총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표 IV-87〉과 같다. 교급에 따른,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총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에서 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3310)=9.869, p<.001, F(3, 3255)=21.976, p<.001$ ). Duncan 사후검정 결과, 총 참여횟수에서는 일반계고등학생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이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참여시간에서는 일반계고등학생과 전문계고등학생의 참여시간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대학입시 준비로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반계고등학생이 다른 교급에 비해 짧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오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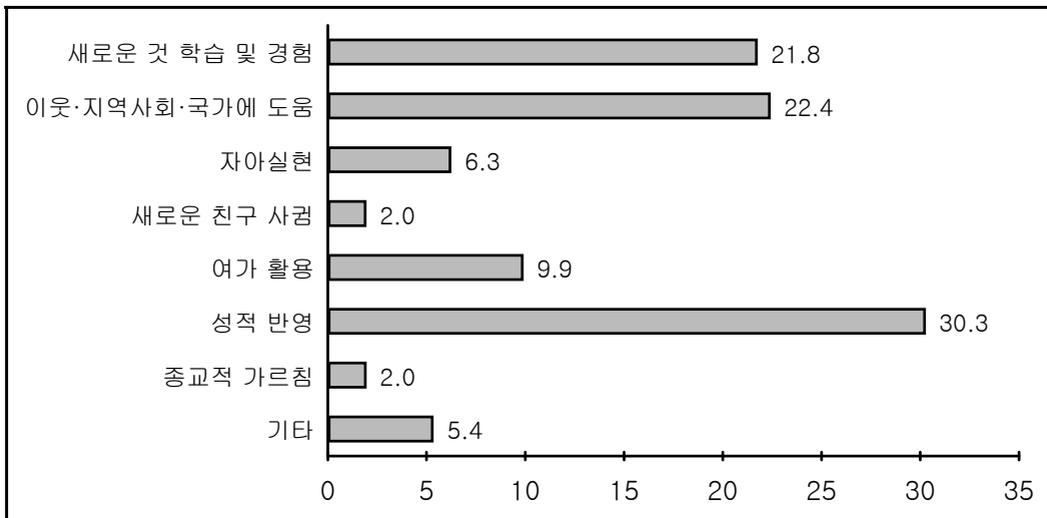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 총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참여횟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3311)=11.285, p<.001, F(2, 3256)=1.598, p>.05$ ). Duncan 사후검정 결과,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56]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가 3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22.4%)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21.8%)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0명

표 IV-87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 F	Duncan
참여횟수	교급	초	4.15	9.869***	일반계고)초, 중
		중	4.17		
		일반계고	5.23		
		전문계고	4.61		
	지역규모	대도시	4.13	11.285***	중소도시, 읍/면)대도시
		중소도시	5.05		
읍/면		4.81			
참여시간	교급	초	10.53	21.976***	일반계고, 전문계고)초, 중
		중	13.70		
		일반계고	20.41		
		전문계고	19.62		
	지역규모	대도시	15.78	1.598	-
		중소도시	17.27		
읍/면		15.19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림 IV-56】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중 3명 정도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율적 의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학생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타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가 일정 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다.

아동·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분석한 자료는 <표 IV-88>에 제시되어 있다. 교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참여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가 31.6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이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26.02%), '여가활용을 위해'(11.83%)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은 '성적반영',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 '새로운 것 학습 및 경험'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원봉사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표 IV-88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sup>78)</sup>

(단위: %, 명)

구분	새로운 학습·경험	이웃·지역 사회·국가에 도움	자아 실현	새로운 친구사귀	여가 활용	성적 반영	종교적 가르침	기타	전체	
교 급	초	31.62	26.02	8.46	4.06	11.83	6.51	3.05	8.41	100
	중	19.26	20.71	5.78	1.76	10.61	35.29	1.77	4.78	100
	일반고	21.58	23.47	5.90	1.72	8.27	32.36	1.87	4.78	100
	전문고	22.90	22.12	7.46	1.29	10.90	26.02	2.07	7.20	100
	전체	21.78	22.43	6.25	1.96	9.91	30.28	1.97	5.38	100
경 제 수 준	상	24.09	25.35	6.60	2.00	9.47	25.31	2.69	4.40	100
	중	21.44	22.10	6.11	1.90	10.03	30.97	1.84	5.57	100
	하	21.38	20.62	7.23	2.86	9.45	31.31	2.18	4.71	100
	전체	21.77	22.42	6.25	0.58	9.94	30.27	1.97	5.37	100

78)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에 대한 결과 산출 기준: 아동·청소년들이 응답한 1, 2, 3순위에 각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를 산출한 후, 전체 사례수 대비 각 항목 사례수를 산출한 비율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계층이 상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청소년의 응답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이나 하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보다 아동·청소년단체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이웃 등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⑫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표 IV-89>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특별히 여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과 불만족만을 비교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약간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9세의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20~29세의 여가활동 만족도보다 약간 더 높다. 또한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IV-89**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3~19세	남자	8.7	25.2	43.2	17.8	5.1
	여자	4.9	20.2	48.1	21.2	5.6
20~29세	남자	4.6	18.3	53.2	18.6	5.3
	여자	2.4	20.8	49.7	21.0	6.1

\* 자료: 통계청(2011), 사회조사.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표 IV-9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60.9%)과 시간부족(23.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9세의 청소년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20~29세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13~19세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방과 후에는 사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20~29세의 청소년들은 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가시설이 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90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다	건강·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성별	남자	61.0	24.4	1.1	1.8	1.0	3.6	5.5	1.3	0.2
	여자	60.9	22.1	1.0	1.7	1.1	3.3	7.9	1.8	0.3
연령	13~19세	34.2	45.1	1.2	7.0	2.3	7.1	0.7	1.6	0.9
	20~29세	58.2	27.5	1.8	2.7	1.2	5.4	1.0	2.0	0.2
계		60.9	23.2	1.0	1.8	1.1	3.4	6.8	1.6	0.3

\* 자료: 통계청(2011). 사회조사.

### (3) 관련 정책 및 대안

이 장에서는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여가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여가 활성화 정책은 문화존 사업과 청소년증 발급 사업으로 나뉘어진다. 각 사업의 특징과 그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존으로 지정된 곳에 각 시도 관청 체육청소년과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01년 인천에서 시작한 청소년문화존을 모델로 하여 2004년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에는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충북, 전북)에 29개의 문화존을 선정하였고, 2006년에는 11개 시도(기존의 8개 시도에 강원, 경남, 대전시가 충원)에 31개 문화존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11개 시도에 41개의 문화존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나머지 5개 시도(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문화존을 확산시켰다. 또한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고자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문화 축제를 운영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도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개 대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의 운영을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그러나 전국 단위의 표준안 부재로 인하여 문화존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존 사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구체적인 문화존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곳에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존 지대에 성인 퇴폐시설을 차단하고, 아동·청소년전용구간의 아동·청소년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이 공간에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마음껏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존과 학교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 단위로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담당 공무원과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탁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동아리와 청소년시설의 동아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문화존 활동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존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학생 청소년들의 참여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회 분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존 활동 참여율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의 표준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성별 연령별 차등을 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어린이용, 성인용 박물관은 있으나, 청소년전용 박물관이 부재하므로, 청소년 전용 박물관의 건립도 필요하다. 문화존사업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타 지역의 프로그램과 교환체험을 나누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체험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청소년관련법과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긴 있지만, 지자체 내의 조례나 규정이 미비하므로 지자체 내 청소년문화

존의 추진 근거를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 지도자와 전문 운영주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성 있게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문화존 사업에 진정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자체에서 시설 마련 및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놀이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성인 공간으로 이탈하지 않고, 전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비학생에게 공통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는 2003년 5월 MBC 방송 <느낌표> 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고교 재학생 외에 ‘비학생 청소년의 비할인’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였다. 그 해 7월 3일 문화관광부는 “비학생 청소년에게 학생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도 및 청소년 관련부처에 공문을 통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며,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에서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의 차별 행위임을 인정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할인제도를 적용하도록 청소년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할인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1월 12일부터 전국의 극장, 유원시설 등의 할인이 시행되었고, 3월 1일에는 여객선 운임 할인(10%), 5월 1일에는 국철, 지하철 할인(20%)이 시행되었다. 또한 ‘학생 할인’은 ‘청소년 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할인 대상은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지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은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의 연령 제한 문제는 도시철도 운영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청소년증이 학생 및 비학생의 차별을 없애주고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실제 청소년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비학생 청소년의 할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주민등록증, 학생증, 국제청소년증<sup>79)</sup>, 국제학생증<sup>80)</sup>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국내 청소년의 국제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연령(12세 이상~26세 미만)을 고려하지 못했고, 할인 시행업체의 범위와 시행업체의 참여 유인책(보조금 지급방안)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청소년증이 사회에서 학생과 비학생을 차별하는 증명서로 인식되고 실제 발급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우세하여 비학생 청소년 중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는 청소년이 드물다. 재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증이 필요 없고, 비학생 청소년들은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발급을 꺼려하는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증의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통합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카드를 개발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 셋째,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증 발급 절차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청소년들은 청소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의 절차 및 편의를 고려하여 발급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증의 사용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부처간 연계와 다양한 업체의 협조를 유도하여 할인 시행을 학용품과 문구 구입, 교육훈련, 생활용품, 도서, 음반 등의 대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어려운 청소년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 4) 소결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오락 및 문화적

79) 1975년부터 유네스코의 인증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한국 청소년의 해외 방문 시 신분증 역할을 한다. 세계 50여 개국 8만 여 곳의 Countdown Logo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유효 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매년 3만 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고 있다(www.unesco.org; 원구환, 2006에서 재인용).

80) 1958년 미국 일리노이에서 시작하여 현재 50여 개국에서 발급되고 있다. 매년 25,000명의 이상의 대한민국 학생 여행자들이 발급받고 있는 ID 카드로, 신청 자격은 만12세 이상의 학생(교육부가 지정한 정규 교육과정 재학)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국제학생증은 여행 전 항공권 할인, 숙소예약비 할인, 환전 수수료 할인서비스, 유학생 보험우대 할인서비스, 현지에서 박물관, 미술관, 엔터테인먼트시설 입장 시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www.isic.co.kr; 원구환, 2006에서 재인용).

활동의 3개 하위 영역, 34개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교육에의 권리 영역의 지표는 ‘학교 현황’, ‘취학률’,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진로교육 경험률’, ‘진로교육 만족도’, ‘학업 중단율’, ‘학교상담교사 배치율’이며, 교육의 목표 영역의 지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학습부진아 출현율’, ‘학교수업 이해도’, ‘학교수업 만족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사교육 경험률’,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인권교육 실시율’,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의 지표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 수’,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동아리 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여가활동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의 권리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교육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많이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부분 국·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의 진학률도 75%나 되어 OECD국가의 평균 취학률, 진학률을 상회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적 수준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상당 부분 민간투자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공교육비 투자 비율을 늘려,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업 중단율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이유가 비행이나 일탈행동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 유학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교생활 부적응과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60%가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 30% 이상이 ‘공부가 싫어서’와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업 중단자들에 대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중 이주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나 학생의 언어능력, 비자문제, 학교 측의 입학 거부 등의 이유로 이주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청소년의 학교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바, 관련법을 좀 더 강화하고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프로그램인 PISA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높은 학업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80%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의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70%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지적 발달과 관련된 부분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의 아동·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중위권 아동·청소년에게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상위권 이상의 아동·청소년의 수준에서 학교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높은 수업내용 이해도는 단지 학교교육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70%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로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이 아동·청소년들의 수업 이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업의 수준을 점점 더 높게 하고 있어 하위권 아동·청소년들의 학습수준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암기식·주입식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사교육의 문제는 법국가적으로 꽤 오래 전부터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해결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문제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교육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교육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방법을 전환하는 등의 교수방법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표 중 인권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친화적 정보 제공 및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해 줄 인권옹호기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실제 우리사회에서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홍보 부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매년 포함되는 내용으로, 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의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적 차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은 30~4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 문화시설 부족,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과반수가 평일 2시간 이내의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서울, 경기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 있더라도 근접성이 떨어져 평일 2시간의 여가시간은 이동시간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일정 부분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은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실제로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가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심리·정신적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은 이마저도 허락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청소년증 발급 및 문화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비학생의 차별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환경 제공 및 유해 환경 개선,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전문 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증 사업 및 문화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 제 5 장

---

# 정 책 제 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 제 5 장 정 책 제 언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른 클러스터 체계로 영역 분류하고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9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의 복지」 3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관련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향후 지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정책제언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활용 가능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 생산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제23조),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제24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중 기존의 통계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통계작성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있다. 2009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승인내용에 따라 조사를 매해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조사 실시와 지표 생산에 대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생산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인권 환경이 개선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 및 공표의 주기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통계 등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는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으로부터 산출되는 지표와 함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로 제시되었다.

사회지표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 및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하나의 계량적 도구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표의 역할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변화방향을 발견하고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며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표는 사회적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김신영, 2007). 인권지표가 이러한 사회지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영역별 지표별 인권 상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는 2009년부터 생산되었는데, 영역과 내용의 방대함으로 홀수년도와 짝수년도에 내용을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각 지표에 대한 조사는 2회 실시된 셈이다. 또한 이 연구의 3차년도(2013년)에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홀수년도와 짝수년도의 조사를 통합할 계획이다. 기존의 통계 자료원의 조사 주기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는 3년인데,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는 것은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길은배 외(2001)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특수한 지표이기 때문에 매년 발간하기보다는 5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측정하기 위해서 10년은 간격이 너무 길고, 매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 측정하기에는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너무 짧은 간격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제출이 매 5년마다 이므로 이 시기에 맞추어 국가보고서 제출 직전 해에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와 아동·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산주기를 3년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지표의 생산주기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아동·청소년 인권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의 2개년에 걸쳐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 총 136개의 지표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히 해당 영역에 대한 자료의 제시라는 의미를 넘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지표가 대표하는 사회적 영역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는 이러한 지표의 기능을 지표의 정책적 기능으로 보았다. 동 연구에 따르면 지표의 정책적 기능은 해당 영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에 활용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이를 참고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이러한 기술적 기능을 통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지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결과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지표로 나타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의지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지표는 정부와 정부 내의 각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설정된 목적에 얼마나 근접해 가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정책의 목적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 기관들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들 간의 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각 기관, 정부,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결과에 근거한 책무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지표를 통하여 책정된 목적의 달성도를 지표를 통하여 점검하고 목표의 달성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책무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표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인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표의 기능 때문에 현재 정책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적 합의가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권리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서 연구용역(이혜연, 김영지, 김신영, 2009)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혜연 외(2009)의 연구에서는 세부지표들의 자료누적의 불충분, 내용적 타당성의 결여, 세부지표의 해석에 대한 규범적 동의가 없는 문제 등이 노정되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혜연 외(2009)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지수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연구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수를 이후에 개발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아동·청소년의 통계자료 수집방법의 변화 추진, 아동·청소년 통계 지표 전달 주체 확보를 통해 세부지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권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인권 지수화 작업은 신중한 타당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지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의지 및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수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영역 구분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클러스터 체계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클러스터 체계 역시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지표는 장애(제23조)와도 관련이 있지만 교육에의 권리(제28조)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권이 부여되는지에 관한 지표도 표현의 자유(제13조)일수도 있지만, 교육에 관한 권리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영역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혜연 외(2009)는 세부 지표의 확보, 최종 지표의 선정, 지수 구축, 지수의 해석 과정 등 지수의 개발은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자료의 환경 또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하고, 이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수 개발 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지표체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9).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인권위 06-03).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서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 길은배, 이용교, 김영지 (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김희진, 김진숙, 김진호, 안재희, 이경자 (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인숙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한국정부 3/4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토론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24-28.
- 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 김형욱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발전방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 관련 국내·외 동향, 48-67.
- 대한민국정부 (1994).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서울: 보건사회부.
- 대한민국정부 (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 (2007).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경기도: 법무부.
- 대한민국정부 (2008).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8년 수정판**. 경기도: 법무부.
- 대한민국정부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동아일보 (2012.5.8). [신나는 공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장 저마틴 위원장 “교육받고 노는 것,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 <http://news.donga.com/3/all/20120507/46056616/1>에서 2012년 5월 8일 인출.
- 모상현, 김영지, 김영인, 이민희,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천정용, 신승배, 이중섭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정량지표** (연구보고 09-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일보 (2012.1.10). 경기 ‘아동청소년 인권법’ 추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1001031143051002>에서 2012년 1월 10일 인출.
- 박지혜 (2005).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내 (2006).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 자료집**, 3-22.
-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무부 (2011).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발간번호 11-1270000-000713-14). 경기도: 법무부.
- 법무부 (2012).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경기도: 법무부.
-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 (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03-14).

-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여정 (2012).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아동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9-33.
- 손희권 (2005).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종교의 자유 위반 여부 분석. **한국교육**, 32(1), 327-352.
- 송기춘 (2011). 학생인권정책의 시·도교육청별 현황과 과제. 2011 연차학술발표회·제13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119-139.
- 송신혜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8.
- 안경환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정착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유진 (2012). 아동권리협약 진정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성안과 비준에 관한 토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71-75.
- 오재창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개인청원권에 관한 토론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68-70.
- 외교통상부 (2008).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 원구환(2006). 청소년증 발급 및 할인정책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5(1), 251-276.
- 윤철수 (2005). 학생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상황과 복지**, 20, 59-85.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 이광호 (2008).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재설계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연구**, 10(2), 49-72.
- 이금순, 김수암 (2008).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연구총서 08-10). 서울: 통일연구원.

- 이병환 (2007).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방안. **중등교육연구**, 55(1), 69-89.
- 이병환 (2007).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열린교육연구**, 15(3), 75-99.
- 이소희, 김민정 (2000). 청소년 문화복지지표체계개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61-83.
- 이소희, 김민정, 김혜영 (1999). 청소년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 27-46.
- 이수광 (2006). 인권친화적'학교표준'설정의 상상력.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포럼 자료집**, 71-76.
- 이승현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9-18.
- 이은주 (2012). 아동·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34-47.
- 이재승 (2007). 독일 대체복무제의 최근 동향. **인권과 공익법**, 1, 43-66.
- 이재연, 박영애, 문혁준 (2010). 아동정책의 현재와 미래. **아동학회지**, 31(3), 1-16.
-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13.
- 이종원, 장근영, 김형주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 07-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황진구, 이해연 (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원, 김성천, 오승환, 이태수,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 73-100.
-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임희진,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복희 (200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헌법학연구**, 12(5), 329-357.
- 정상우, 이국운, 신옥주, 조소영, 정문식, 김성태 외 (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영순 (1997). 아동복지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정책수립을 위한 문제파악과 서비스

-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33(11), 337-376.
- 정형근 (2010).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한양법학**, 31, 189-213.
- 조미숙 (2004). 학생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접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37-52.
- 최돈민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본 학생인권의 상황과 발전 방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3-28.
- 최민호 (2012). 학교 인권교육 정책의 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37-43.
- 최창욱, 박영균,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형찬 (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법한철학**, 61, 415-437.
- 통계청 (2012). **2011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한겨레신문 (2006.6.3). 종교교육 때 학생 '종교의 자유' 침해 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29017.html>에서 2012년 9월 3일 인출.
- 한겨레신문 (2012.3.9). 고교생들이 '청소년 권리 조례안'만들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2748.html>에서 2012년 3월 9일 인출.
-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지영 (2010). **일가정양립제도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입법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喜田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李在然, 安東賢, 李亮喜 (2009). **子どもの權利**. 東京: 日本評論社.
- 喜田明人, 森田明美, 広沢明, 荒牧重人 (2009). **子どもの權利條約**. 東京: 日本評論社.
- Badham, B., & Wade, H. (2008). *Hear by right: Standards framework for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UK: The national Youth Agency.
- Bergqvist, C., & Nyberg, A.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In S. Michel & R. Mahon(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pp. 287-308). New York: Routledge.
- Child and Youth Welfare Association (2010). *First children and young people's*

- report on UN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Germany: A report card for children's rights in Germany 2010.* Arbeitsgemeinschaft für Kinder and Jugendhilfe.
- Children's Defense Fund (2010).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10. *Children's Defense Fund*. Retrieved, from <http://www.childrensdefense.org/child-research-data-publications/data/state-of-americas-children-2010-report.html>.
- Children's Defense Fund (2011).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11. *Children's Defense Fund*. Retrieved, from <http://www.childrensdefense.org/child-research-data-publications/data/state-of-americas-children-2011-report.html>.
- Chinyangara, I., Chokuwenga, I., Dete, R. G., Dube, L., Kembo, J., Moyo, P., & et al. (1997).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Zimbabwe country case study, 1997 report. *The Child Abuse Prevention Network*. Retrieved February 10, 2012, from [http://child-abuse.com/childhouse/childwatch/cwi/projects/indicators/Zimbabwe/ind\\_zimbabwe.html](http://child-abuse.com/childhouse/childwatch/cwi/projects/indicators/Zimbabwe/ind_zimbabwe.html).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4). *Overview of the reporting process*. CRC/C/33.
- Donnelly, J. (1998).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 Boulder, Colorado: Westview.
- Gran, B. K. (2010). Comparing children's rights: Introducing the children's rights index.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8, 1-17.
- Hammad, S. H. (1999). The CRC: Words on paper' or reality fo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 215-237.
- Human Rights Council (2012).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RES/16/21.
- Mahon, R.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In S. Michel & R. Mahon(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pp. 1-27). New York: Routledge.

- Maripe, B. (2002).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hildren's fights in domestic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339–359.
-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 *Five years on: A Global updat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A Gu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va: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Odongo, G. O. (2004). The Domest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2, 419–430.
- OHCHR (2001).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OHCHR (2005).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 Fact Sheet No. 30*. Geneva: OHCHR.
- OHCHR (2008).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 *A Handbook for Civil Society,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ew York and Geneva: OHCHR, HR/PUB/06/10/Rev.1.
- Pinheiro, P. 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Save the Children (2011).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1*.
-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2010). The 2010 KIDS COUNT Data Book.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Retrieved April 19, 2012, from <http://datacenter.kidscount.org/DataBook/2010/Default.aspx>.
-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2011). *Report card 2011: Is the government keeping its promises to children?*. Ireland.
- UN (2007). *Follow-up to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06).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 General Comment No. 8.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10). *Harmonized treaty 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CRC/C/58/Rev.2.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2011).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UN Human Rights (2011). Children empowered to complain about rights violations under new UN protocol.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trieved March 27, 2012, from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1732&LangID=E>.
- UN Human Rights Council (2011a).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 Retrieved June 11, 2012, from <http://www.ohchr.org/EN/HRBodies/HRC/WGCRC/Pages/OpenEndedWorkingGroupIndex.aspx>.
- UN Human Rights Council (2011b).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HRC/RES/16/1.
- UNICEF (2003). *Building a world fir for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CEF (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005). *Report on the working method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relating to the state party reporting Process*. HRI/MC/2005/4.
- UPR Info. (2012). UPR Proses. Retrieved June 9, 2012, from <http://www.upr-info.org/-UPR-Process-.html>.
- Veerman, P., & Levine, H. (2000). Implementation children's rights on a local leve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8, 373-384.
- Wotipka, C. M., & Ramirez, F. O. (2008). World society and human rights: An

- Event history analysis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B. Simmons, F. Dobbin, and G. Garrett (Eds.), *The global diffusion of markets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ermatten, J. (2012a). Document on implementation of COBs.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7-23.
- Zermatten, J. (2012b).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OPCP).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60-67.





# 부 록

1. 설문지
2. 변경문항 목록
3. 지표의 자료 및 출처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임희진 연구위원/김현신 전문연구원      (02)2188-888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부  
 록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del>①</del>	②	③	④

문 1. 현재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②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③ 이해하는 편이다
- ④ 대부분 이해한다

문 2.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 3. 학교 수업이 어떤 수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상위권
- ② 중상위권
- ③ 중위권
- ④ 중하위권
- ⑤ 하위권

문 4. 평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이내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④ 3-4시간
- ⑤ 4-5시간
- ⑥ 5시간 이상

문 5.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향상(진학)을 위한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5-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6」으로 가세요

문 5-1.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14.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4-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15」로 가세요

문 14-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15. 최근 1년 동안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학교수업시간에 진로에 관한 내용을 배움	①	②	③	④
2) 진로에 대해 부모님(보호자)과 대화	①	②	③	④
3) 진로에 대해 선생님(예: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과 상담	①	②	③	④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5) 진로관련 강연(예: 전문가, 선배) 참여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은 가정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을 부모님(보호자)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특별활동(특활), 방과 후 교실 등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이 드는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신문이나 소식지 등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징계(벌)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11) 학교 내에 학교폭력 등에 대한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은 전교어린이회 운영과 관련된 학생의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전교회장이나 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2) 전교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3) 전교회장이나 부회장을 전교 학생들이 직접 뽑는다	①	②	③

문 19. 전교어린이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20. 학교에서 징계(벌)를 받게 되는 경우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1. 등교 후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22.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활동을 모두 인정한다
- ②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
- ③ 학교 밖의 활동만 인정한다
- ④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

문 23.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라에서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놀이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만들고 운영할 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2) 어린이는 성숙하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어린이는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방송이나 신문이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문 25.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인터넷 게시판,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게시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2)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대한 의견(댓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문 26. 어린이를 위한 정책과 동네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어린이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모임(예: 아동총회,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 ②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③ 명칭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④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문 27.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4) 서명운동(예: 인터넷 또는 서명용지 이용)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어린이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풀어쓴 어린이용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내가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①	②
4) 어린이의 권리 이해 및 인권 보호방법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유엔아동권리협약 :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

문 29.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예: 환경보전캠페인, 고아원·복지시설 위문, 문화재보호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교통안전지도활동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29-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30」으로 가세요

문 29-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 1) 최근 1년 총 참여횟수 : ( ) 회  
 2) 최근 1년 총 참여시간 : 약 ( ) 시간

문 29-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로 세 가지만 골라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 ⑤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
| ②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br>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 ⑥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
| ③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해서<br>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 ⑦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
| ④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 ⑧ 기타( )        |

문 30. '학생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 31. 어린이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참여할 필요가 없다  
 ③ 참여하는 것이 좋다  
 ④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문 32.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③ 보장하는 편이다  
 ④ 잘 보장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문 33. 학생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①	②	③	④
3)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어린이를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7)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가 없다	①	②	③	④

문 34. 학생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번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어린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② 부모님의 협조
- ③ 학교의 협조
- ④ 어린이 참여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 ⑤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
- ⑥ 어린이 권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구 운영
- ⑦ 다양한 참여기구나 프로그램 개발
- ⑧ 기타( )

문 35. 학생은 어린이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어린이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아동인권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 1) 함께 살고 있거나,
-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 ⑨ 기타\_\_\_\_\_      ⑩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6.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임희진 연구위원/김현신 전문연구원      (02)2188-888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부  
 록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del>①</del>	②	③	④

문 1. 현재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②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③ 이해하는 편이다
- ④ 대부분 이해한다

문 2.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 3. 학교 수업이 어떤 수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상위권
- ② 중상위권
- ③ 중위권
- ④ 중하위권
- ⑤ 하위권

문 4. 평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이내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④ 3-4시간
- ⑤ 4-5시간
- ⑥ 5시간 이상

문 5.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향상(진학)을 위한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5-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6」으로 가세요

문 5-1.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사교육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6.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④ 3-4시간
- ⑤ 4-5시간
- ⑥ 5시간 이상

문 7. 평소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 ③ 충분한 편이다
- ④ 매우 충분하다

문 8.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공간(예: 도서관, 문화의집, 수련관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 ③ 충분한 편이다
- ④ 매우 충분하다

문 9. 학교에 가지 않는 날(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공부                     | ⑧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운동 경기 등) |
| ② 독서                     | ⑨ 운동                              |
| ③ TV 시청                  | ⑩ 휴대전화로 대화하기                      |
|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⑪ 쇼핑(인터넷 쇼핑 포함)                   |
| ⑤ 인터넷(정보검색, 채팅, 이메일 등)   | ⑫ 집에서 휴식                          |
| ⑥ 친구와 놀기                 | ⑬ 기타( )                           |
| ⑦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등 취미활동   |                                   |

문 10.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11.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1-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12」로 가세요

문 11-1.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활동한 적이 있는 취미나 문화 활동 동아리(동호회 포함)가 있으면 아래의 해당 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학교 내 동아리
- ② 학교 밖 동아리(오프라인 동아리)
- ③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동아리

문 12.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활동은 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활동은 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활동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4.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4-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5」로 가세요

문 14-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 ⑦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
| ②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 ⑧ 학교수업이 재미없어서           |
| ③ 성적이 좋지 않아서       | ⑨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 ④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⑩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
| 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⑪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
| ⑥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⑫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
|                    | ⑬ 기타( )                 |

문 15.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5-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6」으로 가세요

문 15-1.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③ 가정문제(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④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⑤ 몸이 아파서  
 ⑥ 기타( )

문 16.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6-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7」로 가세요

문 16-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17. 최근 1년 동안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학교수업시간에 진로에 관한 내용을 배움	①	②	③	④
2) 진로에 대해 부모님(보호자)과 대화	①	②	③	④
3) 진로에 대해 선생님(예: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과 상담	①	②	③	④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5) 진로관련 강연(예: 전문가, 선배) 참여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은 가정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을 부모님(보호자)도 좋아하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5) 교지나 학교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독립적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의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은 등록금,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학교는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교규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12) 학교 내에 학교폭력 등에 대한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0.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학생의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4)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전교 학생들이 직접 뽑는다	①	②	③

문 21.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22. 학교가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3. 등교 후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24.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동아리(청소년 자율·자치모임 등 포함)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활동을 모두 인정한다
- ② 학교 안의 활동만 인정한다
- ③ 학교 밖의 활동만 인정한다
- ④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

문 25.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1)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의 청소년시설(예: 놀이공간, 도서관, 문화의집, 수련관 등)을 설치·운영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송이나 신문이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문 2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인터넷 게시판,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게시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2)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대한 의견(댓글)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문 28.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 ②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③ 명칭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④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문 29.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4) 서명운동(예: 인터넷 또는 서명용지 이용)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 33.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 가능연령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선거 가능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낮추어야 한다
- ② 유지해야 한다
- ③ 높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34. '학생이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35. 청소년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참여해서는 안 된다
- ② 참여할 필요가 없다
- ③ 참여하는 것이 좋다
- ④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문 3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②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③ 보장하는 편이다
- ④ 잘 보장하고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문 37. 학생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①	②	③	④
3)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7)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가 없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 \_\_\_\_\_      ⑩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6.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①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설문지 작성 요령	정확한 응답을 위해 추가
1. 평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잡니까?	(삭제)	삭제 (2011년 문8과 중복)
2.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삭제)	삭제 (2011년 문13과 중복)
3. 내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삭제)	삭제 (2011년 문11과 중복)
4.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체육시간에 하는 운동 제외)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삭제)	삭제 (2011년 문9와 중복)
5. 지금 받고 있는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1. 현재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구 수정
①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②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③ 이해하기에 적당하다 ④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⑤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②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이해하는 편이다 ④ 대부분 이해한다	척도 및 보기 수정
5-1. ① 매우 불만족이다 ② 불만족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척도 및 보기 수정
6. 학교 수업은 아래 보기 중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3. 학교 수업이 어떤 수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구 수정 (국어학자 감수)
① 상위권 ② 중상위 ③ 중간권 ④ 중하위 ⑤ 최하위권	① 상위권 ② 중상위권 ③ 중위권 ④ 중하위권 ⑤ 하위권	보기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7.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하루 평균 몇 시간 공부합니까?	4. 평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문구 수정
① 1시간	① 1시간 이내	보기 수정
9. 평소 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6.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문구 수정 및 질문 구체화
① 1시간	① 1시간 이내	보기 수정
12. 아래 보기에 제시된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따라 세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9. 학교에 가지 않는 날(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구 수정
④ 게임(인터넷 게임 포함) ⑤ 인터넷(정보검색과 숙제) ⑧ 문화,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등) ⑩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⑪ 쇼핑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인터넷(정보검색, 채팅, 이메일 등) ⑧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운동 경기 등) ⑩ 휴대전화로 대화하기 ⑪ 쇼핑(인터넷 쇼핑 포함)	보기 수정
13. 현재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10.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구 수정 및 질문 구체화
15.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1.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11-1.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활동한 적이 있는 취미나 문화 활동 동아리(동호회 포함)가 있으면 아래의 해당 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질문 구체화 및 문항 위치 변경
14.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2.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구 수정
14-1. 청소년활동은 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2-1. 청소년활동은 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문구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4-2. 청소년활동은 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12-2. 청소년활동은 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문구 수정
14-3 청소년활동은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2-3. 청소년활동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구 수정
16. 다음과 같은 일로 인해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면, 중요도에 따라 보기에서 세 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삭제)	삭제 (2011년 문17과 중복)
17.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하고 상담하십니까?	(삭제)	삭제 (2011년 문21과 중복)
18. 평소에 부모님, 학교(담임)선생님과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0.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몇 명 정도입니까?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1. 다음은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2.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3. 본인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4.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이 있으면 √표해주십시오.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5.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면, 왜 그런지를 보기에서 찾아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4.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14-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질문 명확화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㉓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음	㉓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기 추가
26. 만약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최근 1년 동안 학생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5-1.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질문 명확화
① 포기할 생각이 없음 ②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④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④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괴롭힘 등 현안문제 반영  14-1과 이유 보기의 일관성
27-1. 학교에서 배운 있는 진로 교육의 내용이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6-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구 수정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보기 수정
28. 다음은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17. 최근 1년 동안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구 수정
28-1. 나는 나의 진로(학과와 직업)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인터넷, 관련서적 혹은 기타홍보물)	17-1. 학교수업시간에 진로에 관한 내용을 배움	실태 파악 문항으로 수정
28-2. 나는 나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7-2. 진로에 대해 부모님(보호자)과 대화	
28-3.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17-3. 진로에 대해 선생님(예: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과 상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8-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있다	17-4.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28-5.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이다	17-5.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참여													
29-1. (중학생만 답변)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29-2. (고등학생만 답변)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30. 다음의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요.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32-12. 나는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32-13. 나는 학급회나 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삭제)	인권실태와 관련성 낮음												
	19-12. 학교 내에 학교폭력 등에 대한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안문제 반영												
33. 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교 상황과 가까운 것에 V 해주십시오.	20.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학생의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구 수정												
33-4. 학생회장을 전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하고 있다	20-4.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전교 학생들이 직접 뽑는다	문구 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렇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잘 모르겠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r> </table>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렇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잘 모르겠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r> </table>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척도순서 변경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35. 학교에서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22. 학교가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문구 수정 (국어학자 감수)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36.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경험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p> <p>1) 머리 모양, 길이, 염색, 손톱 매니큐어 등 용모를 통제하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p> <p>2) 바지나 치마길이, 옷 종류, 신발 등 복장을 통제하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p> <p>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p>	(삭제)	삭제 (2011년 문35, 문36과 중복)
<p>37. 등교 후 선생님께 핸드폰을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고 있습니까?</p>	<p>23. 등교 후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방과 후에 돌려받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까?</p>	2011년 문36과의 일관성
<p>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보기 수정
<p>40.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아래와 같은 태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6.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p>	문구 수정
<p>40-1.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p>	<p>26-1.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p>	문구 수정
<p>40-3. 대중매체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p>	<p>25-3.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송이나 신문이 만들어낸다</p>	문구 수정
<p>41-2.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댓글)을 작성한다</p>	<p>27-2. 뉴스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등에 대한 의견(댓글)을 작성한다</p>	문구 수정
<p>42. ④ 전혀 모른다</p>	<p>28. ④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p>	보기 수정
<p>43. 사회문제</p>	<p>29. 사회문제(예: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 등)</p>	예 추가
<p>44.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30.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p>	문구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45. ~한 적이 있다 4점척도	31. 아니다/그렇다	척도 수정
46.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4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32.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32-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32-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질문 명확화
48.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 가능연령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선거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3.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 가능연령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선거 가능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구 수정
① 모든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만 18세로 더 낮추어야 한다 ③ 모든 선거연령을 현재대로(만 19세 이상) 유지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① 낮추어야 한다 ② 유지해야 한다 ③ 높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보기 단순화
51.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표 해주십시오.	37. 학생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구 수정 (국어학자 감수)
	37-7.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가 없다	문항 추가
52.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 학생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구 수정 (국어학자 감수)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53.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청소년인권센터 등)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 학생은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청소년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청소년인권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구 수정

\* 주: 다음은 일괄 수정하였음.

- ① 여러분 / 본인 → 학생
- ② 문제 ○번으로 가십시오 → 「문 ○」로 가세요(~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 ③ 최근 1년간(2009년 6월~2010년 5월) → 최근 1년 동안
- ④ 부모 / 부모님 → 부모님(보호자)
- ⑤ 5점 척도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전혀, 거의, 가끔, 자주)
- ⑥ 시점이 없는 질문 문항에 '최근 1년 동안' 삽입
- ⑦ 하십니까? → 합니까?
- ⑧ ~한 적이 있다 / ~한 경우가 있다 → ~하였다
- ⑨ 해당되는 곳 → 해당하는 번호 / 칸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출처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 (제13조)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사회참여 경험도	- 사회참여 경험도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참여권 보장 수준	- 참여권 보장 수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참여의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 김수정(201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 원자료: 병무청(2012).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및 형사처벌 통계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종립 초·중·고등·대학교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1). 한국의 종교 현황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 결사·집회 경험률	- 결사·집회 경험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 처분 내용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학교상황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성정도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성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정보 접근권 (제17조)	정보 접근권 (제17조)	-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대한출판문화협회(각년도), 출판통계
		- 어린이도서관 수	-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각년도), 공공도서관 총괄표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 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학교도서관(실)의 학생 1인당 장서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매체 이용률	- 매체 이용률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유해매체 이용률	-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유해매체 예방교육 효과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 체벌 경험률	- 최근 1년간의 체벌 경험 여부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유무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사이버 상에서 피해 시, 대처방법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자녀 관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보육시설 수	-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원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원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제20조) 입양 (제21조)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 동 현황	-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원자료: 보건복지부, 요 보호아동현황보고
		- 소년소녀가정 현황	- 소년소녀가정 현황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 건복지통계연보
		- 국내·외 입양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 건복지백서
			- 가출인 발생 현황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 소년백서 원자료: 경찰청(각년도). 경찰백서
		- 가출청소년 비율	- 최근 1년간 가출경험 유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출인 처리 현황	- 경찰청. 가출인 처리 현 황
			-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 용 경험률	- 가출 시 주로 이용하 는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청소년쉼터 시설 수 및 보호청소년현황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 소년백서 원자료: 여성가족부 청 소년자립지원과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 수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 형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 호전문기관(각년도). 전 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방임 경험률	-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제25조)	-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 집 수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 집 수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 육통계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제23조)	-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 률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 수교육대상자 수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장애 청소년 취업률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생 취업현황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 수교육대상자 취업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 한 인식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 인공임신중절률	- 15-44세 유배우부인 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률 변동추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3년 주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15-19세 출산율	-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통계청(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총 괄·출생·사망 편)
		- 0세의 기대여명	- 0세의 기대여명	-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간이생명표
		- 사고 사망률	-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 인통계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 전성 인식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살률	- 자살률 추이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 인통계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 해 생각해 본 경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가정 내에 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범죄 피해건수	-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거주지 및 학교주변의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성 인식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보건 서비스 (제24조)		- 영아 사망률	- 영아 사망률 추이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아동·청소년 사망률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건강검진율	-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보호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의료급여 대상자 수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원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 주관적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 비만율	- 아동·청소년의 비만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운동실천율	-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학교 체육시간 제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침식사 결식률	-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수면시간	- 평일 평균 수면시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질병관리본부(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행복도	- 행복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행복의 조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성교육 경험률	- 최초의 성교육 시기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성교육 도움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	- 질병관리본부(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	- 질병관리본부(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출처
		-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생활수준 (제27조 1항, 2항, 3항)	- 빈곤율	- 절대빈곤율 변화 추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지역별 아동청소년 빈곤율 현황	-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여부와 빈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 방과후 학교 참여실태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 통계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학교 현황	- 학교급별 규모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 DB
		- 취학률	- 취학률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출처
		- 진학률	- 진학률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DB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OECD 교육지표 결과 발표 원자료: OECD(각년도), OECD 교육지표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통계청(각년도), 사교육 비조사 보고서
		- 진로교육 경험률	- 진로교육 경험 유무 - 진로관련 경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진로교육 만족도	- 진로교육 만족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업 중단율	-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 전국 초·중·고 학교 상담교사 배치 현황	- 우원식(2012), 2012년 국정감사보도자료, 학교 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전국 초중고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현황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교육의 목표 (제29조)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e-나라지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출처
	- 학업성취도		- 학년별·교과별 성취 수준 비율	- e-나라지표,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 PISA 결과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 보고서
	- 학습부진아 출현율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e-나라지표,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원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 학교수업 이해도		- 학교수업 이해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수업 진행 수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수업 만족도	-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사교육 효과성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 정도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인권교육 실시율	- 인권교육 실시율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연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청소년수련시설 수	-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학교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 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동아리 활동 참가율	-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 동아리 활동 형태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 표	자 료	출 처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특별 보호 조치	법적 분쟁상의 아동	-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소년범죄 처리 현황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착취 상황하의 아동	- 평균 근로 시간	-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 여성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원자료: 노동부	
- 근로여건 만족도			- 근로여건 만족도	- 통계청(각년도), 한국의 사회조사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출처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여성가족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원자료: 경찰청(2010)
		- 성매매 경험률	- 조건만남 경험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 성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유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성피해 보호자 인지율 및 경찰 신고율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성피해 의논 대상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Abstract

###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objective data that can show the status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onitoring mechanism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ditions.

This study produced a total of 136 indicators including 34 indicators in 「Civil Rights and Freedoms」, 18 indicators in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42 indicators in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34 indicators in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8 indicators in 「Special Protection Measures」 field over two-year period from 2011 to 2012. 136 indicators for children's and youth's rights consists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children's and youth's rights.

This study consists of 3 reports: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 : 2012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and 「Right of Play to Children and Youths: Current Conditions and Alternatives」.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indicators and second report presented result tables of 「The Survey on rights fo the children & youths」(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third report proposed roles of the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local community in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to children and youths to play and creating an environment to play.

The study suggested policy makers to establish legislative basis that supports production of indicators for children's and youth's rights, to review timelines to produce and disclose indicators for children and youth's rights, to develop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rights.

Key words: indicators for children's and youth's rights,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dex for children and youth's rights



##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황진구·김정주·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김지경·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이광호·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성윤숙·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김희진·강영배·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김승경·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박영균·유성렬·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손경원·신태수·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박균열·홍승훈·윤영돈·유수희·전종희
- 12-R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강지명·조윤오·윤옥경
- 12-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서정아·배상률·성은모·김지영·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조흥식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 문 진 ◆

(가나다 순)

-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교수  
권오현 통계청 품질관리과·사무관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교수  
김대유 서문여자중학교·교사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교수  
김인숙 유엔아동권리협약 NPO연대·사무국장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김형욱 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배경내 인권교육센터「들」·상임활동가  
신승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전임연구원  
양돈규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오선영 세이브더칠드런·팀장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협회장  
이용교 광주대학교·교수  
이중섭 전북발전연구원·부연구위원  
이필우 내서여자고등학교·교사  
이호균 굿네이버스·부회장  
정진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사무관  
조선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문위원  
조아미 명지대학교·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최신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주무관



연구보고 12-R11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529-7 94330

978-89-7816-455-9 (세트)